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석사학위논문

비공개 구술기록의 공개 전환 검토 기준에 관한 연구

-과거사 진상 규명 구술증언을 중심으로-

HANSUNG UNIVERSITY

2026년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문 헌 정 보 학 과

기 록 관 리 학 전 공

이 석 균

HANSUNG
UNIVERSITY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이호신

비공개 구술기록의 공개 전환 검토 기준에 관한 연구

-과거사 진상 규명 구술증언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Criteria for Reviewing the Disclosure of Non-Public Oral Records: Focusing on Oral Testimonies for Historical Truth-Seeking

HANSUNG UNIVERSITY

2026년 6월 일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문 헌 정 보 학 과

기 록 관 리 학 전 공

이 석 균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이호신

비공개 구술기록의 공개 전환 검토 기준에 관한 연구

-과거사 진상 규명 구술증언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Criteria for Reviewing the Disclosure of Non-Public Oral Records: Focusing on Oral Testimonies for Historical Truth-Seeking

위 논문을 기록관리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6년 6월 일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문 헌 정 보 학 과

기 록 관 리 학 전 공

이 석 균

이석균의 기록관리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026년 6월 일

심사위원장 박지영 (인)

심 사 위 원 도슬기 (인)

심 사 위 원 이호신 (인)

HANSUNG UNIVERSITY

국 문 초 록

비공개 구술기록의 공개 전환 검토 기준에 관한 연구
-과거사 진상 규명 구술증언을 중심으로-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문 헌 정 보 학 과
기 록 관 리 학 전 공
이 석 균

구술기록은 문헌기록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개인의 경험과 기억, 감정 및 인식을 담은 자료이다. 특히 과거사 진상 규명 과정에서 생산·수집된 구술증언은 국가폭력, 인권침해, 강제동원, 민간인학살 및 사회적 재난과 관련된 피해 경험을 기록하고 공식 기록의 공백을 보완한다. 그러나 개인정보와 민감정보, 제3자 정보, 사생활 침해와 명예훼손, 2차 피해 가능성 등을 포함할 수 있어 비공개 또는 이용 제한 상태로 관리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시간이 경과한 뒤에도 기존 비공개 사유와 보호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 없이 비공개 상태가 지속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비공개 또는 이용이 제한된 구술기록, 특히 과거사 진상 규명 구술증언을 중심으로 공개 또는 이용 가능성을 다시 검토하기 위한 기준을 도출하고, 이를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로 구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과거사 관련 구술기록은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단체, 연구기관 및 시민기록관 등에서도 생산·수집될 수 있으므로, 이를 「공공기록물법」 상의 공개재분류로 한정하지 않고 '공개 전환 검토'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였다.

연구를 위해 구술기록의 특성과 비공개 사유, 국내 수집·공개 현황을 검토하고, 국내외 관련 법령, 구술동의서 및 공개 전환 사례를 분석하였다. 각 자료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내용을 유사성과 기능적 연관성에 따라 범주화하여 검토 기준을 도출하였다. 이후 체크리스트 1차안을 구성하고, 기록관리 실무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수정·보완하였다. 분석 결과, 세 가지 검토 기준이 도출되었다. 첫째, 시간의 경과에 따른 공개 가능성 재검토로, 기존 비공개 조건과 보호 필요성이 현재에도 유효한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둘째, 공익성에 따른 공개 가능성 검토로, 기록의 공개 또는 이용이 피해 회복, 권리 구제, 진실 규명, 책임 확인 및 공적 기억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셋째, 학술적·교육적 가치에 따른 활용 가능성 검토로, 기존 문헌이나 공개자료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험과 맥락을 제공하는지, 특정 연구·교육 목적에서 기록 이용이 필요한지를 검토하는 것이다.

이상의 기준을 바탕으로 최종 체크리스트는 시간의 경과, 현재의 보호 필요성, 공익성, 학술적·교육적 활용 가치, 공개 방식과 보호조치의 다섯 단계로 구성하였다. 개인정보나 민감정보의 존재 자체보다 공개로 인한 구체적 피해 가능성과 현재의 보호 필요성을 중심으로 판단하도록 하였으며, 문항을 단순 합산하지 않고 각 단계의 결과를 종합하여 공개, 부분공개, 제한공개, 비식별 처리, 가공된 형태의 제공, 비공개 유지 및 향후 재검토 등 적절한 이용 방식과 보호조치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는 비공개 구술기록을 생산 당시의 결정에 따라 고정된 기록이 아니라, 시간과 조건의 변화에 따라 다시 검토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공공기록물 관리체계 밖의 구술기록에도 적용할 수 있는 공개 전환 검토 개념을 제시하고, 법령, 구술동의서 및 사례 분석 결과를 실무적 체크리스트로 구체화하였다.

【주요어】 비공개 구술기록, 공개 전환 검토, 과거사 진상 규명, 구술증언

목 차

제 1 장 서 론 ····· 1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제 2 절 연구 방법 ····· 4

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 7

제 1 절 구술기록의 개념과 특성 ····· 7
1) 구술기록의 개념과 유형 ····· 7
2) 구술기록의 특성과 관리상 쟁점 ····· 9
3) 과거사 진상 규명 구술증언의 특성 ····· 11
제 2 절 구술기록의 비공개 사유 ····· 15
제 3 절 선행연구 검토 ····· 18

제 3 장 국내 구술기록 현황 및 국내외 법령 분석 ····· 23

제 1 절 국내 구술기록의 수집·공개 현황 ····· 23
제 2 절 국내 법령 ····· 27
1) 공공기록물법 ····· 27
2) 정보공개법 ····· 28
3) 개인정보 보호법 ····· 29
제 3 절 국외 법령 ····· 31
1) 독일 ····· 31
2) 과테말라 ····· 39
3) 프랑스 ····· 40

제 4 장 국내외 구술동의서 내용 분석 ····· 47

제 1 절 국내 구술동의서 ····· 47
1) 한국학중앙연구원 ····· 47

2) 국립태권도박물관 ····· 50
3) 서울역사편찬원 ····· 53
4) 여주세종문화재단 ····· 54

제 2 절 국외 구술동의서 ····· 56
1) 영국도서관 ····· 56
2) 호주 퀴어아카이브 ····· 58
3) 미국 의회도서관 ····· 59

제 5 장 공개 전환 사례 분석 ····· 62

제 1 절 구술기록 공개 전환 사례 ····· 62
1) 지그문트 프로이트 컬렉션 ····· 62
2) 재클린 케네디 구술기록 ····· 64
3) 브렌트 스코우크로프트 구술기록 ····· 65
4) 영국도서관(British Library) Sound Archive ····· 66

제 2 절 과거사 진상 규명 기록 공개 전환 사례 ····· 69
1) 독일 Stasi Records Archive ····· 70
2) 과테말라 국가경찰 역사기록보관소(AHPN) ····· 72

제 6 장 비공개 구술기록의 공개 전환 검토 기준 ····· 77

제 1 절 비공개 구술기록 공개 전환 검토 기준 ····· 77
1) 시간의 경과에 따른 공개 가능성 재검토 ····· 82
2) 공익성에 따른 공개 가능성 검토 ····· 83
3) 학술적·교육적 가치에 따른 활용 가능성 검토 ····· 84

제 2 절 비공개 구술기록 공개 전환 검토 체크리스트 ····· 86
1) 비공개 구술기록 공개 전환 검토 체크리스트의 구성 ····· 86
2) 실무 전문가 자문과 최종 체크리스트 ····· 93

제 7 장 결 론 ····· 105

참 고 문 헌 ····· 110

ABSTRACT ····· 117

HANSUNG UNIVERSITY

표 목 차

[표 1] 구술기록의 특성 ····· 11
[표 2] 과거사 진상 규명 구술증언의 특성 ····· 15
[표 3] 구술기록의 비공개 사유 ····· 17
[표 4] 국가기록원 소장 과거사 진상 규명 구술기록 현황 ····· 24
[표 5] 주요 국내 기관의 과거사 진상 규명 관련 구술기록 수집·서비스 현황 ·· 24
[표 6] 1차 분석: 국내 법령 분석 결과 의미 코드 ····· 30
[표 7] 1차 분석: 국외 법령 분석 결과 의미 코드 ····· 43
[표 8] 1차 분석: 국내 구술동의서 내용 분석 결과 의미 코드 ····· 55
[표 9] 1차 분석: 국외 구술동의서 내용 분석 결과 의미 코드 ····· 60
[표 10] 1차 분석: 구술기록 공개 전환 사례 분석 결과 의미 코드 ····· 68
[표 11] 1차 분석: 과거사 진상 규명 기록 공개 전환 사례 분석 결과 의미 코드 ····· 75
[표 12] 2차 분석: 국내외 법령 분석 결과 공통 의미 범주화 ····· 77
[표 13] 2차 분석: 국내외 구술동의서 내용 분석 결과 공통 의미 범주화 78
[표 14] 2차 분석: 공개 전환 사례 분석 결과 공통 의미 범주화 ····· 79
[표 15] 법령·구술동의서·사례 분석 내용의 공통 의미 범주화 ····· 81
[표 16] 비공개 구술기록의 공개 전환 검토 기준 ····· 85
[표 17] 비공개 구술기록의 공개 전환 검토 체크리스트 (1차안) ····· 87
[표 18] 실무 전문가 자문 의견 ····· 94
[표 19] 실무 전문가 주요 자문 의견과 체크리스트 반영 내용 ····· 98
[표 20] 비공개 구술기록의 공개 전환 검토 체크리스트 (최종) ····· 99

그 림 목 차

[그림 1] 연구 방법 ····· 4
[그림 2] 2022년 국가기록원 구술기록 공개재분류 심의 내용 ····· 25
[그림 3] 구술 자료 비공개 내역서(한국학중앙연구원, 2019, p.21) ····· 47
[그림 4] 연구결과물 표준화 지침(한국학중앙연구원, 2019, p.44) ····· 48
[그림 5] 구술 자료 활용 공개 동의서(한국학중앙연구원, 2019, pp.18-19) ·· 48
[그림 6] 구술 신상 기록부(한국학중앙연구원, 2019, p.11) ····· 49
[그림 7] 구술 공개 및 이용 동의서(국립태권도박물관, 2024, pp.10-11) ·· 50
[그림 8] 출연료 및 저작권 위임 동의서(국립태권도박물관, 2024, p.7) ··· 51
[그림 9] 구술자료 비공개 내역서(국립태권도박물관, 2024, p.12) ····· 51
[그림 10] 구술 동의 및 자료이용 허가서(서울역사편찬원, 2025, p.22) ·· 53
[그림 11] 구술동의 및 자료이용 허가서(여주세종문화재단, 2022, p.11) 54
[그림 12] British Library Oral History Participation Agreement ····· 56
[그림 13] British Library Oral History Recording Agreement ····· 57
[그림 14] AQuA Oral History Project Participant Information and Consent Form ····· 58
[그림 15] Library of Congress American Folklife Center Veteran's & Interviewer's Release Form ····· 59
[그림 16] 비공개 구술기록의 공개 전환 검토 기준 1(시간의 경과) ····· 82
[그림 17] 비공개 구술기록의 공개 전환 검토 기준 2(공익성) ····· 83
[그림 18] 비공개 구술기록의 공개 전환 검토 기준 3(학술적·교육적 활용 가치) ····· 84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구술기록은 개인이 경험한 사건과 그에 대한 기억을 구술자의 언어로 남긴 기록으로, 문헌기록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험과 인식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되어 왔다. 구술은 구술자와 면담자의 상호작용 속에서 생산되며, 특정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뿐 아니라 구술자가 그 사건을 어떻게 경험하고 기억하는지를 함께 담는다. 따라서 구술기록은 공식 문헌기록에 충분히 남지 않은 개인의 경험, 감정, 인식, 생활세계 등을 기록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헌기록을 보완하는 자료로 의미를 가진다(강남진, 2023, pp.12-17; 이여진, 2026, pp.1-5; 조용성, 2009, pp.1-4).

이 가운데 과거사 진상 규명 과정에서 생산된 구술증언은 국가폭력, 인권침해, 강제동원, 민간인학살, 재난 등과 관련하여 피해자, 생존자, 유가족, 목격자 등이 특정 사건의 피해 사실과 경험을 진술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인 구술생애사가 한 개인의 생애 전반을 회고하는 데 중점을 둔다면, 과거사 진상 규명 구술증언은 특정한 역사적 사건의 발생 경위, 피해 사실, 목격 경험, 사건 이후의 삶에 남은 영향 등을 진술한다는 점에서 사건 중심의 증언적 성격이 강하다(강남진, 2023, pp.12-17; 송혜림, 2025, pp.1-8).

국가폭력은 공식 기록으로 충분히 설명되지 않거나, 오히려 국가의 통제와 은폐 속에서 왜곡되어 기록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와 유가족, 목격자의 증언은 피해 사실을 드러내고 사건의 존재를 공적 영역에서 확인하게 하는 출발점이 되었다. 특히 강제동원, 제주4·3, 5·18민주화운동, 한국전쟁기 민간인학살 등과 관련한 구술은 피해 사실의 확인, 희생자 인정, 진상조사, 명예회복 논의와 연결되면서 과거사 진상 규명의 주요한 자료로 수집되어 왔다(권미현, 2007, pp.305-308; 김태인, 2025, pp.13-19; 송혜림, 2025, pp.1-8).

과거사 진상 규명 과정에서 생산된 구술증언은 기존 기록의 공백을 보완

하는 역할을 한다. 과거사 관련 사건은 전쟁, 식민지배, 국가폭력, 권위주의 통치 등과 관련되어 있어 기록이 충분히 생산되지 않았거나, 생산되었더라도 은폐·훼손·분산된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문헌기록만으로는 피해의 구체적 양상이나 사건의 전체 맥락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한다. 강제동원 피해 조사 과정에서 구술자료는 문헌자료에서 확인할 수 없는 사실을 드러내거나 기존 문헌자료의 오류를 확인하는 데 활용되었으며, 여순 10·19 및 제주4·3 관련 구술 역시 공문서와 공식 서술만으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피해자의 경험과 지역사회의 기억을 보완하는 자료로 평가되어 왔다(권미현, 2007, pp.313-314; 박병섭, 2019, pp.127-132; 김은희, 2022, pp.163-166; 조용성, 2009, pp.1-4).

과거사 진상 규명 과정에서 생산된 구술증언은 사건의 경과와 피해 양상을 이해하기 위한 자료로 수집되어 왔다. 구술증언은 특정 사건을 경험한 개인이 당시의 상황, 피해 발생 과정, 가해와 대응의 양상, 사건 이후의 삶에 남은 영향을 자신의 언어로 진술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사실 확인 자료에 그치지 않는다. 이는 사건이 개인과 공동체에 어떤 방식으로 경험되었는지, 피해가 이후의 삶과 사회적 기억 속에서 어떻게 지속되었는지를 보여준다. 따라서 구술증언은 과거사 사건의 경과를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피해의 양상을 사회적·역사적 맥락 속에서 파악하게 하는 자료로 의미를 가진다(강남진, 2023, pp.12-17; 김태인, 2025, pp.13-19; 이현정, 2019, pp.11-17; 전예은, 2021, pp.1-2).

이와 같이 과거사 진상 규명 구술증언은 피해 사실의 확인, 기존 기록의 공백 보완, 사건 경과와 피해 양상의 이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이러한 가치를 고려할 때, 과거사 진상 규명 구술증언은 단순히 수집·보존되는 데 그치지 않고 연구, 교육, 전시, 진실 규명, 피해 회복 논의 등에서 활용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구술자의 동의 여부, 개인정보와 민감정보, 제3자 정보, 사생활 침해 우려, 사건과 관련된 사회적 갈등 가능성 등으로 인해 생산 당시 비공개로 정해지거나 이용 범위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그 결과 시간이 상당히 경과한 뒤에도 구술기록이 비공개 상태로 유지되면서, 기록의 역사적·사회적 가치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물론 구술기록의 공개는 단순히 비공개 상태를 해제하는 문제로만 접근하기 어렵다. 구술자는 구술 당시에는 면담에 응했더라도 공개 단계에서는 특정 내용의 비공개를 원할 수 있으며, 구술 내용에는 피해 사실뿐 아니라 가족관계, 건강, 정치적 경험, 가해자와 목격자 등 제3자에 관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 또한 시간이 경과하면서 구술자의 공개 의사, 구술자와 관계자의 생존 여부, 개인정보의 민감성, 사건에 대한 사회적 인식, 기록의 이용 목적 등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비공개 구술기록은 일정한 시간이 지난 뒤에도 기존의 비공개 사유가 여전히 유효한지, 공개 범위를 조정할 수 있는지, 보호조치를 전제로 제한적 활용이 가능한지를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비공개 구술기록을 일정한 시점에 다시 검토하는 과정을 모두 「공공기록물법」상의 공개재분류 제도로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과거사 관련 구술기록은 국가기관이나 과거사 조사위원회의 업무 과정에서 생산되기도 하지만, 민간단체, 피해자단체, 연구기관, 대학 및 시민기록관의 조사·수집 사업을 통해 생산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4.16구술증언사업은 구술연구자와 피해자 공동체의 참여를 바탕으로 진행되었으며, 생산된 자료는 4.16기억저장소의 구술아카이브에서 관리되고 있다(이현정, 2019, pp.13-18, 27-29). 이와 같은 구술기록은 공공기록물의 관리체계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공공기록물에 적용되는 주기적인 공개재분류 절차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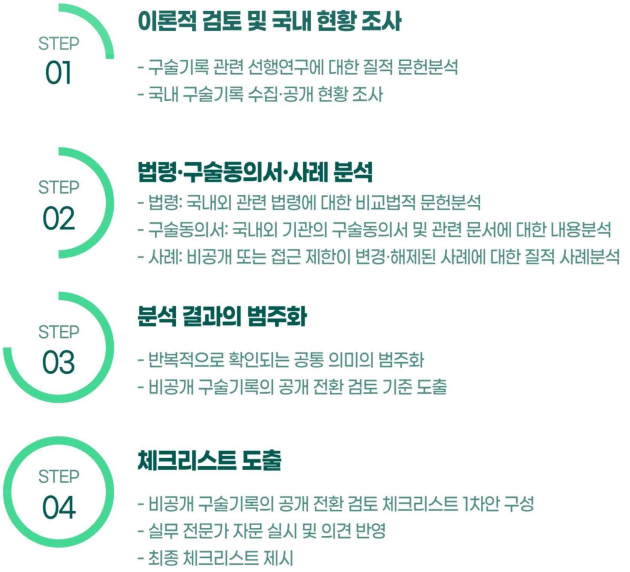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공개 구술기록을 다시 살펴보는 과정을 일률적으로 공개재분류라고 표현하지 않고, ‘공개 전환 검토’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여기서 공개 전환 검토는 한 번 비공개로 정해지거나 이용이 제한된 구술기록에 대하여 시간이 경과한 뒤 기존의 비공개 사유, 구술자의 동의 조건, 개인정보와 민감정보의 보호 필요성, 기록의 역사적·사회적 가치, 이용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과정을 의미한다. 또한 공개 방식 역시 전면 공개에 한정하지 않고, 부분 공개, 비식별화, 이용자 제한, 연구 목적 열람, 일정 기간의 추가 비공개 등 여러 방식을 함께 검토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이에 본 연구는 한 번 비공개로 분류되거나 이용이 제한된 구술기록, 특히

과거사 진상 규명 과정에서 생산·수집된 구술증언을 중심으로 공개 전환 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해 어떠한 검토 기준과 제도적 조건이 필요한지를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국내외 관련 법령, 구술동의서, 공개 전환 사례를 분석하여 비공개 구술기록의 공개 전환 검토 기준을 도출하고, 이를 적용한 체크리스트를 제시하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비공개로 분류된 구술기록이 언제, 어떤 조건에서 공개로 전환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질적 문헌·사례 분석 방법을 적용하였다. 분석 대상은 비공개 기간과 공개 시점, 공익적 이용, 연구·교육 목적의 접근, 권리관계 및 보호조치와 관련된 구체적인 규정이나 공개 전환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이에 비공개 구술기록의 공개 전환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 법률 문서, 각 기관의 서식이나 실제 운영 지침 등 다양한 문서 자료들을 분석하였다. 각 자료는 개별적으로 검토한 후 공통적인 분석 항목을 중심으로 비교하였으며, 서로 다른 자료 유형에서 확인된 내용을 종합하는 방식으로 분석하였다. 이상의 연구 방법을 도식화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 방법

첫째, 기존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구술기록과 과거사 진상 규명 구술증언의 개념과 특성을 검토하였다. 또한 구술기록이 비공개로 분류되는 주요 사유를 검토하였다. 나아가 구술기록의 공개·활용 과정에서 제기되는 법적·윤리적 쟁점과 기존 연구의 한계를 검토하여, 본 연구와의 차별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둘째, 국내 구술기록의 수집·공개 현황을 조사하였다. 국내에서 구술기록이 어떠한 기관을 중심으로 수집되어 왔는지, 특히 과거사 진상 규명과 관련된 구술기록이 어떤 방식으로 보유·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주요 과거사 관련 기관의 구술자료 수집·공개 현황을 살펴보았다. 또한 비공개 구술기록의 건수, 비공개 사유, 비공개 기간, 공개 전환 검토 가능 여부가 체계적으로 확인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국내 구술기록 관리 현황에서 공개 전환 검토 기준이 필요한 배경을 확인하고자 한다.

셋째, 국내외 법령에 대한 비교법적 문헌분석을 실시하였다. 국가별 법체계 전체를 포괄적으로 비교하기보다는 비공개 구술기록의 공개 가능성을 직접적으로 규정하거나 그 판단에 활용될 수 있는 조항을 선별하였다. 국내 법령으로는 「공공기록물법」, 「정보공개법」, 「개인정보 보호법」을, 국외 법령으로는 독일, 과테말라, 프랑스의 법령을 분석하여 비공개 구술기록을 공개 대상으로 전환하거나, 제한적으로 열람·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의미한 조항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넷째, 국내외 구술동의서에 대한 내용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자료는 원문 또는 기관이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양식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였으며, 기록의 보존, 공개, 이용 및 공개 제한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국내는 한국학중앙연구원, 국립태권도박물관, 서울역사편찬원, 여주세종문화재단의 구술동의서 및 관련 문서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국외는 영국도서관, 호주 퀴어아카이브, 미국 의회도서관의 구술동의서 및 관련 문서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를 통해 수집 및 생산단계에서 비공개 구술기록을 공개로 전환시키기 위한 설계 작업으로는 어떤 구성 내용들이 필요한지 확인하고자 한다.

다섯째, 비공개기록의 공개 전환과 관련된 사례 분석을 실시하였다. 처음

수집될 당시에는 비공개나 접근 제한 조건이 걸려 있었지만 실제로 공개 범위가 바뀌거나 비공개가 해제된 구체적인 실제 사례들을 선정하였다. 이 사례들을 분석할 때는 해당 소장기관이 제공하는 컬렉션 안내서, 접근 정책, 이용 지침, 관련 연구문헌 등 구체적인 실무 자료들을 활용하였다. 공개 전환 사례에는 구술기록뿐만 아니라 과거사 진상 규명 관련 기록들의 공개 전환 사례를 포함하였고, 이를 통해서 실제 기록관리 현장에서 어떤 조건과 절차 속에서 다루어졌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비공개 구술기록의 공개 전환을 논의할 때 고려해야 할 주요 방향을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여섯째, 국내외 법령, 구술동의서, 공개 전환 사례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였다. 각 자료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주요 내용을 추출하고, 자료 유형별로 정리한 뒤 의미의 유사성과 기능적 연관성을 기준으로 상호 비교하였다. 이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의미를 범주화하여 비공개 구술기록의 공개 전환 검토 기준을 도출하였다. 또한 도출된 기준을 바탕으로 공개 방식과 보호조치를 단계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1차안을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체크리스트 1차안의 실무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내용을 수정·보완하기 위해 기록관리 현장 경험을 가진 실무 전문가 2인을 대상으로 자문을 실시하였다. 자문에서는 각 검토 항목의 실제 확인 가능성, 문항의 구체성과 변별력, 기록 유형에 따른 적용 가능성, 공개 방식과 보호조치의 적절성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수렴하였다. 자문 결과는 실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항목은 적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조정하였으며, 대부분의 구술기록에 공통적으로 적용되어 공개 여부 판단에서 변별력이 낮은 항목은 재검토하였다. 또한 원자료의 전면 공개 여부만을 판단하기보다 부분 공개, 제한적 이용, 비식별화, 발췌본 및 편집본 제공 등 기록의 이용 형태와 보호조치를 함께 검토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수정·보완하여 최종안을 제시하였다.

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본 장에서는 비공개 구술기록의 공개 전환을 논의하기 위한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구술기록의 개념과 유형을 살펴보고, 그중에서도 과거사 진상 규명 구술증언이 지니는 특성을 검토한다. 이어 구술기록이 비공개로 분류되는 사유를 정리한다. 마지막으로 관련 선행연구들을 검토하여, 본 연구가 다루고자 하는 문제의식을 구체화하고자 한다.

제 1 절 구술기록의 개념과 특성

1) 구술기록의 개념과 유형

구술기록은 구술자의 기억과 경험을 면담을 통해 음성, 영상, 녹취문 등의 형태로 기록화한 자료를 의미한다. 구술사는 일반적으로 “구술기록에 근거한 역사 서술”로 이해되며, 구술기록은 문헌기록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개인의 경험, 판단, 감정, 사회적 관계를 드러내는 기록으로 기능한다. 특히 한국에서 구술기록은 문헌기록의 부재나 한계를 보완하고, 권력 중심의 역사서술에서 배제되었던 사람들의 경험을 기록화하는 과정에서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다. 이러한 점에서 구술기록은 기록되지 않았거나 기록될 수 없었던 기억을 현재의 언어로 불러내는 독자적인 기록 유형으로 볼 수 있다(손동유, 권용찬, 2013, pp.136-138).

기록학적 관점에서 구술기록의 범위는 구술자의 발화가 담긴 음성·영상자료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구술기록은 구술과정에서 생산되는 모든 형태의 기록물로, 음성·영상자료를 1차 자료, 녹취문·면담일지·동의서·검독확인서·비공개 내역서 등을 2차 자료로 구분하기도 한다(배은희, 2018, pp.88-90). 구술기록은 면담 행위 자체뿐 아니라 면담 이전의 기획 단계와 면담 이후의 정리·검독·수정 과정까지 포함하여 이해해야 한다(최정은, 2011, pp.22-27). 즉, 구술기록은 구술면담 과정에서 생산된 녹음자료, 영상자료, 녹취문뿐 아니라 질문

지, 면담일지, 면담후기, 구술자 및 면담자 정보, 구술동의서, 공개 및 활용동의서, 검독확인서 등 구술 생산과 활용의 맥락을 보여주는 자료까지 포함할 수 있다. 따라서 구술기록은 하나의 완성된 결과물이라기보다 기획, 면담, 정리, 검독, 공개 결정의 전 과정에서 형성되는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

구술기록은 그 내용과 생산 방식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먼저 구술자료는 크게 구전, 구술증언, 구술생애사로 나눌 수 있다. 구전은 여러 세대에 걸쳐 입에서 입으로 전승되어 온 이야기로, 종교적 주문, 설화, 마을에 관한 이야기 등 기록되지 않은 역사적 지식이나 전승된 이야기를 포함한다. 구술증언은 과거의 특정 사건이나 경험을 현재로 불러내어 진술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경험담이나 목격담을 포함한다. 구술생애사는 한 개인이 태어나서 현재까지 살아온 경험을 현재로 불러내어 서술한 것으로, 개인의 삶 자체를 중심으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구술증언과 구분된다(한국구술사연구회, 2005, pp.20-22; 윤택림, 2019, pp.92-93).

이 가운데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구술증언은 특정 사건이나 경험에 대한 개인의 기억을 진술한 기록이다. 구술증언은 개인의 전 생애를 포괄적으로 서술하는 구술생애사와 달리, 특정 사건의 진행 과정, 성격, 원인과 결과, 그리고 그 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개인의 기억을 중심으로 한다. 따라서 구술증언은 반드시 사건의 직접 목격자나 참여자의 진술에만 한정되지 않고, 특정한 사회적 역할, 계급, 신분, 위치 속에서 사건을 경험한 사람의 기억을 통해 사건의 의미를 드러내는 자료가 될 수 있다(윤택림, 2019, p.93). 또한 구술증언은 “과거 특정 사건과 경험을 현재로 불러낸 것(정연경, 2022, p.74)”으로도 불리며, 특정 사건에 대한 경험담이나 목격담을 포함한다고 보았다.

구술증언 중에서도 과거사 진상 규명 구술증언은 국가폭력, 인권침해, 전쟁, 강제동원, 민간인학살, 민주화운동, 사회적 참사 등과 같이 공식 기록만으로 충분히 확인하기 어려운 사건에 대한 피해자, 생존자, 유가족, 목격자, 관련자의 진술을 의미한다. 일반적인 구술증언이 특정 사건에 대한 개인의 경험과 기억을 기록화한 것이라면, 과거사 진상 규명 구술증언은 그중에서도 은폐되거나 왜곡되었거나 공식 기록에서 충분히 설명되지 않은 피해 사실과 사건의 경과를 드러내고, 진실 규명과 피해 회복, 책임 확인, 공적 기억 형성에

기여하는 증언적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과거사 진상 규명 구술증언은 개인의 기억에 기반한 기록이면서 동시에 사회적·역사적 사실을 확인하고 공론화하는 데 활용될 수 있는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

2) 구술기록의 특성과 관리상 쟁점

구술기록의 첫 번째 특성은 구술성이다. 구술기록은 문어가 아니라 구어를 바탕으로 생산된다. 구술자의 말투, 억양, 발화 속도, 반복, 머뭇거림, 침묵, 웃음, 울음, 한숨 등은 부수적 요소가 아니라 구술자의 경험과 감정, 기억의 상태를 드러내는 중요한 정보이다. 구술기록은 문어가 아닌 구어를 통해 생산되며, 구어에는 구술자의 성별, 연령, 직업, 교육 수준, 계층적 위치 등이 내재되어 있다(이은비, 2021, pp.19-20). 구술기록에서 언어적 발화만으로는 구술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충분히 재현하기 어렵고, 비언어적 행위까지 함께 고려해야 구술증언의 의미를 깊이 이해할 수 있다(강재성, 2019, pp.77-80). 이 점에서 구술기록은 말의 내용뿐 아니라 말하는 방식까지 기록의 의미를 구성한다.

두 번째 특성은 주관성과 개인성이다. 구술기록은 과거의 사건을 있는 그대로 복제한 기록이 아니라, 구술자가 자신의 기억을 현재의 시점에서 재구성하여 말한 기록이다. 따라서 구술기록에는 기억의 선택, 망각, 해석, 감정, 현재적 판단이 반영된다. 이러한 주관성은 구술기록의 신뢰성을 둘러싼 논쟁을 낳기도 하지만, 동시에 구술기록이 지니는 중요한 가치이기도 하다. 구술기록의 의미는 객관적 사실관계를 얼마나 정확히 전달하는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술자가 특정 사건과 경험을 어떻게 기억하고 해석하며 의미화하는지를 보여주는 데 있다. 구술기록의 가치는 객관적 진실을 얼마나 담고 있는가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구술자가 특정 주제나 사안에 대해 어떠한 기억과 인식을 지니고 있는지를 풍부하게 확보하는 데 있다(손동유, 권용찬, 2013, pp.151-152).

세 번째 특성은 상호작용성이다. 구술기록은 구술자가 혼자 생산한 기록이 아니라 구술자와 면담자의 만남 속에서 만들어진다. 면담자는 구술자의 기억

을 끌어내기 위해 질문을 구성하고, 대화를 조정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 질문이나 확인 질문을 통해 구술의 방향을 형성한다. 이호신은 구술사 인터뷰에서 구술자는 이야기 서술의 실질적 주체로 창작적 표현을 만들어내고, 채록자는 적절한 개입과 질문을 통해 구술의 내용을 풍성하게 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구술기록은 구술자와 채록자가 함께 만들어내는 공동저작물의 성격을 지닌다(이호신, 2010, pp.49-61). 이처럼 구술기록은 구술자의 기억과 면담자의 질문, 면담 상황, 라포 형성, 조사 목적이 결합되어 생산되는 상호작용적 기록이다.

네 번째 특성은 맥락성이다. 구술기록은 발화 내용만으로 완전히 이해되기 어렵다. 구술자가 어떤 배경에서 구술에 참여했는지, 면담자는 어떤 목적과 질문지를 가지고 접근했는지, 구술자는 어떤 부분을 공개하거나 비공개하기를 원했는지, 검독 과정에서 어떤 수정이 이루어졌는지 등이 함께 남아야 구술기록의 의미를 정확히 해석할 수 있다. 구술기록은 생산할 때 기획 단계에서부터 배경과 목적, 구술 진행 과정, 산출물 취합 과정, 해제와 평가까지 기록화되어야 한다(손동유, 권용찬, 2013, pp.135-136). 또한 구술기록은 생산과 수집 주체의 다양성, 상호작용성, 생산 맥락을 지니기 때문에 구술면담 전후의 기록까지 포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최정은, 2011, pp.24-27). 따라서 구술기록의 신뢰성과 활용 가능성은 구술 내용 자체뿐 아니라 그 생산 맥락이 얼마나 충분히 기록되어 있는가에 달려 있다.

다섯 번째 특성은 유일성이다. 구술기록은 같은 구술자에게 같은 질문을 하더라도 동일하게 반복 생산되기 어렵다. 구술자의 기억은 시간의 흐름, 면담 상황, 심리 상태, 면담자와의 관계에 따라 다르게 구성될 수 있다. 구술기록은 화자의 경험 회상과 기억 재구축 과정에서 현장적으로 생산되므로, 같은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도 매번 다른 결과물이 만들어질 수 있다(이은비, 2021, pp.21-22). 따라서 구술기록은 일회적이고 유일한 성격을 지니며, 생산 당시의 조건과 맥락을 함께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표 1]과 같다.

[표 1] 구술기록의 특성

구분	주요 내용	관리상 쟁점
구술성	- 구어를 기반으로 생산되는 복합적 기록 - 말투, 억양, 침묵, 비언어적 행위 등 내재	- 정제되지 않은 표현의 위험성
주관성·개인성	- 과거 사건에 대한 현재 시점의 기억 재구성 - 기억의 선택·망각·해석 및 감정 반영	- 사실관계의 충돌과 진위 논쟁 - 사생활 침해와 비밀 노출
상호작용성	- 구술자와 면담자 간 만남·질의의 산물 - 양 주체가 결합된 공동저작물 성격	- 저작권 및 소유권의 복잡성
맥락성	- 기획, 정리, 검독, 동의 전 과정의 결합	- 맥락 기록(메타데이터) 관리의 어려움
유일성	- 심리·상황에 따른 현장적 일회 생산	- 대체불가능성

구술기록은 구어를 기반으로 말투와 침묵 등 비언어적 행위까지 내재한 복합적 기록이지만 정제되지 않은 표현의 위험성이 따르며, 과거 사건을 현재 시점에서 재구성하는 주관적 특성으로 인해 사실관계의 충돌이나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또한, 구술자와 면담자 간의 상호작용으로 만들어진 공동저작물로서 저작권 관계가 복잡하고, 기획부터 동의까지 전 과정이 결합된 맥락성을 지녀 메타데이터 관리가 까다로우며, 심리와 상황에 따라 현장에서 일회적으로 생산되기에 대체 불가능한 유일성을 지닌다. 결론적으로 구술기록은 구술 상황의 생생한 맥락과 주관성을 담아내는 독창적인 자산이지만, 이를 공개하는 과정에서는 실무적 난제들을 섬세하게 해결해야 하는 복합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3) 과거사 진상 규명 구술증언의 특성

과거사 진상 규명 구술증언은 국가폭력이나 인권침해와 같이 공식 기록만으로는 충분히 확인하기 어려운 사건의 공백을 보완하는 자료이다. 강제동원 피해조사 과정에서 생산된 구술자료는 문헌자료에서 확인할 수 없는 사실을 드러내거나 기존 문헌자료의 오류를 확인하는 데 활용되었고, 피해생존자의 구술은 피해신고 조사와 진상조사에서 중요한 근거 자료로 사용되었다(권미

현, 2007, pp.305-308). 또한 한국전쟁기 민간인학살 진상 규명 운동에서도 구술은 국가권력의 통제로 공식 기록이 되지 못한 폭력을 역사화하는 기능을 수행하였으며, 생존자와 유가족의 말하기는 사건의 존재를 사회적으로 드러내는 증언의 역할을 하였다(김태인, 2025, pp.13-16). 이 점에서 과거사 진상 규명 구술증언은 문헌기록의 보조 자료에 머무르기보다, 사건의 존재와 피해 양상을 확인하게 하는 독자적인 역사 자료로 이해할 수 있다.

과거사 진상 규명 구술증언은 피해자의 경험을 공적 장으로 이끌어내는 성격도 가진다. 제주4·3의 경우, 민주화 이후 진상 규명 운동이 전개되면서 증언채록이 이루어졌고, 증언자료집의 발간은 오랫동안 말하지 못했던 4·3 경험을 사회적으로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김은희, 2022, pp.163-166). 여순 10·19 관련 구술 역시 문헌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와 유족의 기억을 수집하고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한 자료로 제시되었다(박병섭, 2019, pp.127-132). 4.16구술증언사업에서도 구술은 국가와 언론이 감추거나 왜곡해 온 참사의 진실을 기록하고 보존하기 위한 실천으로 수행되었으며, 단순한 기록 수집을 넘어 피해자의 말하기를 듣고 공동체적 애도를 실천하는 과정으로 이해되었다(이현정, 2019, pp.11-18). 이러한 사례들은 과거사 진상 규명 구술증언이 사건의 사실 확인뿐 아니라 피해자의 말하기를 사회적으로 승인하고, 공적 기억을 형성하는 과정과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과거사 진상 규명 구술증언은 그 성격상 관리상 쟁점을 동반한다. 첫째, 과거사 구술증언은 민감한 개인정보와 사생활 정보를 포함한다. 구술자는 피해 사실뿐 아니라 가족관계, 신체적·정신적 피해, 가해자와 목격자에 관한 정보, 특정 지역공동체의 갈등, 사건 이후의 낙인과 차별 경험 등을 함께 말할 수 있다. 특히 과거사 진상 규명 관련 위원회의 면담조사기록은 해방, 전쟁, 민주화 등 한국 근현대사의 민감한 사건을 다루며, 가해자와 피해자의 갈등이 현재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적인 구술기록보다 수집과 공개 과정에서 더욱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조용성, 2009, pp.77-82). 따라서 구술증언을 관리할 때에는 공개 여부를 단순히 기록의 역사적 가치만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구술자와 관련자의 권리, 사생활 침해 가능성, 공동체 내 2차 피해 가능성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둘째, 과거사 진상 규명 구술증언은 사실성과 주관성의 관계를 신중하게 다루어야 한다. 구술은 개인의 기억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시간의 경과, 고령, 트라우마, 침묵과 망각, 면담 상황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강제동원 구술자료의 경우 피해생존자의 고령화로 인해 구술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었고, 동시에 오래전 경험의 사실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면담자는 구술자의 신고내용과 관련 기록을 사전에 검토하고, 구술 이후에는 문헌기록과 비교·분석하여 사실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권미현, 2007, pp.314-318). 제주4·3이나 5·18 관련 구술에서도 다수의 증언을 수집하고 상호 대조하는 과정은 증언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방식으로 활용되었다(강남진, 2023, pp.49-58; 김은희, 2022, pp.166-170).

셋째, 과거사 진상 규명 구술증언은 원자료와 가공자료의 관계를 명확히 관리해야 한다. 구술은 음성, 영상, 녹취문, 면담일지, 구술자 동의서, 사진, 기증자료, 조사보고서, 구술자료집 등 다양한 형태로 생산된다. 이 가운데 녹취문이나 구술자료집은 활용 편의를 높이는 자료이지만, 구술자의 억양, 침묵, 표정, 몸짓, 면담 당시의 분위기와 같은 비언어적 맥락을 충분히 담지 못한다. 따라서 구술증언의 관리는 녹취문이나 발간물만을 대상으로 하기보다, 음성·영상 원자료와 면담 관련 기록, 공개·활용 동의서, 면담일지 등을 포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조용성, 2009, pp.20-25; 이여진, 2026, pp.1-5). 특히 강제동원 구술기록의 경우 원사료인 음성기록은 비공개되어 있고, 발간 구술자료집은 공개되어 있으나 원문보기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등 기록의 원자료, 가공자료, 서비스 자료 사이에 접근성 차이가 존재한다(이여진, 2026, pp.9-10).

넷째, 과거사 진상 규명 구술증언은 기록의 맥락을 보존하기 위한 기술과 접근도구가 필요하다. 구술기록은 구술자별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고, 내용이 생애사적 흐름을 따라 전개되기 때문에 이용자가 특정 사건, 장소, 피해 유형, 동원 유형, 관련 인물, 조사 맥락 등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강제동원 구술기록의 경우 동원 산업 유형, 동원지, 노동 실태, 임금, 음식, 귀환 과정 등 주제별 접근이 가능하도록 기술 계층과 기술 요소를 설계할 필요가 제기

되었다(이여진, 2026, pp.12-25, 44-49). 또한 강제동원 기록은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으며, 명부와 문서 중심의 서비스만으로는 사진, 구술, 박물자료 등 다양한 기록 유형을 충분히 포괄하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된다(나종일, 2024, pp.9-28). 따라서 과거사 구술증언의 공개 전환을 검토할 때에는 기록의 존재 여부만이 아니라, 이용자가 기록의 내용과 맥락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정보, 검색도구, 관련 기록과의 연계 정보가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다섯째, 과거사 진상 규명 구술증언은 공개와 활용의 공익성이 크지만, 동시에 증언의 제도화가 새로운 배제를 만들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국가 주도의 과거사 청산 과정에서 피해 증언은 피해자로 공인받기 위한 검증 대상이 되며, 피해 기준과 검증 방식은 제도에 의해 선규정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제도가 승인한 증언과 승인하지 않은 증언 사이의 위계가 형성될 수 있으며,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못한 피해 경험은 다시 주변화될 수 있다(송혜림, 2025, pp.5-14, 157-164). 그러므로 과거사 구술증언의 관리는 증언을 단순히 진실규명의 증거로만 다루기보다, 어떤 증언이 공개되고 어떤 증언이 배제되는지, 공개 전환 과정에서 구술자의 의사와 권리가 충분히 반영되는지, 국가나 기관의 활용 목적이 구술자의 말하기를 다시 통제하지는 않는지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

여섯째, 과거사 진상 규명 구술증언은 활용 과정에서도 윤리적 검토가 필요하다. 구술아카이브는 과거사 진상 규명과 집단기억의 재현, 아래로부터의 역사 서술, 보통 사람과 소수자의 목소리 재현에 활용될 수 있으며, 전시와 교육을 통해 대중적 인식을 확산시키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전예은, 2021, pp.29-32, 79-84). 그러나 활용이 확대될수록 구술자의 고통이 전시나 콘텐츠의 소재로 소비될 위험도 존재한다. 4.16구술증언사업이 보여주듯이, 피해자의 말하기는 연구자의 기록 행위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어떻게 듣고, 보존하고, 공개하며, 사회적으로 수용할 것인가의 문제와 결합된다(이현정, 2019, pp.26-34). 따라서 과거사 진상 규명 구술증언의 활용은 공익적·교육적 가치뿐 아니라 구술자와 유가족, 관련 공동체의 감정과 권리, 사후 관리 절차를 고려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표 2]와 같다.

[표 2] 과거사 진상 규명 구술증언의 특성

특성	주요 내용
사건 중심의 증언성	- 특정 역사적 사건의 피해 사실, 목격 경험, 사건의 경과, 관련자의 행위, 사건 이후의 삶에 남은 영향을 진술하는 성격을 가진다.
공식 기록의 보완성	- 국가폭력, 인권침해, 강제동원, 재난 등 공식 문헌기록만으로 충분히 확인하기 어려운 사건의 공백을 보완한다.
공적 기억 형성	- 피해자와 유가족의 말하기를 통해 그동안 침묵되거나 배제되었던 경험을 사회적으로 드러내고, 사건에 대한 공적 기억을 형성한다.
민감정보 및 제3자 정보 포함성	- 구술 과정에서 피해 경험, 가족관계, 건강, 정치적 경험 등 민감한 개인정보와 함께 가족, 가해자, 목격자 등 제3자에 대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
사실성과 주관성의 결합	- 구술증언은 개인의 기억과 해석을 바탕으로 하므로 시간의 경과, 고령, 트라우마, 면담 상황 등의 영향을 받으며 사실성과 주관성이 결합된 형태를 가진다.
공익성과 활용 윤리의 병존	- 과거사 진상 규명 구술증언은 진실 규명, 피해 회복, 역사 교육에 기여하는 공익적 가치가 있으나, 동시에 구술자의 고통이 소비될 위험도 내포한다.

이상을 종합하면, 과거사 진상 규명 구술증언은 국가폭력이나 인권침해, 재난, 전쟁, 식민지배와 관련된 피해 경험을 구술자의 언어로 기록한 자료이며, 공식 기록의 공백을 보완하고 사건의 존재와 피해 양상을 드러내는 역사적 증거로 기능한다. 동시에 그것은 피해자의 말하기를 통해 공적 기억을 형성하고, 기존의 국가 중심·문헌 중심 역사서술을 보완하거나 균열내는 자료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구술증언은 개인정보와 민감정보, 구술자의 동의, 사실성 검토, 원자료와 가공자료의 관계, 기술과 접근성, 공개와 활용의 윤리, 제도적 승인과 배제의 문제를 함께 내포한다.

제 2 절 구술기록의 비공개 사유

구술기록은 개인의 기억과 경험을 바탕으로 생산되는 기록이기 때문에 공개 과정에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구술기록에는 구술자의 생애 경험, 가족관계, 직업, 거주지, 사건 경험 등이 함께 포함될 수 있다. 특히 구술자는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개인정보뿐 아니라 피해자, 가해자

등 제3자와 관련된 정보를 함께 언급할 수 있다. 따라서 구술기록은 역사·연구 자료이면서 동시에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과 인격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록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구술기록이 비공개로 분류되는 첫 번째 이유는 구술자의 동의와 공개 범위가 구술기록 활용의 핵심 조건이기 때문이다. 구술자가 면담에 참여했다는 사실이 곧 모든 내용의 즉각적 공개에 동의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구술자는 구술 당시에는 말할 수 있었지만, 공개 단계에서는 특정 내용의 비공개를 원할 수 있다. 또한 구술의 목적, 공개 방식, 이용 범위, 온라인 제공 여부, 2차 활용 가능성 등을 충분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동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개 결정이 구술자의 의사와 어긋날 수 있다. 구술기록은 구술자와 채록자가 함께 만들어낸 공동저작물의 성격을 지니며, 적법한 활용을 위해서는 구술자와 채록자 모두의 허락이 필요하다. 또한 자료공개허가서는 저작물 사용의 법적 근거이자 구술자 보호와 저작물 사용의 가이드라인이 되므로, 활용 범위를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작성되어야 한다(이호신, 2010, pp.49-51).

두 번째 이유는 개인정보와 민감한 생애 경험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구술자는 자신의 경험을 설명하기 위해 이름, 주소, 병력, 피해 경험, 정치적 경험 등을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는 구술자의 신원을 식별하게 하거나, 구술자의 사적 영역을 외부에 노출시킬 수 있다. 또한 국가폭력, 민간인학살, 재난, 강제동원, 사회운동, 지역 갈등과 관련된 구술은 사건의 사실관계뿐 아니라 구술자가 겪은 고통, 분노, 슬픔, 침묵, 낙인의 경험을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4.16구술증언은 역사적 사건에 대한 증언이면서 동시에 한 인간의 경험, 기억, 사유, 고통을 담고 있으며, 구술자의 고통을 병리화해서도 안 되지만 그 고통의 실재성을 간과해서도 안 된다(김향수, 2019, pp.39-42). 이처럼 구술기록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증언이면서도 개인의 고통과 내밀한 경험을 포함하기 때문에 공개 범위와 시점을 신중하게 정해야 한다.

세 번째 이유는 구술기록에 제3자 정보와 명예훼손 가능성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구술기록은 구술자의 기억을 중심으로 구성되지만, 구술자의 기억은 언제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다. 따라서 구술자는 특정 사건을 설명하면서 제3자에 대한 평가나 판단을 함께 말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이 실명 또는 식별 가능한 방식으로 공개될 경우 제3자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구술기록의 활용이 공공역사의 영역으로 확대되고 대중과의 접합점이 커지면서 윤리적·법적 문제가 중요해졌다(박준규, 2022, pp.177-181). 이는 구술기록의 공개가 관련 인물과 공동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적·윤리적 문제임을 보여준다.

네 번째 이유는 구술기록 공개가 구술자에게 정서적·사회적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구술기록은 사건의 사실뿐 아니라 구술자가 그 사건을 겪으며 느낀 감정과 상처를 담는다. 특히 피해 경험을 말하는 구술의 경우, 말하기 자체가 고통스러운 기억을 다시 불러내는 과정이 될 수 있다. 구술자에게 안전한 구술이란 구술 참여 여부와 구술 내용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고, 과거의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다(김향수, 2019, pp.49-53). 이러한 논의는 구술기록의 보호가 채록 과정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공개와 활용 과정에서도 계속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즉 구술자의 고통과 취약성이 공개 이후 다시 소환되거나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면, 해당 기록은 일정 기간 비공개하거나 부분 공개 방식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다섯 번째 이유는 디지털 환경에서 구술기록의 공개 위험이 확대되기 때문이다. 구술기록이 온라인으로 제공될 경우, 자료는 빠르게 복제·전송·재가공될 수 있으며, 원래의 맥락과 무관하게 사용될 가능성도 커진다. 디지털화된 구술기록의 활용은 광범위한 다수와 빠른 속도로 정보를 공유하거나 공개하게 하면서 여러 법적·윤리적 문제를 야기한다(박준규, 2022, pp.182-183). 또한 과거의 공개 및 이용 동의서에 온라인 제공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기존 동의를 현재의 디지털 공개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남는다(박준규, 2022, pp.203-205).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표 3]과 같다.

[표 3] 구술기록의 비공개 사유

구분	주요 내용
구술자의 동의 및 공개 범위의 제한	- 면담·채록 참여 행위가 대중 공개나 즉각적 개방에 대한 무조건적 동의를 의미하지 않음. - 구술자와 채록자 간의 공동 저작 성격으로 인해 이용 목적 및 플랫폼 변동 시 기존 동의 범위의 재확인이 필요할 수 있음.

구분	주요 내용
개인정보 및 민감한 생애 경험	- 이름, 주소 등 정형 정보 외에 육성·얼굴·신체 묘사를 통한 정보 주체의 직간접적 신원 노출. - 과거사 진상 규명 구술기록의 경우 국가폭력, 참사 등 고도 민감 정보가 내포되어 있음. - 맥락을 통해 신원이 추정될 수 있어 단순한 식별정보 삭제만으로 보호하기 어려울 수 있음.
제3자 정보 및 명예훼손 가능성	- 진술 과정에서 가족, 동료, 가해자 등 제3자의 신상 및 주관적 가치평가가 편집되지 않은 형태로 포함됨. - 제3자 기술 내용의 실명 유포 시 인격권 침해, 명예훼손 소송 및 지역 공동체 내 갈등 유발.
정서적·사회적 2차 피해 우려	- 피해 경험 진술과 기억 재생 과정 자체가 구술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상처를 다시 자극함. - 구술자의 의사와 무관한 무분별한 개방 시 낙인, 관계 악화, 사회적 불이익 등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디지털 환경의 공개 위험 확대	- 웹 서비스 전환 시 초고속 복제·전송으로 인해 최초 생산 맥락과 무관하게 악용될 소지 다분. - 아날로그 시기에 체결된 과거 동의 체계를 현재의 디지털 플랫폼 개방에 그대로 적용하기 불가능함.

구술기록의 주요 비공개 사유를 살펴보면, 구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거나,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언급되는 주변 사람들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나 비판이 자칫 명예훼손이나 법적 소송으로 번질 위험도 크다. 여기에 더해, 인터넷 환경에 기록이 노출될 경우 처음 말했던 의도와는 완전히 다르게 짜깁기되거나 왜곡되어 퍼져나갈 수 있다는 디지털 복제의 위험까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개인의 권리 보호 문제들이 얽혀 있기 때문이다.

결국, 구술기록이 가진 민감한 위험성을 안전하게 완충하면서도, 비공개 상태에 있는 구술기록의 공적 활용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생산 당시에 설정된 비공개 사유들을 사후에 정밀하게 다시 검토하여 공개로 전환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제 3 절 선행연구 검토

비공개 구술기록의 공개 전환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구술기록이 어떠한 윤리적 조건 속에서 생산되었는지, 구술기록의 공개와 활용 과정에서 어떠한 법

적·제도적 쟁점이 제기되는지, 그리고 과거사 진상 규명 과정에서 구술증언이 어떤 역할을 수행해 왔는지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구술 과정의 연구윤리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연구는 구술증언이 단순한 정보 수집이 아니라 구술자의 고통, 기억, 권리, 관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기록 생산 과정이라는 점을 강조해 왔다. 김향수(2019)는 4.16구술증언 채록 과정에서 나타난 윤리적 난제를 분석하면서, 4.16구술증언은 참사라는 역사적 사건에 대한 증언이자 동시에 죽음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싸움에 참여한 한 인간의 경험과 사유를 담는 기록이라고 보았다. 특히 구술자를 고통을 겪는 피해자로만 보거나, 반대로 권리를 가진 주체로만 보는 방식 모두 한계가 있으며, 구술 과정에서는 구술자의 고통의 실재성과 말하고자 하는 욕망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안전한 구술'은 구술 참여와 구술 내용으로 인해 구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말하고 접근하기 안전한 공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이현정(2019)은 4.16구술증언사업의 진행 과정을 검토하면서, 해당 사업이 국가와 언론이 감추거나 왜곡해 온 참사의 진실을 기록하고 보존하기 위한 활동이었다고 보았다. 이 연구는 4.16구술증언사업을 참사 피해자의 '말하기의 정치'를 연구자들이 '듣기의 윤리'로 수용한 실천으로 평가하고, 구술증언이 진상 규명 운동, 공동체적 애도, 시민적 공감의 형성과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박준규(2016)는 IRB와 구술사 연구윤리의 관계를 검토하면서, 구술사 연구는 인간을 일방적인 연구대상으로 삼는 연구라기보다 인간의 참여와 협력으로 이루어지는 연구라고 보았다. 이에 따라 생명의학 중심의 IRB 기준을 구술사 연구에 기계적으로 적용할 경우, 구술사 연구의 특수성과 충돌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구술증언이 피해자의 기억과 고통을 다루는 민감한 기록이며, 구술 과정에서 구술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밝힌다. 그러나 주된 논의가 구술자료의 생산 과정, 즉 섭외, 동의, 면담, 연구윤리에 집중되어 있어, 이미 생산되어 비공개 상태로 관리되는 구술기록의 공개 가능성을 사후적으로 어떻게 검토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

다.

둘째, 구술기록의 법적 권리와 공개·활용에 관한 연구는 구술기록이 구술자, 면담자, 제3자의 권리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공개와 활용 과정에서 법적·윤리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이호신(2017)은 개인정보 보호법이 구술자료의 수집과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그는 구술자료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뿐 아니라 구술 속에 등장하는 제3자의 개인정보와 인격권을 포함할 수 있다고 보았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구술자료의 수집과 서비스가 지나치게 제한될 수 있으며, 구술자료의 진본성과 내재적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구술사 자체의 독자적인 윤리 기준과 제3자 인격권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박준규(2022)는 북미 사례를 중심으로 공공역사에서 구술자료가 활용될 때 발생하는 법적·윤리적 쟁점을 검토하였다. 이 연구는 구술자료의 공개와 활용 과정에서 피해자 중심 접근, 탈식민 아카이브, 권력구조 비판 등의 윤리적 쟁점이 나타나며, 법적 측면에서는 구술자료의 강제공개, 명예훼손, 인터넷 환경에서의 활용 문제가 중요하다고 설명하였다.

송치욱(2024)은 현대한국구술자료관의 공개 현황과 기준을 검토하면서, 구술자료의 공개를 위해서는 구술자와 면담자의 공개·활용 동의서와 같은 권리문서 확보가 필수적이며, 내용과 형식에 대한 검수를 통해 명예훼손, 비공개 부분, 녹취록의 완성도를 점검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원본과 공개본을 구분하여 생산하고, 공개본에서는 명예훼손이나 비공개 부분을 제외하는 방식을 제시하였다.

홍선이(2024)는 국사편찬위원회의 구술자료 공개 현황을 검토하면서, 2004년부터 2023년까지 대규모 구술자료가 수집되었음에도 2004~2022년 수집 자료는 주로 목록만 제공되고 영상과 녹취록은 열람실 내 지정 PC에서만 이용 가능하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기수집 자료의 온라인 공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제3자 명예훼손 등 법적·윤리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관련 작업이 중단되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이들 연구는 구술기록의 공개와 활용을 위해 권리문서, 개인정보 보호, 명

예훼손 검토, 공개본 생산, 접근 제한 등의 조치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그러나 공개와 활용의 일반적 쟁점이나 기관별 현황을 다루는 데 초점이 있으며, 비공개 구술기록을 대상으로 공개, 부분 공개, 제한공개, 비공개 유지와 같은 단계적 판정 기준을 제시하는 데까지 나아가지는 못하였다.

셋째, 과거사 진상 규명 구술증언 및 관련 기록 연구는 구술증언이 국가폭력이나 인권침해의 피해 사실을 드러내고, 문헌기록의 공백을 보완하며, 사회적 기억을 형성하는 데 기여해 왔음을 보여준다. 이주영(2011)은 민간인학살 사건의 대항기억을 역사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구술기록을 검토하였다. 이 연구는 공식기록에서 배제되거나 침묵되었던 기억이 구술을 통해 대항기억으로 기록화될 수 있으며, 민간인학살사건과 같이 소외된 기억을 역사화하는 데 구술기록이 중요한 매개가 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허영선(2022)은 제주4·3연구소의 구술사료 수집 성과와 과제를 검토하면서, 제주4·3 구술이 피해자, 유족, 여성, 후유장애인, 수형인 등의 증언을 축적해 왔고, 공식기록으로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던 피해 경험과 지역 공동체의 기억을 복원하는 데 기여하였다고 보았다.

권미현(2007)은 강제동원 구술자료의 관리와 활용을 다루며,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에서 생산된 구술자료가 진상 규명과 피해 사실 확인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만, 한시적 위원회 조직의 제약 속에서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과거사 진상 규명에서 구술증언이 피해 사실 확인, 기억의 복원, 문헌기록의 보완, 사회적 기억 형성에 중요한 자료임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들 연구 역시 구술증언의 수집, 관리, 기술, 역사화, 진상 규명에서의 역할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비공개 상태로 남아 있는 구술증언을 시간이 경과한 뒤 어떤 기준에 따라 공개로 전환할 수 있는지는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았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기존 연구는 구술기록의 생산 과정에서 요구되는 연구윤리와 피해자 보호, 구술기록의 공개와 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윤리적 쟁점, 그리고 과거사 진상 규명 과정에서 구술증언이 수행한 역할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 이러한 연구들은 구술기록이 피해자의 고통과 기

억을 담는 민감한 기록이자, 문헌기록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험과 사회적 기억을 보완하는 중요한 자료임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기존 연구는 대체로 구술기록의 수집, 관리, 기술, 활용 또는 공개 현황에 초점을 두었으며, 이미 비공개로 분류되거나 이용이 제한된 구술기록을 시간이 경과한 뒤 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개로 전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루지 못하였다. 특히 과거사 진상 규명 구술증언은 피해자와 유족, 제3자의 사생활, 명예, 민감정보를 포함할 수 있어 보호 필요성이 크지만, 동시에 국가폭력과 인권침해의 진실 규명, 피해 회복, 사회적 기억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공적 가치도 지닌다. 이에 본 연구는 비공개 구술기록, 그중에서도 과거사 진상 규명 구술증언을 중심으로 공개 전환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한다.

HANSUNG UNIVERSITY

제 3 장 국내 구술기록 현황 및 국내외 법령 분석

본 장에서는 비공개 구술기록의 공개 전환을 논의하기에 앞서, 국내 구술기록의 수집·공개 현황과 국내외 법령을 검토하고자 한다. 제1절에서는 국내에서 구술기록이 수집·관리되어 온 현황을 살펴보고, 과거사 진상 규명 관련 구술기록의 공개 방식과 원자료 접근의 제한 양상을 확인한다. 제2절에서는 국내 법령상 기록 공개와 개인정보 보호, 제한적 열람 및 연구 목적 이용과 관련된 규정을 검토한다. 제3절에서는 독일, 과테말라, 프랑스의 법령을 통해 기록의 보호기간, 사망·출생 기준, 공익적 접근, 인권침해 기록의 공개, 학술·교육 목적 이용과 관련된 규정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 국내 구술기록의 공개 현황과 법령상 논의 지점을 함께 파악하고자 한다.

제 1 절 국내 구술기록의 수집·공개 현황

국내 구술기록은 국가기관, 정부출연기관, 지방정부, 공공단체, 연구기관, 민간단체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수집되어 왔다. 특히 2000년대 이후 구술자료 수집과 구술사 연구가 양적으로 성장하였고, 국사편찬위원회, 국립예술자료원, 한국학중앙연구원, 국립영상자료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등 정부 유관 연구기관뿐 아니라 지방사·시사·군사 편찬 과정에서도 구술자료 수집이 일반화되었다(김원, 2022, pp.100-102). 이러한 흐름은 과거사 진상 규명과도 밀접하게 관련된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5·18기념재단 등은 각각 민간인 학살, 민주화운동, 강제동원,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구술자료를 수집해 왔다(선영란, 2019, pp.125-126).

그러나 구술기록의 수집 확대가 곧 원자료의 공개와 활용 확대로 이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중앙 및 지방 정부기관과 공공단체에서 구술 채록과 구술 간행물 출간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구술 아카이브 구축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많은 기관에서 간행물 발간을 목적으로 구술자료

수집이 추진되었고, 원자료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보존 대책은 부족하다(선영란, 2019, p.125). [표 4]를 보면 이러한 문제는 더욱 분명하게 나타난다.

[표 4] 국가기록원 소장 과거사 진상 규명 구술기록 현황

(기준일: 2026.01.22.)

순서	생산기관	건수	공개구분
1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1,402	비공개
2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1,362	비공개
3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67	비공개
4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사무처 조사1팀	2	비공개
총 합계		2,833	

국가기록원 소장 기록 중 '구술'을 포함하는 녹음 및 영상 형태의 기록 중 과거사 진상 규명과 관련된 기록을 조사한 결과, 2026년 1월 22일 기준 총 2,833건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해당 구술기록 2,833건은 모두 비공개 상태로 확인된다. 또한 국가기록원은 구술기록에 대한 별도의 분류체계나 공개재분류 절차는 존재하지 않으며, 일반 기록물과 동일한 방식으로 관리되고 있었다.

[표 5] 주요 국내 기관의 과거사 진상 규명 관련 구술기록의 수집·서비스 현황

기관명	구술주제	서비스 방식
국가기록원	강제 동원 피해 진상 규명,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 규명 구술 등	- 비공개
성평등가족부	위안부 피해자 구술증언	- 간행물 11권 발간 - 원자료는 비공개
5.18기념재단 아카이브	5.18민주화운동 구술자료	- 410여명의 구술 수집(피해자 구술 제외) - 증언집 16권, 목록집 1권 발간 - 원자료는 비공개
제주4.3평화재단	제주4.3 관련 증언 채록	- 1,035명의 증언 채록 - 간행물 20권 발간 - 원자료는 비공개

(선영란, 2019, pp.126-129 참고)

[표 5]를 보면 과거사 진상 규명과 직접 관련된 주요 기관의 구술자료 역

시 원자료 공개가 제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성평등가족부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구술증언, 5·18기념재단의 5·18민주화운동 구술자료, 제주4·3 관련 증언 채록, 국가기록원 소장 강제동원 및 과거사 관련 구술기록은 모두 원자료 비공개 상태로 확인된다. 특히 비공개 구술기록의 정확한 건수, 비공개 사유, 비공개 기간, 공개 전환 검토 가능 여부를 체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목록은 부재하거나 제한적으로만 제공되고 있다. 즉, 국내 과거사 관련 구술기록은 간행물, 증언집, 자료집, 목록집의 형태로 일부 내용이 공개되거나 정리된 경우가 있으나, 음성·영상 원자료와 전체 녹취록의 공개는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구술자료는 구술자의 육성, 표정, 침묵, 발화 방식, 면담 맥락 등을 포함하는 복합적 기록이지만, 간행물은 이를 편집·가공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간행물 발간을 곧 구술 원자료 공개로 보기는 어렵다.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 검토의견 : 해당 기록물은 강제동원 피해자의 구술영상(피해자명, 피해자 본적, 생년월일, 사망자와의 관계)이며, 심의결정통지서(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기재), 무연고 조선인의 유가족명, 피해자명 등이 나오며, 한인회 피해자 유가족의 강제동원 피해진술 영상에는 피해자명, 강제동원 관련 진술, 사망자와의 관계, 피해자 본적, 생년월일 등의 개인정보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비공개

- 다만, 유족 및 진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는 본인이 진술한 녹화·녹음 기록은 공개

○ 검토결과 : 비공개

[그림 2] 2022년 국가기록원 구술기록 공개재분류 심의 내용

[그림 2]는 2022년 국가기록원의 구술기록 공개재분류 심의 내용이다. 대상 기록물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의 구술 영상으로, 검토 결과는 비공개로 결정되었다. 검토 의견에 따르면 해당 기록물에는 피해자명, 피해자 본

적, 생년월일, 사망자와의 관계, 강제동원 관련 진술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해당 기록물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1]에 근거하여 비공개로 판단되었다.

이 사례에서 비공개 결정 자체는 현행 제도 안에서 자연스러운 판단이라고 볼 수 있다. 대상 기록물이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의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고, 사망자와의 관계나 피해 진술처럼 민감한 내용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사례는 동시에 중요한 질문을 제기한다. 해당 구술기록은 시간이 경과한 기록이며, 정보 주체가 사망한 이후에도 여전히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계속 비공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는가? 특히 이 기록은 개인의 신상정보만을 담은 자료가 아니라 강제동원 피해 경험을 증언하는 역사적·사회적 의미를 지닌 구술기록이다. 따라서 이를 장기간 비공개 상태로 두는 것이 기록관의 보존과 활용이라는 역할에 부합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 구술기록은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수집되어 왔으며, 특히 강제동원, 5·18민주화운동, 제주 4·3, 민간인학살 등 과거사 진상 규명과 관련하여 중요한 증언 자료로 축적되어 왔다. 그러나 구술기록의 수집 확대가 곧 원자료의 공개와 활용 확대로 이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국가기록원 소장 구술기록 2,833건이 모두 비공개 상태로 확인되고, 주요 과거사 관련 기관의 구술자료 역시 간행물이나 증언집 형태로 일부 내용이 공개되었을 뿐 음성·영상 원자료와 전체 녹취록의 공개는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비공개 구술기록의 정확한 건수, 비공개 사유, 비공개 기간, 공개 전환 검토 가능 여부를 체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목록이나 절차도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 특히 2022년 국가기록원의 강제동원 피해자 구술 영상 공개재분류 사례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비공개가 결정된 사례이지만, 동시에 시간이 경과한 구술기록이 정보 주체의 사망 이후에도 계속 비공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는지, 역사적·사회적 의미를 지닌 증언기록을 어떠한 기준에 따라 다시 검토할 수 있는지라는 문제를 제기한다.

따라서 비공개 구술기록의 공개 전환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국내 현황 분석을 넘어, 공개 제한과 공개 전환의 판단 근거가 될 수 있는 법적 기준을 검

1)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다음 절에서는 국내외 법령을 분석하여 비공개 구술 기록의 공개 전환 검토에 참고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근거를 살펴보고자 한다.

제 2 절 국내 법령

한국은 기록의 공개 여부를 검토하는 데 있어 「공공기록물법」, 「정보공개법」, 「개인정보 보호법」이 함께 적용되는 특징이 있다. 관련된 법 조항들을 지금부터 살펴보고자 한다.

1) 공공기록물법

> *② 기록물관리기관은 비공개로 재분류된 기록물에 대해서는 재분류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마다 공개 여부를 재분류하여야 한다. 다만, 기록물관리기관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여 비공개로 재분류한 기록물에 대해서는 생산연도 종료 후 30년까지 공개여부 재분류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③ 비공개 기록물은 생산연도 종료 후 30년이 지나면 모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19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이관시기가 30년 이상으로 연장되는 기록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④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 생산기관으로부터 기록물 비공개 기간의 연장 요청을 받으면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38조에 따른 기록물공개심의회 및 위원회의 심의를 각각 거쳐 해당 기록물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공공기록물법 제35조)*

「공공기록물법」 제35조(기록물의 공개 여부 분류) 제3항은 '생산연도 종료 후 30년'이라는 정량적 가이드라인을 원칙적 공개의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조 제2항은 비공개 기록물에 대한 상시적인 개방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5년 주기 재분류'를 강제하고 있으나, 개인정보 포함 기록물에 대

해서는 '생산연도 종료 후 30년'까지 공개여부 재분류를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제4항은 생산기관의 비공개 기간 연장 요청이 있는 경우 기록물공개심의회와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비공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록의 보호 필요성과 공개 원칙을 절차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 *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비공개 기록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열람 청구를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한적으로 열람하게 할 수 있다.*
> *4. 개인이나 단체가 학술연구 등 비영리 목적으로 열람을 청구한 경우로서 해당 기록물이 아니면 관련 정보의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공공기록물법 제37조제1항제4호)*

「공공기록물법」 제37조는 비공개 기록물이라 하더라도 개인이나 단체가 학술연구 등 비영리 목적으로 열람을 청구하고, 해당 기록물이 아니면 관련 정보의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한적 열람을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정보공개법

>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정보는 제외한다(공개할 수 있다).*
>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정보공개법」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제1항제6호에서 예외적으로 공개를 허용하는 실체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은 기록물 내에 개인정

보나 사생활에 관한 서사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공공기관이 공익적 의무를 수행하거나 개인의 중대한 권리 침해 사실을 구제하기 위한 개방을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규정이다.

>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정보공개법 제9조제2항)*

「정보공개법」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제2항에서는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한 비공개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공개 전환 대상으로 전환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3) 개인정보 보호법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제1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제1항은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기록이라도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가명처리 등 보호조치를 전제로 활용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세 법률은 어느 하나가 일률적으로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는 관계라기보다, 해당 기록의 관리 주체와 법적 성격, 공개를 검토하는 절차, 포함된 정보의 내용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진다. 「공공기록물법」은 공공기록물의 공개 여부 분류와 주기적 재분류, 장기 비공개 기록의 공개 원칙 및 제한적 열람을 규율하고,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원칙과 비공개 사유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기능한다.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은 해

당 기록에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그 처리와 보호의 기준을 제공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6조[2]는 개인정보 처리와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 특별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개별 사안에서는 세 법률의 적용 범위와 특별규정의 존재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공개 전환 검토는 먼저 해당 구술기록이 「공공기록물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록물인지 확인하고, 공공기록물인 경우 공개재분류와 공개 시점에 관한 규정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후 실제 공개 가능성을 판단할 때에는 「정보공개법」의 비공개 대상 정보 해당 여부를 살펴보고,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처리 가능성과 보호조치를 함께 검토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특정 정보를 비밀 또는 비공개 대상으로 명시한 경우에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당 특별규정이 공개 여부 판단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 이처럼 세 법률은 각각 기록의 관리와 재검토, 공개 여부의 판단, 개인정보의 처리와 보호라는 서로 다른 층위에서 연결되어 작동한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국내 법령 규정들을 종합해 볼 때, 구술기록 공개 전환 검토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내용을 의미 단위로 추출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표 6]와 같다.

[표 6] 1차 분석: 국내 법령 분석 결과 의미 코드

구분	의미 단위	의미 코드
공공기록물법	비공개로 재분류된 기록물은 5년마다 공개 여부를 다시 분류함	5년 주기 공개재분류
	기록물은 생산연도 종료 후 30년이 지나면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생산 후 30년 공개 원칙
	개인정보를 포함한 기록은 생산 후 30년까지 공개재분류를 유예할 수 있음	개인정보 기록 재분류 유예
	생산기관의 요청과 심의를 거쳐 비공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심의를 통한 비공개 연장

2) ①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구분	의미 단위	의미 코드
	해당 기록이 아니면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학술연구에는 제한적 열람을 허용할 수 있음	학술연구 목적 제한열람
정보공개법	기간이 지나 비공개 필요성이 없어진 정보는 공개 대상으로 전환함	비공개 필요성 소멸 후 공개
	개인정보라도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해 필요하면 공개할 수 있음	공익·권리구제 목적 공개
개인정보 보호법	과학적 연구와 공익적 기록보존을 위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음	가명처리 후 연구·보존 이용

국내 법령을 의미 단위로 추출한 결과 5년 주기 공개재분류, 생산 후 30년 공개 원칙, 개인정보 기록 재분류 유예, 심의를 통한 비공개 연장, 학술연구 목적 제한열람, 비공개 필요성 소멸 후 공개, 공익·권리구제 목적 공개, 가명처리 후 연구·보존 이용, 총 8가지 1차 의미 코드를 도출할 수 있었다.

제 3 절 국외 법령

국외 법령은 비공개기록의 공개 전환 판단에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세 가지 유형을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독일은 기록의 일반 보호기간, 사망 후 이용 가능 시점, 출생연도 및 기록 생산일 기준과 함께 슈타지 기록을 통한 과거사 재평가 제도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검토하였다. 과테말라는 중대한 인권침해 및 반인도적 범죄 관련 정보의 비공개를 제한하고, 국가폭력 기록의 접근권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프랑스는 기록에 포함된 정보의 민감도에 따라 공개 제한기간을 차등화하고, 사망일 또는 출생일을 대체 기준으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비교 대상으로 검토하였다.

1) 독일

독일의 비공개 기록 공개와 이용에 관한 법적 기준은 기록의 성격과 이용 목적에 따라 여러 법률을 통해 규율된다. 본 연구에서는 그중에서도 연방기록의 일반적인 보호기간과 이용 기준을 규정하는 연방기록법

(Bundesarchivgesetz, 이하 BArchG), 개인정보의 처리와 연구 목적 이용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는 연방정보보호법(Bundesdatenschutzgesetz, 이하 BDSG), 구 동독 국가보안부가 생산한 기록의 보존·관리·이용을 별도로 규정하는 슈타지기록법(Stasi-Unterlagen-Gesetz, 이하 StUG)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세 법령은 각각 기록의 보호기간과 공개 시점, 개인정보와 민감정보의 처리, 국가폭력 관련 기록의 특수한 이용 목적을 규율한다는 점에서 비공개 구술기록의 공개 전환 검토에 서로 다른 시사점을 제공한다.

가) 연방기록법(BArchG)

(1) 연방 기록 보관 자료의 일반적인 보호기간은 법률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30년이다. 이 기간은 문서가 생성된 시점부터 시작된다.

(2) 제1항에 따른 보호기간이 만료된 후, 목적이나 본질적인 내용상 한 명 이상의 자연인과 관련된 연방 기록 자료는 해당 자연인의 사망일로부터 10년 이후에만 이용할 수 있다.

사망 연도를 확인할 수 없거나 과도한 노력을 들여야만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호기간은 해당 자연인의 출생일로부터 100년 후에 종료된다.

출생일 또한 확인할 수 없거나 과도한 노력을 들여야만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호기간은 해당 기록이 작성된 날로부터 60년 후에 종료된다[3].(BArchG, § 11)

3) (1) Die allgemeine Schutzfrist für Archivgut des Bundes beträgt 30 Jahre, sofern durch Rechtsvorschrift nichts anderes bestimmt ist. Sie beginnt mit der Entstehung der Unterlagen.
(2) Nach Ablauf der Schutzfrist des Absatzes 1 darf Archivgut des Bundes, das sich seiner Zweckbestimmung oder seinem wesentlichen Inhalt nach auf eine oder mehrere natürliche Personen bezieht, frühestens zehn Jahre nach dem Tod der jeweiligen Person genutzt werden.
Ist das Todesjahr nicht oder nur mit unverhältnismäßigem Aufwand festzustellen, endet die Schutzfrist 100 Jahre nach der Geburt der Personen.
Kann auch der Geburtstag nicht oder nur mit unvertretbarem Aufwand festgestellt werden, endet die Schutzfrist 60 Jahre nach der Entstehung der Unterlagen.
(3) Archivgut des Bundes, das aus Unterlagen besteht, die der Geheimhaltungspflicht

독일의 연방기록법(BArchG) 제11조 제2항에 따르면, 자연인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기록물의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인물이 사망(Tod)한 후 최소 10년이 경과해야만 이용할 수 있도록 차등적인 통제 축을 적용한다. 이때 정보 주체의 사망 연도를 확인할 수 없거나 이를 확인하는 데 부적절하고 과도한 행정적 비용이 소모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보호기간이 정보 주체의 출생(Geburt) 후 100년에 종료된다는 대안적 기산점을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정보 주체의 출생일조차 합리적인 수준에서 파악하기 불가능한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할 때는 해당 기록물이 생산된 시점을 기준으로 60년이 경과한 때 보호기간이 만료되도록 규정함으로써 법적 공백을 차단하고 있다.

> *연방 아카이브는 공공의 이익(im öffentlichen Interesse)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1조 제3항에 따른 보호기간(기밀 유지 기록물)을 최대 30년까지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4].(BArchG § 12(3))*

연방기록법(BArchG) 제12조 제3항은 법정 비밀유지 의무가 걸린 기밀 기록이라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이 소명될 경우 최대 30년까지 폐쇄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행정 재량권을 아카이브에 위임하고 있다.

나) 연방정보보호법(BDSG)

> *(1) 공공 기관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데이터를 수집한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개인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허용된다.*
> *3. 공공의 이익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을 방지하거나 공공의 안전, 국방 또는 국가 안보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의 이익이 걸린 중대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또는 세금 및 관세 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5].(BDSG § 23(1))*

nach § 6 Absatz 1 Satz 1 und Absatz 4 unterliegen, darf erst 60 Jahre nach seiner Entstehung genutzt werden.

4) Das Bundesarchiv kann die Schutzfrist nach § 11 Absatz 3 um höchstens 30 Jahre verkürzen oder verlängern, wenn dies im öffentlichen

5) (1) Die Verarbeitung personenbezogener Daten zu einem anderen Zweck als zu

독일의 연방정보보호법(BDSG) 제23조제1항제3호는 공공복리(Gemeinwohl)에 가해지는 중대한 불이익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 원래의 수집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공익적 예외를 규정한다.

(1)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규정 제9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범주의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과학적 또는 역사적 연구 목적이나 통계 목적을 위해 처리될 수 있다. 다만 그 처리가 해당 목적을 위해 필요하고, 처리에 대한 책임자의 이익이 정보주체가 처리를 배제하려는 이익보다 현저히 우월한 경우에 한한다.

(3) 제22조(2)에 언급된 조치 외에도, 과학적 또는 역사적 연구 목적이나 통계적 목적을 위해 처리되는 유럽연합 규정(EU) 2016/679 제9조(1)에 따른 특별 범주의 개인 데이터는 정보 주체의 정당한 이익이 이를 막는 경우를 제외하고, 연구 또는 통계적 목적을 위해 가능한 한 빨리 익명화되어야 한다. 그때까지는 개인적 또는 사실적 상황에 관한 개별 세부 정보를 특정 또는 식별 가능한 개인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특성은 별도로 저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특성은 연구 또는 통계적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개별 세부 정보와 결합될 수 있다.[6].(BDSG § 27)

demjenigen, zu dem die Daten erhoben wurden, durch öffentliche Stellen im Rahmen ihrer Aufgabenerfüllung ist zulässig, wenn

sie zur Abwehr erheblicher Nachteile für das Gemeinwohl oder einer Gefahr für die öffentliche Sicherheit, die Verteidigung oder die nationale Sicherheit, zur Wahrung erheblicher Belange des Gemeinwohls oder zur Sicherung des Steuer- und Zollaufkommens erforderlich ist,

6) (1) Abweichend von Artikel 9 Absatz 1 der Verordnung (EU) 2016/679 ist die Verarbeitung besonderer Kategorien personenbezogener Daten im Sinne des Artikel 9 Absatz 1 der Verordnung (EU) 2016/679 auch ohne Einwilligung für wissenschaftliche oder historische Forschungszwecke oder für statistische Zwecke zulässig, wenn die Verarbeitung zu diesen Zwecken erforderlich ist und die Interessen des Verantwortlichen an der Verarbeitung die Interessen der betroffenen Person an einem Ausschluss der Verarbeitung erheblich überwiegen."

(3) Ergänzend zu den in § 22 Absatz 2 genannten Maßnahmen sind zu wissenschaftlichen oder historischen Forschungszwecken oder zu statistischen Zwecken verarbeitete besondere Kategorien personenbezogener Daten im Sinne des Artikels 9 Absatz 1 der Verordnung (EU) 2016/679 zu anonymisieren, sobald dies nach dem Forschungs- oder Statistikzweck möglich ist, es sei denn, berechtigte Interessen der betroffenen Person

연방개인정보보호법(BDSG) 제27조는 민감한 인종, 정치적 견해, 건강 데이터 등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규정(EU GDPR)상 특별 범주에 속하는 개인정보라 할지라도, 과학적·역사적 연구나 통계적 목적을 위해서라면 정보 주체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도 처리할 수 있는 예외적 허용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연구를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적 이익이 정보 주체의 사생활 보호 이익보다 현저히 우월해야 한다는 비례성 원칙을 충족해야 하며, 정보 주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 사료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가능한 한 신속하게 익명화를 수행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다) 슈타지기록법(StUG)

> *(1) 본 법은 구 동독 국가보안부 및 그 전신·후속 기관(국가보안국)의 기록 등록, 보관, 관리 및 이용을 규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3. 국가안전부(Stasi)의 활동에 대한 역사적, 정치적, 사법적 재평가(reappraisal)를 보장하고 증진하는 것[7].(StUG Article 1(1))*

독재 정권의 반인권적 감시 기록을 다루는 슈타지기록법(StUG)은 제1조 목적 자체에 '역사적·정치적·사법적 재평가'를 명시함으로써, 국가폭력의 진상 규명과 피해자 권리 회복을 중요한 공익으로 규정하고 있다.

> *(1) 기록에 관련 당사자 또는 제3자에 관한 개인 정보가 포함된 경우, 해당 정보는 공공 및 민간 기관에서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필요에 따라 사용될 수 있다.*

stehen dem entgegen. Bis dahin sind die Merkmale gesondert zu speichern, mit denen Einzelangaben über persönliche oder sachliche Verhältnisse einer bestimmten oder bestimmbaren Person zugeordnet werden können. Sie dürfen mit den Einzelangaben nur zusammengeführt werden, soweit der Forschungs- oder Statistikzweck dies erfordert.

7) (1) This Act regulates the registration, safekeeping, administration and use of the records of the Ministry for State Security of the former German Demo- cratic Republic and its preceding and succeeding organizations (State Security Service) in order to
3. ensure and promote the historical, political, and juridical reappraisal of the activities of the State Security Service,

8) (1) If records contain personal data regarding persons concerned or third parties, they

1. 관련 당사자 및 실종자, 사망자의 재활, 보상, 수감자 관련 법률에 따른 지급;

2. 개인 정보 보호;

3. 실종자 및 원인 불명 사망 사건의 진상 규명;

4. 연금 급여법에 따른 연금 지급 중단 또는 정지, 또는 연금 급여법에 따른 지급액 감액, 불허 또는 지급 중단;

5. 구 동독 및 그 영토 내에 본부를 둔 구 동독 법인의 자산, 그리고 상업 조정 부문에 배정된 자산의 확인, 등록 및 보관;[8](StUG Article 21(1))

슈타지기록법(StUG) 제21조제1항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재활, 보상, 사생활 보호, 실종자 및 사망자의 운명 규명, 동독 관련 자산 확인과 같은 목적을 위해 이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즉 피해 회복과 권리 구제, 사실 확인이라는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이용 가능성을 인정한다.

(1) 기록에 관련인 또는 제3자에 관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이 이용할 수 있다.

1. 다음의 범죄를 기소하기 위해

a) 구 동독 정권과 관련된 범죄 행위, 특히 국가보안국, 기타 보안기관, 검찰 및 형사기관, 그리고 법원의 활동과 관련된 범죄 행위[9].(StUG Article 23(1))

may be used as necessary by public and private bodies for the following purposes:
1. rehabilitation of persons concerned and missing and deceased persons, compensation, payments pursuant to the Act regarding prisoners;
2. protection of privacy;
3. clarification of the fate of missing persons and of unexplained deaths;
4. cessation or suspension of pension payments according to the Pension Benefits Act or reduction or disallowance or cessation of payments pursuant to the Pension Benefits Act;
5. clarification, registration, and safekeeping of assets of the former German Democratic Republic and the former entities with headquarters within its territory, as well as the assets which were assigned to the Commercial Coordination sector;

9) (1) If records contain personal data regarding persons concerned or third par- ties, they

슈타지기록법(StUG) 제23조제1항은 사법 정의의 실현과 형사 책임의 추궁이라는 공익적 목적이 존재할 때, 법이 제공하는 인격권 보호의 제한 범위가 어디까지 완화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법적 이용 기준이다. 특히 1호 (a)목은 독재 정권의 핵심 기구가 자행한 체제 결탁적 범죄와 살인, 모살, 집단학살(Genocide) 등 반인도적 중범죄의 공소시효 및 기소 절차를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기록의 이용을 허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1) 연방기록원은 요청 시 국가보안국의 활동, 구 동독 또는 구 소련 점령 지역의 권력 메커니즘에 대한 정치·역사 분석 및 정치 교육 목적을 위한 연구 목적으로 다음 문서를 제공한다.

1.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기록물

2. 개인정보가 익명 처리된 기록물의 사본

- 개인정보가 명백한 경우는 제외

4. 현대사 인물, 정치적 직책 또는 공직 보유자에 관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기록물(단, 해당 정보가 현대사에서의 역할 또는 직책 수행과 관련된 경우에 한함)

5. 관련 당사자가 신청인의 이름, 프로젝트명 및 수행인을 명시하여 서면 동의한 경우, 기타 개인정보가 포함된 기록

6. 사망 후 30년이 지난 사망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 단, 과학 연구 프로젝트 목적 또는 정당한 이익 및 보호 가치가 있는 주요 이익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경우 보호기간은 10년으로 단축될 수 있다. 사망 연도를 확인할 수 없거나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출생 후 110년까지 보존할 수 있다. 1항부터 5항까지의 사항은 엄격히 금지된다.[10].(StUG Article 32)

may be used as necessary
1. for the prosecution of
a) criminal acts committed in connection with the regime of the former German Democratic Republic, particularly criminal acts committed

10) (1) Upon request, the Federal Archives provides the following documents for research for the purpose of political and historical analysis of the activity of the State Security Service, or of the power mechanisms of the former German Democratic Republic, or of the former Soviet occupation zone as well as for purposes of the political education:

슈타지기록법(StUG) 제32조는 정치적·역사적 분석과 정치교육 목적의 기록 이용을 별도 장으로 두고 있다. 이 규정은 비공개 또는 민감 기록이라도 학술 연구, 역사적 재평가, 시민교육이라는 목적이 인정될 경우 접근 가능성이 열릴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독일 법제는 연구 목적이면 가능하다고만 하지 않고, 익명화 가능성, 정보 주체의 보호 이익, 연구 수행 기관, 비밀유지 의무 등을 함께 고려한다.

세 법령의 관계는 기록의 유형과 포함된 정보, 이용 목적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지는 관계로 이해할 수 있다. 연방기록법(BArchG)은 연방기록 전반의 보호기간과 이용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을 제공하고, 연방정보보호법(BDSG)은 기록에 개인정보나 특별범주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그 처리와 보호의 기준을 보완한다. 반면 슈타지기록법(StUG)은 구 동독 국가보안부 기록이라는 과거사 진상 규명이라는 특정한 기록군을 대상으로 피해 회복, 책임 규명, 역사적·정치적 재평가, 연구와 교육 등을 위한 이용 기준을 별도로 규정한다. 따라서 일반적인 연방기록의 이용에서는 연방기록법(BArchG)을 중심으로 검토하되, 개인정보의 처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BDSG의 보호 기준을 함께 고려하고, 슈타지 기록과 같이 StUG의 적용 대상이 되는 기록은 해당 특별규정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구조로 이해할 수 있다.

1. records not containing personal data;
2. duplicates of records in which personal data have been rendered anonym
- ous, unless these personal data are obvious;
3. records containing personal data regarding
- employees of the State Security Service, unless they were under 18 years old at the time in which their activities for the State Security Service occurred, or
- beneficiaries of the State Security Service;
4. records containing personal data regarding personages of contemporary history, holders of political functions or a public office, as long as the data concerned refer to their role in contemporary history or the exercise of their functions or office;
5. records containing other personal data if the persons concerned have given their written consent specifying the name of the applicant specifying the name of the applicant, the project and the persons who will carry it out;
6. documents with personal data on deceased persons whose deaths date back 30 years; this retention period can be reduced to ten years if the use for a scientific research project or required to obtain justified interests and preponderant interests worth being protected are not impaired; if the year of death cannot be determined or can only be determined with unwarranted expense, the retention period ends 110 years after birth; the Numbers 1 to 5 remain inviolate;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독일 법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독일 법제는 비공개 구술기록의 공개 전환을 검토할 때, 구술자와 관련 인물의 사망 여부, 출생연도 확인 가능성, 기록 생산 후 경과 기간을 함께 고려하는 다양한 기산점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둘째, 독일 법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기밀 유지 기록물의 보호기간을 최대 30년까지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는 행정 재량권을 아카이브에 위임하고 있다.

셋째, 독일 법제는 비공개 구술기록의 공개 전환에서도 학술적 가치가 인정되는 경우, 연구 목적의 구체성, 연구기관의 신뢰성, 개인정보 보호조치, 공개 범위 제한을 함께 판단하고 있다.

2) 과테말라

과테말라는 기록의 공개 여부를 검토하는 데 있어서 공공정보 접근법(Decreto Número 57-2008)을 중심으로 정보의 공개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관련된 법 조항들을 지금부터 살펴보고자 한다.

> *어떠한 경우에도 기본적 인권 침해 또는 반인도적 범죄 수사와 관련된 정보는 기밀로 분류되거나 비공개로 유지될 수 없다*[11]*.(Decreto 57-2008, Art. 24)*

과테말라는 공공정보 접근법(Decreto Número 57-2008)을 통해 투명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특히 과거 내전 시기의 중대한 인권 침해 기록을 은폐하려는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 인권침해 및 반인도적 범죄 조사 정보에 대해 강한 공개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과테말라 공공정보 접근법(Decreto Número 57-2008) 제24조는 “어떠한 경우에도(En ningún caso)”라는 강력한 명제를 사용하여, 행정 수반이나 안보 기관이 군사적 보안이나

11) En ningún caso podrá clasificarse como confidencial o reservada la información relativa a investigaciones de violaciones a los derechos humanos fundamentales o a delitos de lesa humanidad.

비밀유지 의무를 이유로 인권 유린 수사 기록을 기밀(reservada)화하는 행위 자체를 원천적으로 무효화(null)한다. 이는 중대한 인도주의적 참상에 대한 진실을 대중에게 공표하고 사법적 정의를 확립하는 것이 민주 사회에서 수호해야 할 공익임을 천명한 입법적 판단으로 분석된다.

관할 교육 당국은 공공정보 접근권에 관한 내용을 초등, 중등 및 고등 교육과정에 포함해야 한다.[12]*.(Decreto 57-2008, Art. 50)*

과테말라 공공정보 접근법(Decreto 57-2008) 제50조는 정보 접근권을 교육 차원에서 제도화하고 있다. 과테말라 법제는 독일처럼 학술 연구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공공정보 접근권을 교육과정에 포함시키는 점에서 기록의 교육적·사회적 활용 가치를 강하게 인정한다. 따라서 과테말라 규정은 학술적 가치 자체보다는 교육적 활용 가치를 통해 비공개기록의 공개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사례로 볼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과테말라 법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과테말라 법제는 반인도적 범죄나 중대한 인권 침해 수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국가 안보나 기밀 유지 의무보다 진상 규명이라는 공익을 상위에 두어 어떠한 경우에도 비공개할 수 없도록 강력한 공개 원칙을 명문화하고 있다.

둘째, 정보 접근권을 초·중·고등 교육과정에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학술 연구 절차를 구체화하기보다 교육적·사회적 활용 가치를 통해 비공개기록의 공개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3) 프랑스

프랑스는 기록의 공개 여부를 검토하는 데 있어서 문화유산법전(Code du patrimoine) L213-2을 중심으로 정보의 공개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관련된 법 조항들을 지금부터 살펴보고자 한다.

12) Las autoridades educativas competentes incluirán el tema del derecho de acceso a la información pública en la currícula de estudios de los niveles primario, medio y superior.

I.－공공 기록은 다음 기간이 경과한 후 당연히 열람할 수 있다.

1. 문서 작성일 또는 파일에 포함된 가장 최근 문서 작성일로부터 25년[13].

2. 의료 기밀 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문서의 경우, 사망일로부터 25년. 사망일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출생일로부터 120년[14].

3. 국가방위기밀을 침해할 수 있고, 그로 인해 형법 제413-9조에 언급된 바와 같이 기밀 분류 대상이 되는 문서, 또는 외교 정책 수행, 국가 안보, 공공 안전, 개인의 안전 또는 사생활 보호에 대한 국가의 근본적인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문서의 경우, 해당 문서의 작성일 또는 파일에 포함된 가장 최근 문서의 작성일로부터 50년의 공개 시효가 적용된다. 단, 이 제1항 4호 및 5호에 언급된 문서는 제외한다.

특정인의 이름이 명시되거나 쉽게 식별 가능한 자연인에 대한 평가 또는 가치 판단이 포함된 문서, 또는 그 사람에게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의 그 사람의 행동을 드러내는 문서에도 동일한 공개 시효가 적용된다[15].

4. 문서 작성일 또는 파일에 포함된 가장 최근 문서 작성일로부터 75년, 또는 해당인의 사망일로부터 25년 중 더 짧은 기간:

(a) 사적인 사실 및 행동과 관련된 설문 조사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가 포함되어 통계적 기밀성이 훼손될 수 있는 문서의 경우;

(b) 사법 경찰이 수행한 수사와 관련된 문서;

(c) 법원에 제기된 사건과 관련된 문서(판결 및 법원 결정 집행에 관한 특정 규정에 따름);

(d) 공무원 또는 부처 공무원의 회의록 및 등록부;

(e) 출생 및 혼인 등록부(폐쇄일로부터);[16]

5. 미성년자와 관련된 문서의 경우, 문서 작성일 또는 파일에 포함된 가장 최근 문서 작성일로부터 100년, 또는 해당인의 사망일로부터 25년 중 더 짧은 기간[17].(Code du patrimoine, Article L213-2)

13) I. – Les archives publiques sont communicables de plein droit à l'expiration d'un délai de :
1° Vingt-cinq ans à compter de la date du document ou du document le plus récent

프랑스 문화유산법전(Code du patrimoine) L213-2은 보호해야 할 가치의 성격에 따라 법정 기간을 세분화하여 배정한다. 일반 행정 비밀이나 상업 비밀은 25년, 사생활과 인물에 대한 가치판단은 50년, 사법 수사 및 재판 기록은 75년, 미성년자 관련 기록 등 높은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는 기록은 100년으로 지정하고 있다. 또한 기록물의 생산 연도를 기준으로 통제 기간을 계산하되, 사생활 및 인격권 보호와 직결된 조항(의료, 사법, 미성년자 등)에서는 "정보 주체의 사망 후 25년"이라는 인적 법리 기준을 대안적 혹은 단기 우선 적용 기준의 형태로 결합한다. 특히 생몰 추적이 불가능할 때를 대비해

inclus dans le dossier :

14) 2° Vingt-cinq ans à compter de la date du décès de l'intéressé, pour les documents dont la communication porte atteinte au secret médical. Si la date du décès n'est pas connue, le délai est de cent vingt ans à compter de la date de naissance de la personne en cause ;

15) 3° Cinquante ans à compter de la date du document ou du document le plus récent inclus dans le dossier, pour les documents dont la communication porte atteinte au secret de la défense nationale, et qui ont pour ce motif fait l'objet d'une mesure de classification mentionnée à l'article 413-9 du code pénal, ou porte atteinte aux intérêts fondamentaux de l'Etat dans la conduite de la politique extérieure, à la sûreté de l'Etat, à la sécurité publique, à la sécurité des personnes ou à la protection de la vie privée, à l'exception des documents mentionnés aux 4° et 5° du présent I.
Le même délai s'applique aux documents qui portent une appréciation ou un jugement de valeur sur une personne physique, nommément désignée ou facilement identifiable, ou qui font apparaître le comportement d'une personne dans des conditions susceptibles de lui porter préjudice.

16) 4° Soixante-quinze ans à compter de la date du document ou du document le plus récent inclus dans le dossier, ou un délai de vingt-cinq ans à compter de la date du décès de l'intéressé si ce dernier délai est plus bref :
a) Pour les documents dont la communication porte atteinte au secret en matière de statistiques lorsque sont en cause des données collectées au moyen de questionnaires ayant trait aux faits et comportements d'ordre privé ;
b) Pour les documents relatifs aux enquêtes réalisées par les services de la police judiciaire ;
c) Pour les documents relatifs aux affaires portées devant les juridictions, sous réserve des dispositions particulières relatives aux jugements, et à l'exécution des décisions de justice ;
d) Pour les minutes et répertoires des officiers publics ou ministériels ;
e) Pour les registres de naissance et de mariage de l'état civil, à compter de leur clôture ;

17) 5° Cent ans à compter de la date du document ou du document le plus récent inclus dans le dossier, ou un délai de vingt-cinq ans à compter de la date du décès de l'intéressé si ce dernier délai est plus bref, pour les documents mentionnés au 4° qui se rapportent à une personne mineure.

“출생 후 120년”이라는 한계선을 규정하여 주체의 사망 이후 프라이버시 법익이 변화되는 시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프랑스 법제의 특징은 기록에 포함된 정보의 민감성에 따라 보호기간을 차등화하고, 사망 후 일정 기간 또는 출생 후 일정 기간과 같은 대체 기준을 함께 적용하고 있다.

이상의 국외 법령 규정들을 종합해 볼 때, 구술기록 공개 전환 검토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내용을 의미 단위로 1차 추출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표 7]과 같다.

[표 7] 1차 분석: 국외 법령 분석 결과 의미 코드

구분		주요 내용	의미 코드
독일	연방기록법 (BArchG)	일반적인 기록 보호기간을 기록 생산 후 30년으로 설정함	기록 생산 후 일반 보호기간
		자연인 관련 기록은 해당 인물의 사망 후 10년이 지나야 이용할 수 있음	사망 후 이용 가능 시점
		사망연도를 확인하기 어려우면 출생 후 100년을 적용함	출생연도 대체 기준
		출생일도 확인하기 어려우면 기록 생산 후 60년을 적용함	기록 생산일 최종 대체 기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기밀기록의 보호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음	공익에 따른 보호기간 조정
	연방정보 보호법 (BDSG)	과학적·역사적 연구 목적이 정보주체의 보호 이익보다 현저히 큰 경우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음	연구 이익과 보호 이익 비교
		연구 목적이 허용되더라도 개인정보를 가능한 한 신속히 익명화함	연구자료 익명화 의무
	슈타지기록법 (StUG)	피해자의 재활·보상·실종자와 사망자 진상 규명을 위해 기록을 이용할 수 있음	피해 회복 목적 이용
		범죄 기소와 국가폭력의 책임 규명을 위해 기록을 이용할 수 있음	범죄·책임 규명 목적 이용
		정치·역사 분석과 정치교육을 위해 익명화된 기록을 제공함	역사분석·교육 목적 제공
		현대사 인물이나 공직자 관련 정보는 공적 역할과 관련된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음	공적 역할 관련 정보 이용
과테말라	공공정보 접근법	기본적 인권침해와 반인도적 범죄 조사 정보는 비공개나 기밀로 분류할 수 없음	인권침해 기록 비공개 금지
		정보 접근권을 초·중·고등 교육과정에 포함함	정보 접근권의 교육적 활용

구분		주요 내용	의미 코드
프랑스	문화유산법전	일반 기록, 사생활 관련 기록, 수사기록, 미성년자 기록 등에 서로 다른 공개기간을 적용함	정보 민감도별 보호기간
		일부 기록에는 정보주체 사망 후 25년을 공개 기준으로 적용함	사망일 기준 공개기간
		사망일을 모르면 출생 후 120년을 적용함	사망일 불명 시 출생 기준

국외 법령을 의미 단위로 추출한 결과 기록 생산 후 일반 보호기간, 사망 후 이용 가능 시점, 출생연도 대체 기준, 기록 생산일 최종 대체 기준, 공익에 따른 보호기간 조정, 연구 이익과 보호 이익 비교, 연구자료 익명화 의무, 피해 회복 목적 이용, 범죄·책임 규명 목적 이용, 역사분석·교육 목적 제공, 공적 역할 관련 정보 이용, 인권침해 기록 비공개 금지, 정보 접근권의 교육적 활용, 정보 민감도별 보호기간, 사망일 기준 공개기간, 사망일 불명 시 출생 기준, 총 16가지 1차 의미 코드를 도출할 수 있었다.

국내외 법령 분석 결과, 각국 법제는 비공개 기록물의 고착화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 세 가지 제도적 근거를 확보하고 있었다.

첫째, 정량적인 시간적 경계선을 공통적으로 구축하고 있었다. 한국은 생산연도 종료 후 30년이라는 원칙적 공개 기준과 5년 주기의 공개 여부 재분류 제도를 통해 비공개 기록물의 장기 고착화를 완화하고자 하는 반면, 독일과 프랑스는 보호 법익의 민감성 및 정보 주체의 구체적인 생사 상태(사망 여부, 생몰 규명 유무)에 따라 시간 축을 다층적으로 설계하여 연동하는 정교한 인적 기산점 방식을 취하고 있다. 즉, 세 국가의 법제는 공통적으로 시간의 흐름이 기록의 생산 당대 지니고 있던 보안 및 프라이버시 방어의 실익을 완화시키는 자연적 해제 장치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법률적 제도로 실현해 내고 있다.

그러나 국내 법령에서는 독일과 프랑스의 사례와 같이 정보 주체의 사망 여부나 사망 시점의 확인 가능성, 출생연도 등을 단계적인 대체 기준으로 적용하는 구체적 규정은 확인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정보 주체의 상태 변화와 시간의 경과를 개별 기록의 공개 전환 검토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

서는 추가적인 판단 기준이 요구될 수 있다. 이로 인해 사생활 보호 법익의 주체인 개인의 사망 이후 법익의 강도가 감쇄되는 맥락이 법령상 반영되지 못하는 공백이 발생한다.

둘째, 개인의 사생활 보호나 국가 보안이라는 가치와 사회적 진상 규명 및 국민의 알 권리라는 가치가 충돌할 때 이를 해결하는 예외 조항을 저마다의 방식으로 갖추고 있었다. 세 국가 모두 기록을 공개함으로써 얻는 공익적·인도주의적 이익이 비공개로 지키려는 보안의 이익보다 더 크다면 비공개 제한을 풀 수 있다는 공통된 원칙을 지니고 있다. 특히 독일 슈타지 기록법(StUG)에 명시된 피해자 구제나 범죄 기소 조항, 그리고 과테말라 공공정보 접근법(Decreto Número 57-2008)의 인권 침해 조사 기록에 대한 공개 원칙은 중대한 사법적·역사적 정의를 지키기 위해 공공 기록을 투명하게 개방하는 법률 조항을 잘 보여준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정보공개법은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해 필요한 경우”라는 다소 넓고 추상적인 문구만 있을 뿐, 이를 현장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적용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나 체크리스트 같은 세부 지침이 없다. 이로 인해 국가폭력이나 인권침해와 관련된 증언 기록이라 하더라도, 공익성 판단을 위한 세부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을 경우 장기간 비공개 상태로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

셋째, 비공개 기록물이라 하더라도 연구·교육·역사적 보존·학술적 재평가 목적이 있는 경우 제한적 활용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었다. 한국은 학술연구 등 비영리 목적의 제한적 열람과 과학적 연구·공익적 기록보존을 위한 가명정보 처리를 허용하고 있으며, 독일은 과학적·역사적 연구 목적의 개인정보 처리와 익명화 조치를 규정하고, 슈타지기록법(StUG)을 통해 정치적·역사적 분석 및 정치교육 목적의 기록 이용을 구체적으로 허용한다. 과테말라는 공공정보 접근권(Decreto 57-2008)을 교육과정에 포함함으로써 기록과 정보 접근이 교육적·사회적 가치와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규정들은 비공개기록이라도 학술적·교육적 가치가 인정되는 경우, 보호조치를 전제로 제한적 접근이나 활용이 가능하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그러나 한국 법제는 학술연구 목적의 제한적 열람과 가명정보 처리를 각

각 규정하고 있을 뿐, 학술적 가치가 있는 기록을 어떤 절차로 평가하고, 연구 목적의 신뢰성이나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어떻게 심사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기준도 부족하다. 이로 인해 학술적 가치가 높은 구술기록이라 하더라도 기관의 재량이나 개인정보 침해 우려에 따라 장기간 비공개 상태로 남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국내외 법령 분석은 비공개 구술기록의 공개 전환 검토 기준을 마련할 때, 시간의 경과에 따른 보호 필요성의 변화, 공개를 통해 실현되는 공익, 연구·교육 목적의 제한적 활용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함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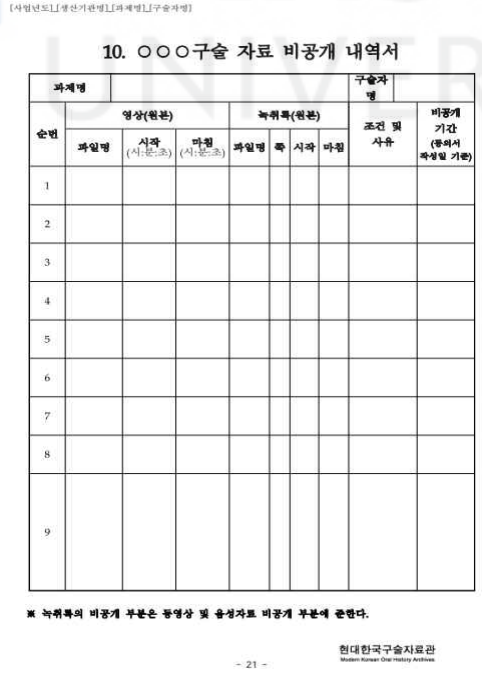
HANSUNG UNIVERSITY

제 4 장 국내외 구술동의서 내용 분석

본 장에서는 비공개 구술기록의 공개 전환 검토 기준을 도출하기 위해, 국내외 구술동의서에 어떠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법령 분석이 공개 전환의 법적·제도적 근거를 살펴보는 과정이라면, 구술동의서 내용 분석은 구술기록의 수집 단계에서 공개 여부, 이용 범위, 비공개 기간, 저작권 및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조건이 실제로 어떻게 설정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이에 국내외 기관에서 활용되는 구술동의서의 주요 항목과 공개 조건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 1 절 국내 구술동의서

1) 한국학중앙연구원



[사업년도][생산기관명][과제명][구술자명]

10. ○○○구술 자료 비공개 내역서

과제명								구술자명	
순번	영상(원본)			녹취록(원본)				조건 및 사유	비공개 기간 (종의서 작성일 기준)
	파일명	시작 (시:분:초)	마침 (시:분:초)	파일명	쪽	시작	마침		
1									
2									
3									
4									
5									
6									
7									
8									
9									

※ 녹취록의 비공개 부분은 동영상 및 음성자료 비공개 부분에 준한다.

- 21 -

현대한국구술자료관
Modern Korean Oral History Archives

[그림 3] 구술 자료 비공개 내역서(한국학중앙연구원, 2019, p.21)

10. 구술 자료 비공개 내역서

1) 파일명은 MPEG4 원본 파일(코드번호 001)을 기재한다.
2) 비공개 해당 부분의 시작과 마침 시간을 00:00:00 으로 표시한다.
3) 녹취록 원본(12번 자료)의 비공개 해당부분의 첫 문장과 끝 문장을 기재한다.
4) 조건 및 사유는 구술자 요청(연구자에 한함 등),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외교 · 국방 관련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공개법>」 제9조①항의 ○호에 따름 등으로 기재한다.
5) 비공개 기간은 8-1,2 구술 자료 활용 공개 동의서의 동의 일로 부터 5년, 10년, 20년, 생존시로 구분하고 년도와 월, 일을 기입한다.('0000년 00월 00일까지'로 표기) 단, <정보공개법>제9조①항의 ○호에 따르는 사항은 영구로 표기한다.
 (1) 비공개 시기는 구술자가 '구술 자료 공개 및 활용 동의서'의 서명한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

[그림 4] 연구결과물 표준화 지침(한국학중앙연구원, 2019, p.44)

[사업년도]_[생산기관명]_[과제명]_[구술자명]

8-1. 구술 자료 활용 공개 동의서 (구술자용)

과제명 :

[구술 자료 활용 및 공개동의서]

본인은 ○○○○기관(수집단)의 구술 자료 수집 사업의 취지를 이해하고 아래의 내용에 동의합니다.

1. 구술 자료를 각종 콘텐츠로 만든다.
(녹음·녹화 테이프 혹은 파일, 녹취록 및 파일, 구술자 사진, 기타 기증 자료 등을 '구술 자료'로 통칭한다)

2. ○○○○기관(수집단)과 한국학중앙연구원 현대한국구술자료관에게 구술 자료의 보존·관리, 연구·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출판·교육·아카이브 구축 등의 목적을 위해 이를 활용·공개할 권한을 부여한다.

3. 특기 사항

년 월 일

과제명 :

구술자 성명 : (인)

[사업년도]_[생산기관명]_[과제명]_[구술자명]

8-2. 구술 자료 활용 공개 동의서 (면담자용)

과제명 :

[구술 자료 활용 및 공개 동의서]

본인은 ○○○○기관(수집단)의 구술 자료 수집 사업의 취지를 이해하고 아래의 내용에 동의합니다.

1. 구술 자료를 각종 콘텐츠로 만든다.
(녹음·녹화 테이프 혹은 파일, 녹취록 및 파일, 구술자 사진, 기타 기증 자료 등을 '구술 자료'로 통칭한다)

2. ○○○○기관(수집단)과 한국학중앙연구원 현대한국구술자료관에게 구술 자료의 보존·관리, 연구·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출판·교육·아카이브 구축 등의 목적을 위해 이를 활용·공개할 권한을 부여한다.

3. 특기 사항

년 월 일

과제명 :

면담자 성명 : (인)

[그림 5] 구술 자료 활용 공개 동의서(한국학중앙연구원, 2019, pp.18-19)

[사업년도][생산기관명][과제명][구술자명]

2. 구술자 신상 기록부

과제명				면 담 자	
				면담일시	
이름	(한글) (한자)			생년월일	(음력/양력)
현주소				출생지(고향)	
연락처	(자 택) (핸드폰) (이메일)	(직장)		종 교	
				성 별	
교 육	최종 학력		기타 교육 경험		
전공분야					
가족상황	본인 형제자매 상황		*직계 가족 상황 및 연락처		
주요 약력 및 활동상황	시기	활동 내용			
* 연구에 도움이 될 인물 소개(이름, 연락처 등)					
* 면담자 기록사항 :					
* 직계가족 연락처는 구술자 부재시 자료의 권리와 활용 등에 대한 사항을 상의하기 위함.					

- 1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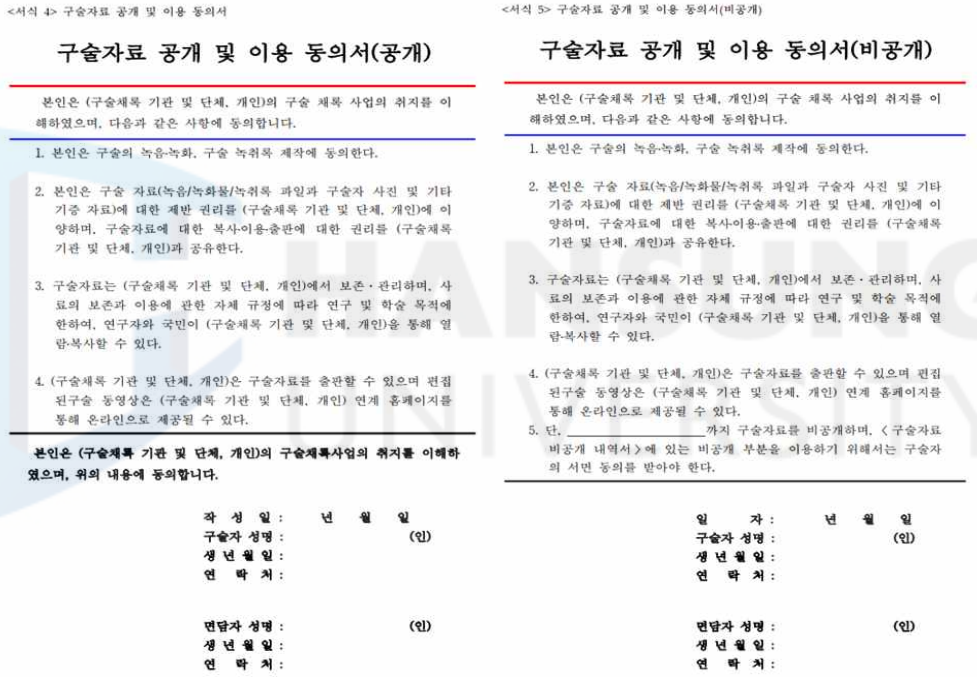
현대한국구술자료관
Modern Korean Oral History Archives

[그림 6] 구술 신상 기록부(한국학중앙연구원, 2019, p.11)

한국학중앙연구원 현대한국구술자료관의 구술 자료 비공개 내역서([그림 3]) 및 표준화 지침([그림 4])을 살펴보면, 비공개 구간의 시작과 마침 시간뿐만 아니라, 동의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5년, 10년, 20년, 생존 시 등의 비공개 기간을 구체적으로 구분하고 특정 날짜를 명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무기한 비공개로 이어질 가능성을 줄이는 장치로 기능한다. 또한, 표준화지침 제20조 제3항제2호에 “구술자가 부분적 비공개, 비공개를 요청했다 하더라도, 비공개 요청 연한이 경과한 경우 자료관 평가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를 공개한다(한국학중앙연구원, 2019, p.8)”고 규정하여 사후 위험성이 희석되었을 때, 기관 차원에서 공개 전환 여부를 심의할 수 있는 행정적 근거를 제공한다. 나아가 구술 자료 활용 공개 동의서([그림 5])는 구술자용과 면담자용으로 나누어져 있다. 특기사항란을 활용해 “연구자에 한하여 공개, 오프라인만 공개, 사후 공개” 등 미래의 가용성 범위를 다각화하는 조건부 동의를 정교하게 설계할 수 있으며, 구술자 신상 기록부([그림 6])에 유고 시 연고권 상의를 위한 직계가족 연락처를 확보해 둠으로써 권리 주체의 사망이나 연락 두

절로 인해 기록이 영구 비공개로 이어질 가능성을 줄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 구술자 검독 지침서 제1조제1항에는 “구술자 검독 시 구술 전체를 비공개로 하지 않도록 연구사업의 목적 및 활용의 ‘공익성’에 대해 면담자(및 연구진)는 구술자에게 충분히 설명하도록 함(한국학중앙연구원, 2019, p.137)”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국립태권도박물관



<서식 4> 구술자료 공개 및 이용 동의서

구술자료 공개 및 이용 동의서(공개)

본인은 (구술채록 기관 및 단체, 개인)의 구술 채록 사업의 취지를 이해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항에 동의합니다.

1. 본인은 구술의 녹음·녹화, 구술 녹취록 제작에 동의한다.
2. 본인은 구술 자료(녹음/녹화물/녹취록 파일과 구술자 사진 및 기타 기증 자료)에 대한 제반 권리를 (구술채록 기관 및 단체, 개인)에 이양하며, 구술자료에 대한 복사·이용·출판에 대한 권리를 (구술채록 기관 및 단체, 개인)과 공유한다.
3. 구술자료는 (구술채록 기관 및 단체, 개인)에서 보존·관리하며, 사료의 보존과 이용에 관한 자체 규정에 따라 연구 및 학술 목적에 한하여, 연구자와 국민이 (구술채록 기관 및 단체, 개인)을 통해 열람·복사할 수 있다.
4. (구술채록 기관 및 단체, 개인)은 구술자료를 출판할 수 있으며 편집된구술 동영상은 (구술채록 기관 및 단체, 개인) 연계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공될 수 있다.

본인은 (구술채록 기관 및 단체, 개인)의 구술채록사업의 취지를 이해하였으며, 위의 내용에 동의합니다.

작 성 일 : 년 월 일
구술자 성명 : (인)
생 년 월 일 :
연 락 처 :

면담자 성명 : (인)
생 년 월 일 :
연 락 처 :

<서식 5> 구술자료 공개 및 이용 동의서(비공개)

구술자료 공개 및 이용 동의서(비공개)

본인은 (구술채록 기관 및 단체, 개인)의 구술 채록 사업의 취지를 이해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항에 동의합니다.

1. 본인은 구술의 녹음·녹화, 구술 녹취록 제작에 동의한다.
2. 본인은 구술 자료(녹음/녹화물/녹취록 파일과 구술자 사진 및 기타 기증 자료)에 대한 제반 권리를 (구술채록 기관 및 단체, 개인)에 이양하며, 구술자료에 대한 복사·이용·출판에 대한 권리를 (구술채록 기관 및 단체, 개인)과 공유한다.
3. 구술자료는 (구술채록 기관 및 단체, 개인)에서 보존·관리하며, 사료의 보존과 이용에 관한 자체 규정에 따라 연구 및 학술 목적에 한하여, 연구자와 국민이 (구술채록 기관 및 단체, 개인)을 통해 열람·복사할 수 있다.
4. (구술채록 기관 및 단체, 개인)은 구술자료를 출판할 수 있으며 편집된구술 동영상은 (구술채록 기관 및 단체, 개인) 연계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공될 수 있다.
5. 단, _____까지 구술자료를 비공개하며, 〈구술자료 비공개 내역서〉에 있는 비공개 부분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구술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일 자 : 년 월 일
구술자 성명 : (인)
생 년 월 일 :
연 락 처 :

면담자 성명 : (인)
생 년 월 일 :
연 락 처 :

[그림 7] 구술 공개 및 이용 동의서(국립태권도박물관, 2024, pp.10-11)

<서식 1> 출연료 및 저작권 위임 동의서

출연료 및 저작권 위임 동의서

본인은 태권도진흥재단이 실시하는 구술채록/영상녹화에 대한 출연료 및 저작재산권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개 및 이용에 동의하며 그 권한을 태권도진흥재단에 위임합니다.

아 래

□ 위임 동의 내용

① 본인은 구술채록/영상녹화 제작을 위한 출연료 및 이용 권리와 저작재산권을 전부 양도(2차적 저작물 작성권 포함)에 대한 보상으로 (주)다락컴퍼니로부터 소정의 금전을 지급받는 것을 동의한다.

② 본인은 (주)다락컴퍼니가 홍보/연구/교육/출판/전시/기타 활용 등을 목적으로 본인의 구술채록/영상녹화 및 제2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권리를 갖는 것에 동의한다.

③ 본인은 (주)다락컴퍼니가 본인의 구술채록/영상녹화 및 제2차적 저작물의 일부 또는 전체를 온오프라인 서비스를 통해 구술자의 의도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데이터베이스 및 콘텐츠를 구축하며 이를 정보통신망에 공개하는 것에 동의한다. (주)다락컴퍼니는 나의 이름, 초상, 이미지, 목소리, 영상, 녹취문 및 내가 기증한 자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디지털화, 공개, 전시, 이관, 방송할 수 있다.

2024년 월 일

구술자 성 명 : (인)

생년월일 :

거 주 지 :

(주)다락컴퍼니 귀중

[그림 8] 출연료 및 저작권 위임 동의서(국립태권도박물관, 2024, p.7)

<서식 6> 구술자료 비공개 내역서

구술자료 비공개 내역서

순번	녹음파일(원본)			녹취록(원본)				조건 및 사유	비공개 기간
	파일명	시작 (시:분:초)	마침 (시:분:초)	파일명	쪽	시작	마침		
1									
2									
3									
4									
5									
6									
7									
8									
9									
10									

※ 비공개 기간은 동의서 작성일 기준
※ 수집된 구술기록(동영상 · 음성 데이터, 녹취록 등)은 관리조건 협의내역에 따라 활용 · 관리

[그림 9] 구술자료 비공개 내역서(국립태권도박물관, 2024, p.12)

국립태권도박물관의 동의서 양식([그림 7]) 내에는 구술 자료의 수집·제작 동의뿐만 아니라 활용 목적에 따른 열람 조건과 비공개 범위를 설정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구술자가 부분 또는 전체 비공개를 요청할 시 명확한 비공개 종료일을 직접 기입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는 설정된 연한이 경과하는 시점에 가용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만드는 공개 전환 프로세스의 기반이 된다. 아울러 저작재산권과 2차적 저작물 작성권에 관한 이용 권한을 기관에 위임하거나 양도하는 조항을 포함함으로써, 향후 비공개 해제 시점에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분쟁이나 권리관계의 모호성을 사전에 해결하고 홍보, 연구, 교육, 출판 등 원활한 활용을 위한 근거를 제공한다([그림 8]).

한국학중앙연구원과 국립태권도박물관의 비공개 내역서([그림 3], [그림 9])는 영상·음성 원본의 파일명, 비공개 구간의 시작과 종료 시각, 녹취록의 파일명과 쪽수, 비공개 부분의 시작과 종료 문장, 비공개 조건과 사유 및 비공개 기간을 기재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를 통해 비공개 대상이 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표준화 지침([그림 4])을 보면 구술자 요청, 연구자에게만 공개,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외교·국방 관련 사항 등을 비공개 사유로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한다.

3) 서울역사편찬원

<서식 2-1-1>

구술 동의 및 자료이용 허가서

구술자	성명 : 한자:	생년월일 : (양/음) 성 별 : □남 □여
	주소 : (전화번호 :)	

본인은 서울역사편찬원의 구술자료 수집사업의 취지를 이해하여 진실에 근거하여 구술하고, 다음 사항에 동의합니다.

1. 구술은 녹음 · 녹화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녹취록을 만든다.
2. 구술자료에 대한 제반 권리를 서울역사편찬원에 맡기며, 구술자료에 대한 출판 및 이용에 대한 권리를 서울역사편찬원과 공유한다.
3. 구술자료는 서울역사편찬원이 보존 관리하며, 서울역사편찬원은 공익적 · 학술적 목적에 이를 이용할 수 있다.
4. 제3자가 구술자에게 자료에 대한 이용 및 출판 등의 요청을 하는 경우 서울역사편찬원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년 월 일

구술자 : (서명)

위임 내용	1. 이 자료는 시사편찬사업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할 수 있다. (구술자료집 발간, 대내외 홍보, 인터넷 게재 등) 2. 서울역사편찬원은 열람자가 교육 · 연구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열람을 허가할 수 있다. 3. 자료의 보관과 활용을 목적으로 타 연구기관이나 기록관리기관에 이관 · 공개할 수 있다. 4. 자료의 이관 혹은 공개의 범위 및 시기 · 방법에 관한 결정권을 서울역사편찬원에 위임한다.
구술자 요구사항	1. 한시 : 년 월 일까지(최장 30년) 2. 구술자료의 전부 혹은 일부의 이용을 위해서는 본인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면담자	성 명 : 소 속 :

※ 구술자 요구사항은 기본 위임내용 외에 일부 제한을 두는 경우, 해당 내용의 번호에 표시하고, 녹취록의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에는 아래 문서에 세부내역을 기입한다.

[그림 10] 구술 동의 및 자료이용 허가서(서울역사편찬원, 2025, p.22)

서울역사편찬원의 구술 동의 및 자료이용 허가서([그림 10])는 구술자료에 대한 출판 및 이용 권리를 기관과 공유하고 공익적·학술적 목적의 이용 위임에 동의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구술자가 내용의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해 제한을 두고자 할 때 비공개 세부내역과 함께 최장 30년의 범위 내에서 명확한 한시적 비공개 기간(기한)을 설정하도록 서식을 구조화하고 있다.

4) 여주세종문화재단

붙임 1. 구술 동의 및 자료이용 허가서

구술동의 및 자료이용 허가서

구술자	성명 : 한자 :	생년월일 : (양/음) 성 별 : □ 남 □ 여
	주소 :	(연락처 :)
본인은 (재)여주세종문화재단 '여주 생활문화 구술사업' 의 취지를 이해하여 진실에 근거하여 구술하고, 다음 사항에 동의합니다. 1. 구술은 녹음 · 녹화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녹취록을 만든다. 2. 구술자료에 대한 제반 권리를 (재)여주세종문화재단에 맡기며, 구술자료(녹취록, 원고, 사진, 동영상, 기타 자료)에 대한 출판 및 이용에 대한 권리를 (재)여주세종문화재단과 공유한다. 3. 구술자료는 (재)여주세종문화재단이 보존 관리하며, (재)여주세종문화재단은 공익적학술적 목적에 이를 이용할 수 있다. 2022년 월 일 구술자 : (날인 또는 서명)		
위임 내용	1. 이 자료는 '여주 생활문화 구술사업' 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할 수 있다. (구술집 발간, 대내외 홍보, 전시회 개최, 인터넷 게재, 동영상 제작 등) 2. (재)여주세종문화재단은 열람자가 교육 · 연구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열람을 허가할 수 있다. 3. 자료의 보관과 활용을 목적으로 타 연구기관이나 기록관리기관에 이관 · 공개할 수 있다. 4. 자료의 이관 혹은 공개의 범위 및 시기·방법에 관한 결정권을 (재)여주세종문화재단에 위임한다.	
구술자 요구사항	1. 한시 : 년 월 일까지 2. 구술자료의 전부 혹은 일부()의 이용을 위해서는 본인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연구자	성명 :	소속 :

[그림 11] 구술동의 및 자료이용 허가서(여주세종문화재단, 2022, p.11)

여주세종문화재단의 구술 동의 및 자료이용 허가서([그림 11])는 구술자로부터 구술의 녹음·녹화와 녹취록 제작에 대한 기본 동의를 구하는 동시에, 구술자료에 대한 출판 및 이용 권리를 재단과 공유하고 공익적·학술적 목적의 이용 위임에 동의하도록 규정한다. 특히 장기간 비공개 상태가 지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구술자의 요구사항 란을 별도로 두어 구술자료의 전부 혹은 일부 이용에 대한 한시적 비공개 기간을 직접 기입하도록 서식을 구조화하고 있다. 아울러 자료의 보관과 활용을 목적으로 타 연구기관이나 기록관리기관에 이관·공개할 수 있는 권한과 그 범위·시기·방법에 대한 결정권 일체를 여주세종문화재단에 위임하는 조항을 결합함으로써, 향후 비공개 기한 만료 및 구술자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소유권의 모호성이나 저작권 분쟁을 사전에 해결하고 안정적인 자료 개방과 향후 활용의 법적 안정성을 높인다.

서울역사편찬원 및 여주세종문화재단 구술 동의 및 자료이용 허가서에도 “공익적·학술적 목적에 이를 이용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여주

세종문화재단 과업수행지침 제3조에는 “연구자가 수집한 연구자료를 수업교재, 연구논문 작성 등에 활용하고자 할 때는 발주자와 구술자에게 매회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여주세종문화재단, 2022, p.8).”고 명시되어 있다.

서울역사편찬원 및 여주세종문화재단 동의서는 공개 여부를 비공개 기간, 공익적·학술적 이용 목적, 기관의 이관·공개 권한, 추가 승인 절차를 함께 설정한다는 점에서 향후 공개 전환 검토의 기초 자료로 기능한다. 특히 구술자의 요구사항을 별도로 기재하도록 한 점은 공개 전환 검토 시 구술자의 원래 의사와 제한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상의 국내 구술동의서 구성 내용을 종합해 볼 때, 구술기록 공개 전환 검토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내용을 의미 단위로 1차 추출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표 8]과 같다.

[표 8] 1차 분석: 국내 구술동의서 내용 분석 결과 의미 코드

구분	주요 구성 내용	의미 코드
한국학중앙연구원	구술기록의 비공개 구간을 영상·음성의 시작과 종료 시각으로 작성함	비공개 구간 타임코드
	비공개 기간을 5년, 10년, 20년, 생존 시 등으로 선택하도록 함	선택형 비공개 기간
	비공개가 종료되는 특정 날짜를 기재하도록 함	비공개 종료일 명시
	비공개 요청기간이 지나면 평가위원회 심의에 따라 공개함	종료 후 평가위원회 심의
	연구자에게만 공개하거나 오프라인으로만 공개할 수 있음	이용자·접근방식 제한
	구술자 사망 후의 권리 협의를 위해 직계가족 연락처를 확보함	사후 권리자 연락처
	구술자가 전체를 비공개하지 않도록 사업의 공익적 목적을 설명함	동의 과정의 공익성 설명
국립태권도박물관	구술자가 비공개 종료일을 직접 작성하도록 함	구술자 지정 종료일
	저작재산권과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기관에 양도·위임함	저작재산권 양도
	출판·교육·홍보·연구 등에 구술기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	다목적 이용 허락
서울역사편찬원	공익적·학술적 목적의 이용을 기관에 허용함	공익·학술 이용 위임
여주세종문화재단	구술자가 자료의 일부나 전체에 비공개 기간을 작성함	구술자 요구사항 기록
	기관이 타 연구기관이나 기록관리기관에 자료를 이관·공개할 수 있음	기관의 이관·공개 권한

구분	주요 구성 내용	의미 코드
	연구논문이나 수업교재에 이용할 때 별도 승인을 받도록 함	이용 시 추가 승인

국내 구술동의서 내용을 의미 단위로 추출한 결과 비공개 구간 타임코드, 선택형 비공개 기간, 비공개 종료일 명시, 종료 후 평가위원회 심의, 이용자·접근방식 제한, 사후 권리자 연락처, 동의 과정의 공익성 설명, 구술자 지정 종료일, 저작재산권 양도, 다목적 이용 허락, 공익·학술 이용 위임, 구술자 요구사항 기록, 기관의 이관·공개 권한, 이용 시 추가 승인, 총 14가지 1차 의미 코드를 도출할 수 있었다.

제 2 절 국외 구술동의서

1) 영국도서관(British Library)



Oral History
The British Library
96 Euston Road
London
NW1 2DB
020 7412 7404 / oralhistory@bl.uk

ORAL HISTORY PARTICIPATION AGREEMENT

The purpose of this form is to explain how the recorded interview which you agree to undertake with us is archived at the British Library. When you sign this form you are agreeing to take part in the interview and allowing us to store and make use of your personal data now and in the future in order to administer and archive your interview.

After your interview we will ask you to complete an Oral History Recording Agreement to sign-off the terms under which your interview will be accessible at the British Library and through the British Library's online services.

Oral history at the British Library

The British Library is the national library of the United Kingdom and one of the world's greatest research libraries. It provides world-class information services to the academic, business, research and scientific communities and offers unparalleled access to the world's largest and most comprehensive research collection. The Library's collection has developed over 250 years and exceeds 150 million separate items representing every age of written civilisation, among which the oral history recordings are considered vital to the Library's intention to preserve the nation's memory.

The BL's oral history collection is one of the largest in the world and covers a huge range of topics encompassing diverse voices, from artists to steelworkers, doctors to postmen, Holocaust survivors to authors. The oral history section on the British Library's website has more information: www.bl.uk/oralhistory.

The collection which you are contributing to

You have been invited to take part in the **Architects' Lives** oral history project, which documents the architectural profession from the early decades of the twentieth century to the present day. It charts the post-war rebuilding programme, the impact of lottery funding on civic building, the global reach of British architectural firms, changing theoretical approaches, new construction techniques, and the impact of the computer on the design process. Those interviewed include: Sir Denys Lasdun, Neave Brown, Eldred Evans, Eva Jiricna, and Sir Michael Hopkins. The project is guided by an Advisory Committee which comprises Rab Bennetts (chair), Catherine Croft, Dr Elain Harwood, Peter Murray, Dr Alan Powers, Barbara Weiss and Ellis Woodman.

Your personal data

New data protection legislation (the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 which came into effect on 25 May 2018, and its implementing legislation, the Data Protection Act 2018) has changed the way in which we inform you about how your personal data is stored and processed, and how you can get access to it. For information about how the Library will use your personal data you can review our Privacy Policy at www.bl.uk/aboutus/terms/privacy/. Information contained within the interview itself will be processed in accordance with our Collection Materials transparency notice at www.bl.uk/aboutus/terms/privacy/Collection%20Materials/.

1

Oral History
The British Library
96 Euston Road
London
NW1 2DB
020 7412 7404 / oralhistory@bl.uk

The Oral History Section at the BL also follows the Oral History Society's best practice guidance on data protection (www.ohs.org.uk/advice/data-protection/).

What we will do with your personal data

The data contained within this form will be held securely and not shared with anyone, unless the Library is obligated to do so for legal purposes, such as evidencing ownership or demonstrating a valid Agreement. The information contained within the interview itself will be made available (subject to your agreement) through the Library to researchers, academics and other members of the public who access oral history content. We will keep this data in perpetuity, so as to preserve the oral history of the United Kingdom and inform the research of future generations.

You can request partial or complete closure of your interview to public access using the Oral History Recording Agreement which you will complete after your interview has been completed. You can request a copy of the personal data we hold about you at any time.

Your agreement to take part

This Agreement is made between **The British Library Board, 96 Euston Road, London, NW1 2DB** ("the Library") and you ("the Interviewee", "I"):

Your name:

Your address:

Date:

Declaration

I hereby agree to take part in an interview for the British Library and am fully aware that the content of this interview will be publicly available, subject to any closure or other restrictions that I might request when the interview has been completed.

By or on behalf of the Interview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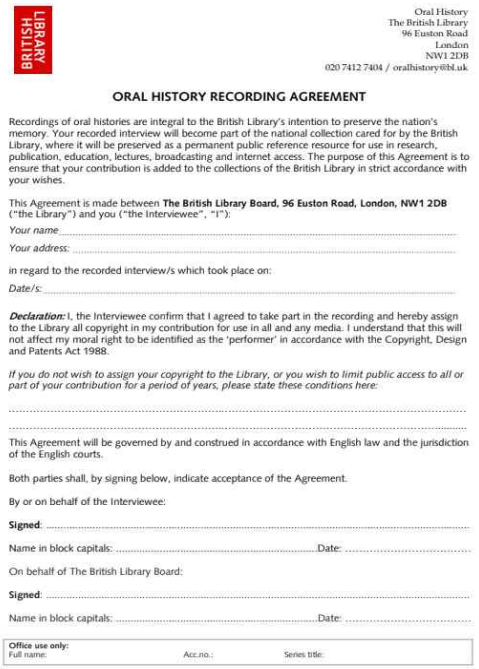
Signed:

Name in block capitals: Date:

Office use only:
Full name: Acc.no.: Series title:

2

[그림 12] British Library Oral History Participation Agreement



Oral History
The British Library
96 Euston Road
London
NW1 2DB
020 7412 7404 / oralhistory@bl.uk

ORAL HISTORY RECORDING AGREEMENT

Recordings of oral histories are integral to the British Library's intention to preserve the nation's memory. Your recorded interview will become part of the national collection cared for by the British Library, where it will be preserved as a permanent public reference resource for use in research, publication, education, lectures, broadcasting and internet access. The purpose of this Agreement is to ensure that your contribution is added to the collections of the British Library in strict accordance with your wishes.

This Agreement is made between **The British Library Board, 96 Euston Road, London, NW1 2DB** ("the Library") and you ("the Interviewee", "I"):

Your name:.....

Your address:

in regard to the recorded interview/s which took place on:

Date/s:.....

Declaration: I, the Interviewee confirm that I agreed to take part in the recording and hereby assign to the Library all copyright in my contribution for use in all and any media. I understand that this will not affect my moral right to be identified as the 'performer' in accordance with the Copyright, Design and Patents Act 1988.

If you do not wish to assign your copyright to the Library, or you wish to limit public access to all or part of your contribution for a period of years, please state these conditions here:

.....

.....

This Agreement will be governed by and construed in accordance with English law and the jurisdiction of the English courts.

Both parties shall, by signing below, indicate acceptance of the Agreement.

By or on behalf of the Interviewee:

Signed:

Name in block capitals:Date:

On behalf of The British Library Board:

Signed:

Name in block capitals:Date:

Office use only:
Full name: Acc.no.: Series tit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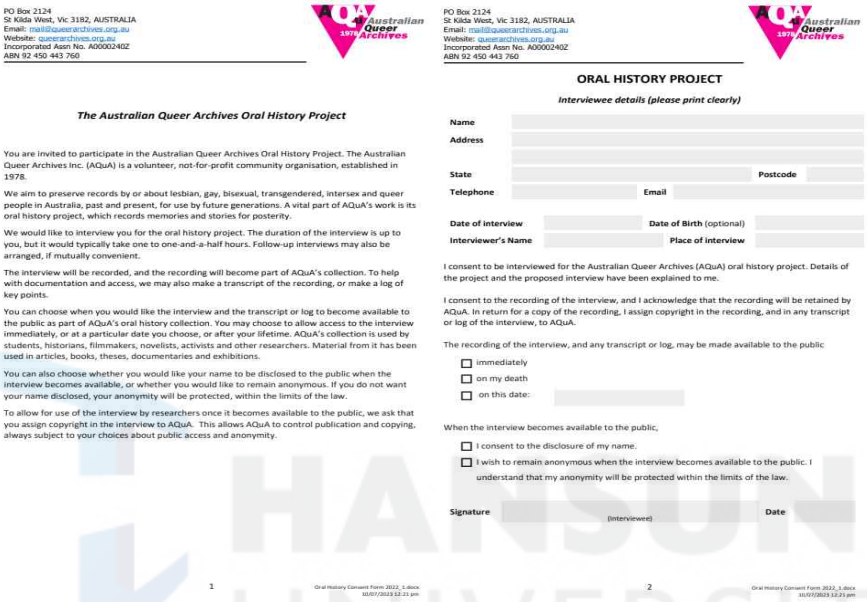
[그림 13] British Library Oral History Recording Agreement

영국도서관(British Library)은 인터뷰 전에 작성하는 구술 참여 동의서([그림 12]) 단계에서 구술기록이 영구 보존 및 대중 공개된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시키고, 인터뷰가 끝난 직후 작성하는 구술기록 동의서([그림 13])를 통해 공개 범위와 비공개 조건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도록 구조화되어 있다. 특히 구술자가 발언 내용의 전부 혹은 일부에 대해 비공개(closure)나 엠바고를 요청할 경우, 무기한 폐쇄를 방지하기 위해 각 제한 사항마다 명확한 비공개 종료일(end date)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양식화되어 있으며, 통상적으로 최장 30년이라는 적정 비공개 기간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기록의 사후 가용성을 체계적으로 예비한다.

영국도서관은 구술자가 저작권을 도서관에 양도하는 방식과 일정 기간 또는 생존 기간 동안 저작권을 보유하는 방식을 선택하도록 한다. 저작권을 양도하더라도 구술자는 자신이 기여자로 표시될 권리와 자신의 발언이 명예를 훼손하는 방식으로 이용되지 않을 권리를 유지한다. 구술자가 저작권을 계속 보유하는 경우에는 사후 연락이 가능하도록 친족과 법률대리인의 연락처를

기관에 제공하도록 한다(British Library Oral History Section, 2018, p.4).

2) 호주 퀴어아카이브(AQuA)



PO Box 2124
St Kilda West, Vic 3182, AUSTRALIA
Email: mail@queerarchives.org.au
Website: queerarchives.org.au
Incorporated Assn No. A0000240Z
ABN 92 450 443 760

The Australian Queer Archives Oral History Project

You are invited to participate in the Australian Queer Archives Oral History Project. The Australian Queer Archives Inc. (AQuA) is a volunteer, not-for-profit community organisation, established in 1978.

We aim to preserve records by or about 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ed, intersex and queer people in Australia, past and present, for use by future generations. A vital part of AQuA's work is its oral history project, which records memories and stories for posterity.

We would like to interview you for the oral history project. The duration of the interview is up to you, but it would typically take one to one-and-a-half hours. Follow-up interviews may also be arranged, if mutually convenient.

The interview will be recorded, and the recording will become part of AQuA's collection. To help with documentation and access, we may also make a transcript of the recording, or make a log of key points.

You can choose when you would like the interview and the transcript or log to become available to the public as part of AQuA's oral history collection. You may choose to allow access to the interview immediately, or at a particular date you choose, or after your lifetime. AQuA's collection is used by students, historians, filmmakers, novelists, activists and other researchers. Material from it has been used in articles, books, theses, documentaries and exhibitions.

You can also choose whether you would like your name to be disclosed to the public when the interview becomes available, or whether you would like to remain anonymous. If you do not want your name disclosed, your anonymity will be protected, within the limits of the law.

To allow for use of the interview by researchers once it becomes available to the public, we ask that you assign copyright in the interview to AQuA. This allows AQuA to control publication and copying, always subject to your choices about public access and anonymity.

1 Oral History Consent Form 2022_1.docx 10/07/2023 12:21 pm

PO Box 2124
St Kilda West, Vic 3182, AUSTRALIA
Email: mail@queerarchives.org.au
Website: queerarchives.org.au
Incorporated Assn No. A0000240Z
ABN 92 450 443 760

ORAL HISTORY PROJECT

Interviewee details (please print clearly)

Name
Address
State **Postcode**
Telephone **Email**

Date of interview **Date of Birth** (optional)
Interviewer's Name **Place of interview**

I consent to be interviewed for the Australian Queer Archives (AQuA) oral history project. Details of the project and the proposed interview have been explained to me.

I consent to the recording of the interview, and I acknowledge that the recording will be retained by AQuA. In return for a copy of the recording, I assign copyright in the recording, and in any transcript or log of the interview, to AQuA.

The recording of the interview, and any transcript or log, may be made available to the public

- ☐ immediately
- ☐ on my death
- ☐ on this date:

When the interview becomes available to the public,

- ☐ I consent to the disclosure of my name.
- ☐ I wish to remain anonymous when the interview becomes available to the public. I understand that my anonymity will be protected within the limits of the law.

Signature (interviewee) **Da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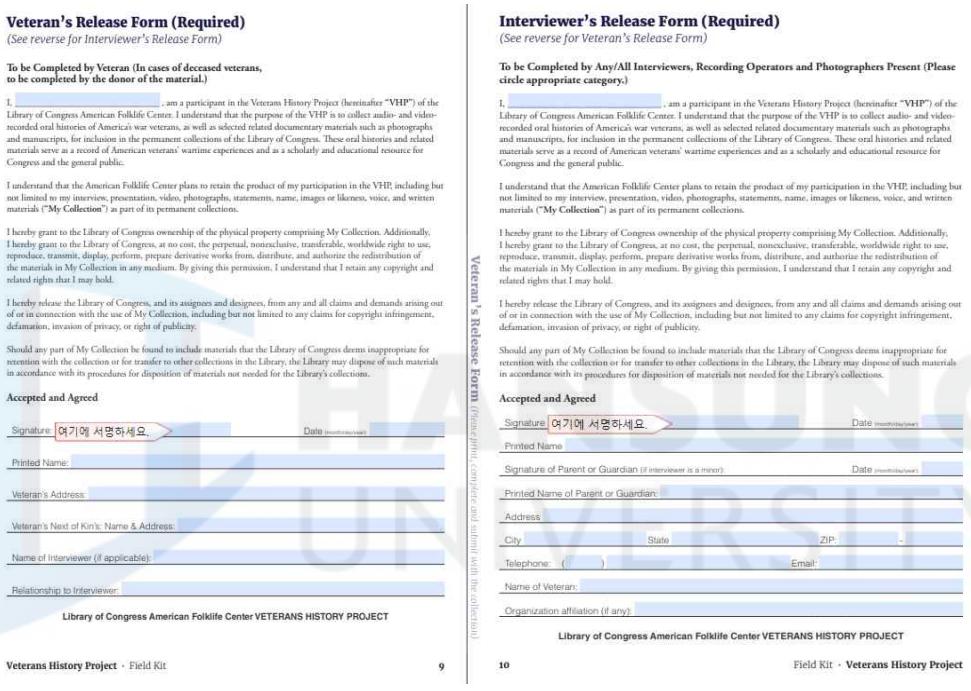
2 Oral History Consent Form 2022_1.docx 10/07/2023 12:21 pm

[그림 14] AQuA Oral History Project Participant Information and Consent Form

호주 퀴어아카이브(Australian Queer Archives, AQuA)의 동의서([그림 14])는 구술자가 기록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대중 공개 제한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공개가 허용되는 시점을 구술자 스스로 즉시, 특정 날짜, 또는 사후(Lifetime) 중에서 유연하게 선택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서식을 구조화하고 있다. 나아가, 대중 공개 시점에 구술자가 본인의 이름을 공개할지 혹은 익명으로 남을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권리 조항을 세분화하여 익명성 보장을 통한 조건부 공개 전환의 심리적 장벽을 낮추고 있다. 또한 인터뷰 내용의 오디오 녹음본과 향후 제작될 수 있는 녹취록 및 요약 로그에 대한 저작권 일체를 아카이브에 양도(Assignment)하도록 규정하는 조항을 결합하고 있다. 이를 통해 향후 비공개 기한이 만료되어 공개로 전환되는 시점이나 권리 주체의 사망 및 사후 연락 두절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분쟁이나 권리관계의 모호성을 사전에 해소하고, 논문, 도서, 다큐멘터리, 전시 등 다양한 미래 활용으로의 원활한 법적 기반을 마련해 두고 있다.

3) 미국 의회도서관 민속생활센터(Library of Congress American Folklife Center)



Veteran's Release Form (Required)
(See reverse for Interviewer's Release Form)

To be Completed by Veteran (In cases of deceased veterans, to be completed by the donor of the material.)

I, _____, am a participant in the Veterans History Project (hereinafter "VHP") of the Library of Congress American Folklife Center. I understand that the purpose of the VHP is to collect audio- and video-recorded oral histories of America's war veterans, as well as selected related documentary materials such as photographs and manuscripts, for inclusion in the permanent collections of the Library of Congress. These oral histories and related materials serve as a record of American veterans' wartime experiences and as a scholarly and educational resource for Congress and the general public.

I understand that the American Folklife Center plans to retain the product of my participation in the VHP,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my interview, presentation, video, photographs, statements, name, images or likeness, voice, and written materials ("**My Collection**") as part of its permanent collections.

I hereby grant to the Library of Congress ownership of the physical property comprising My Collection. Additionally, I hereby grant to the Library of Congress, at no cost, the perpetual, nonexclusive, transferable, worldwide right to use, reproduce, transmit, display, perform, prepare derivative works from, distribute, and authorize the redistribution of the materials in My Collection in any medium. By giving this permission, I understand that I retain any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that I may hold.

I hereby release the Library of Congress, and its assignees and designees, from any and all claims and demands arising out of or in connection with the use of My Collection,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any claims for copyright infringement, defamation, invasion of privacy, or right of publicity.

Should any part of My Collection be found to include materials that the Library of Congress deems inappropriate for retention with the collection or for transfer to other collections in the Library, the Library may dispose of such materials in accordance with its procedures for disposition of materials not needed for the Library's collections.

Accepted and Agreed

Signature: 여기에 서명하세요. Date (month/day/year)

Printed Name:

Veteran's Address:

Veteran's Next of Kin's: Name & Address:

Name of Interviewer (if applicable):

Relationship to Interviewer:

Library of Congress American Folklife Center VETERANS HISTORY PROJECT

Veterans History Project · Field Kit 9

Veteran's Release Form (Please print, complete and submit with the collection)

Interviewer's Release Form (Required)
(See reverse for Veteran's Release Form)

To be Completed by Any/All Interviewers, Recording Operators and Photographers Present (Please circle appropriate category.)

I, _____, am a participant in the Veterans History Project (hereinafter "VHP") of the Library of Congress American Folklife Center. I understand that the purpose of the VHP is to collect audio- and video-recorded oral histories of America's war veterans, as well as selected related documentary materials such as photographs and manuscripts, for inclusion in the permanent collections of the Library of Congress. These oral histories and related materials serve as a record of American veterans' wartime experiences and as a scholarly and educational resource for Congress and the general public.

I understand that the American Folklife Center plans to retain the product of my participation in the VHP,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my interview, presentation, video, photographs, statements, name, images or likeness, voice, and written materials ("**My Collection**") as part of its permanent collections.

I hereby grant to the Library of Congress ownership of the physical property comprising My Collection. Additionally, I hereby grant to the Library of Congress, at no cost, the perpetual, nonexclusive, transferable, worldwide right to use, reproduce, transmit, display, perform, prepare derivative works from, distribute, and authorize the redistribution of the materials in My Collection in any medium. By giving this permission, I understand that I retain any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that I may hold.

I hereby release the Library of Congress, and its assignees and designees, from any and all claims and demands arising out of or in connection with the use of My Collection,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any claims for copyright infringement, defamation, invasion of privacy, or right of publicity.

Should any part of My Collection be found to include materials that the Library of Congress deems inappropriate for retention with the collection or for transfer to other collections in the Library, the Library may dispose of such materials in accordance with its procedures for disposition of materials not needed for the Library's collections.

Accepted and Agreed

Signature: 여기에 서명하세요. Date (month/day/year)

Printed Name

Signature of Parent or Guardian (if interviewer is a minor): Date (month/day/year)

Printed Name of Parent or Guardian:

Address

City State ZIP:

Telephone: () Email:

Name of Veteran:

Organization affiliation (if any):

Library of Congress American Folklife Center VETERANS HISTORY PROJECT

10 Field Kit · **Veterans History Project**

[그림 15] Library of Congress American Folklife Center Veteran's & Interviewer's Release Form

미국 의회도서관 민속생활센터(Library of Congress American Folklife Center)의 참전용사 역사 프로젝트(Veterans History Project, VHP) 구술동의서([그림 15])는 참전용사와 인터뷰어에게 프로젝트의 목적이 전쟁 경험에 대한 구술 및 사진, 원고 등의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의회도서관의 영구 소장품으로 포함시키고 일반 대중과 의회에 교육적·학술적 자원으로 개방하는 것임을 명확히 인지시킨다. 특히 기증되는 물리적 재산의 소유권을 의회도서관에 양도하는 조항과 더불어 매체와 상관없이 영구적이고 전 세계적인 비독점적

이용권, 복제권, 전송권, 전시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및 재배포 승인 권한 일체를 비용 없이 도서관 측에 부여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비록 구술자가 본인의 저작권 및 관련 권리를 보유하도록 명시하여 권리 균형을 꾀하고 있으나, 도서관 및 그 지정인에게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퍼블리시티권, 저작권 침해 등 향후 기록 공개 및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청구와 요구로부터 기관의 법적 위험을 줄이기 위한 면책(Release) 조항을 결합하고 있다. 나아가 수집된 자료 중 도서관의 영구 보존 기준이나 타 컬렉션으로의 이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부적절한 물질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도서관의 자체 절차에 따라 처분(Disposition)할 수 있는 포괄적 관리 권한까지 서식에 내포함으로써, 권리 주체의 사후나 유고 상황에서도 기관이 수집 자료를 평가하고, 보존·이관·공개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이상의 국외 구술동의서 구성 내용을 종합해 볼 때, 구술기록 공개 전환 검토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내용을 의미 단위로 1차 추출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표 9]와 같다.

[표 9] 1차 분석: 국외 구술동의서 내용 분석 결과 의미 코드

구분	주요 구성 내용	의미 코드
British Library	인터뷰 전에 영구보존과 대중 공개 가능성을 안내함	사전 공개·보존 고지
	인터뷰 후 공개 범위와 비공개 조건을 확정함	면담 후 공개 조건 확정
	비공개나 엠바고를 설정할 때 종료일을 반드시 작성함	엠바고 종료일
	통상적으로 최장 30년의 비공개 기간을 안내함	비공개 기간 가이드라인
	구술자가 저작권 양도와 생존 기간 보유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음	저작권 처리 방식 선택
	저작권을 보유하는 경우 친족이나 법률대리인 연락처를 제공함	사후 권리자 연락처
AQuA	공개 시점을 즉시, 특정 날짜, 사망 후 중에서 선택함	공개 시점 선택
	공개 시 실명과 익명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음	실명·익명 공개 선택

구분	주요 구성 내용	의미 코드
	음성, 녹취록, 요약자료의 저작권을 아카이브에 양도함	기록 유형별 저작권 양도
Library of Congress	기록을 교육적·학술적 자원으로 일반 대중과 의회에 제공함	교육·학술 목적 공개
	복제·전송·전시·재배포·2차적 저작물 작성 권한을 기관에 부여함	구체적 이용권 부여
	공개와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청구로부터 기관을 면책함	기관 면책 조항
	보존에 부적합한 자료를 기관이 처분할 수 있음	기관의 자료 처분 권한

국외 구술동의서 내용을 의미 단위로 추출한 결과 사전 공개·보존 고지, 면담 후 공개 조건 확정, 엠바고 종료일, 비공개 기간 가이드라인, 저작권 처리 방식 선택, 사후 권리자 연락처, 공개 시점 선택, 실명·익명 공개 선택, 기록 유형별 저작권 양도, 교육·학술 목적 공개, 구체적 이용권 부여, 기관 면책 조항, 기관의 자료 처분 권한 총 13가지 의미 코드를 도출할 수 있었다.

이상 국내외 구술동의서를 비교·분석한 결과, 비공개 구술기록의 향후 공개와 활용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구성 내용이 중요하게 포함될 필요가 있다.

첫째, 구술자의 의사와 기록의 민감성을 고려하여 특정 기간, 구술자의 사망 또는 관련 조건의 충족 시점까지 공개를 유예하는 엠바고를 설정하고, 종료일과 재검토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

둘째, 구술기록이 공익적·학술적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공개 목적, 이용자 범위, 접근 방식, 추가 승인 절차를 동의서에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셋째, 장기적 보존과 활용을 위해 저작권의 귀속, 이용허락 범위, 2차적 이용 권한, 사후 권리자 연락처 및 기관의 관리 권한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구술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시간의 경과와 기록 가치의 변화에 따라 비공개기록을 공개·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제 5 장 공개 전환 사례 분석

본 장에서는 비공개로 관리되던 기록이 어떠한 배경과 절차를 거쳐 공개로 전환되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사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사례는 비공개 또는 접근 제한 상태로 관리되던 기록이 일정한 조건의 충족, 시간의 경과, 권리자 동의, 공익적 필요, 제한적 접근 방식 등을 통해 공개 또는 접근 허용으로 전환된 경우를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이에 본 절에서는 각 사례의 공개 전환 과정에서 활용된 기준과 절차를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제 1 절 구술기록 공개 전환 사례

본 절에서는 구술기록 중에서도 사전 또는 사후에 구술자 및 유족과의 동의·계약을 통해 공개로 전환된 사례와, 명시적 동의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정한 판단 기준과 제한적 공개 방식을 통해 공개가 이루어진 사례를 함께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비공개 구술기록의 공개 전환 과정에서 동의와 계약, 시간의 경과, 권리관계 확인 등이 어떻게 고려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1) 지그문트 프로이트 컬렉션

미국의회도서관(Library of Congress) 지그문트 프로이트 컬렉션(Collection: Sigmund Freud Papers)은 정신분석학의 창시자인 프로이트의 생애와 활동을 보여주는 방대한 기록군이다. 미국의회도서관에 따르면, 이 컬렉션은 총 48,600여 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프로이트의 가족, 동료, 학생, 환자와의 관계, 초기 정신분석학의 형성, 임상 기술의 발전, 프로이트의 저술과 관련 자료 등을 포함한다(Library of Congress).

이 기록물들의 초기 수집과 보존을 주도한 기관은 지그문트 프로이트 아

카이브(Sigmund Freud Archives, 이하 SFA)였다. 쿠르트 아이슬러(Kurt R. Eissler)와 SFA 관계자들은 1950년대 초반부터 프로이트의 생애와 연구를 보여주는 서신, 원고, 녹음 인터뷰 등을 수집하여 미국의회도서관에 기탁하였다. 이 과정에서 SFA는 자료에 여러 접근 제한을 설정하였으며, 일부 문서는 연구자에게 2102년까지 공개되지 않도록 하였다. 이러한 장기 제한이 정신분석 치료를 받은 환자 관련 자료의 사생활 보호라는 측면에서는 일정 부분 정당화될 수 있지만, 동시에 연구자의 접근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점에서 논쟁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다(Klumpenhouwer, 1986, pp.200-201).

아이슬러는 프로이트의 생애와 정신분석학의 역사를 복원하기 위해 프로이트의 동료, 조력자, 유족, 실제 치료를 받았던 환자들을 대상으로 구술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미국의회도서관의 컬렉션 설명에 따르면, Interviews and Recollections 시리즈에는 SFA의 설립자이자 장기 서기였던 아이슬러가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프로이트의 지인, 환자, 가족을 대상으로 수행한 인터뷰와 회고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이 중 대부분의 인터뷰는 1950년대에 생산되었으며, 녹취록, 인터뷰 요약, 인터뷰 대상자의 수정본 등이 포함된다(Library of Congress).

접근 통제는 자료의 민감성과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고려하여 장기간의 제한 공개 방식으로 작동하였다. Klumpenhouwer는 SFA가 미국의회도서관에 기탁한 자료에 다수의 접근 제한을 설정하였고, 일부 자료는 수집 시점으로부터 150년 이상이 지난 2102년에야 연구자에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하였다고 설명한다. 특히 해당 자료 중 상당 부분은 정신분석 치료를 받은 환자와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엄격한 접근 제한이 설정되었다. 또한 아이슬러는 접근 제한이 향후 기증자에게 자료 기탁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장치가 될 수 있다고 보았으며, 이는 자료 수집과 장기 보존을 위해 사후 공개 조건을 설정한 사례로 이해할 수 있다(Klumpenhouwer, 1986, pp.200-201).

이후 제한 기한이 도래한 자료들은 단계적으로 공개되었다. 미국의회도서관은 Interviews and Recollections 시리즈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는데, Set A는 2016년 이전에 공개된 인터뷰와 회고 자료이고, Set B는

2016년 10월에 완전히 공개된 인터뷰 자료이다(Library of Congress). 즉 아이슬러가 수집한 구술 인터뷰와 회고 자료는 처음부터 영구 비공개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 일정한 제한 기간을 거친 뒤 공개될 수 있는 구조로 관리되었다.

미국의회도서관 지그문트 프로이트 컬렉션의 공개 전환 사례는 사후 공개 조건을 사전에 설정하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아이슬러가 생산하거나 수집한 인터뷰 기록은 환자와 관련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장기간 비공개 또는 접근 제한 상태로 관리되었지만, 동시에 일정 기간이 지난 뒤 공개될 수 있도록 제한 기간이 설정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해당 기한이 도래한 뒤 일부 기록은 실제로 제한이 해제되어 공개되었다. 따라서 프로이트 컬렉션은 비공개 조치가 영구적인 폐쇄가 아니라, 구술자와 관련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일정 시간이 지난 뒤 활용 가능성을 회복하도록 설계된 기간 기반 공개관리 방식임을 보여준다. 이는 비공개 구술기록의 공개 전환을 위해 수집 단계에서부터 사후 공개 조건, 공개 시점, 공개 범위를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2) 재클린 케네디 구술기록

재클린 케네디는 남편인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당한 지 불과 4개월 뒤인 1964년 봄, 역사학자이자 대통령 특별보좌관이었던 아서 슐레진저(Arthur Schlesinger Jr.)와 함께 총 7차례에 걸쳐 인터뷰를 진행하고 대담 녹음 서사를 생산하였다. 이 구술기록은 백악관 시절의 정치적·외교적 비화와 대통령의 공적·사적 면모를 생생하게 담고 있었기에 사생활과 정적들에 대한 민감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재클린 케네디는 생전에 이 인터뷰 내용이 공개되지 않도록 엄격한 비공개 제한(Embargo)을 요청하였다(Maj, 2015, p.176-178).

그녀는 영구 비공개를 고집하는 대신 사후 일정 기간이 흐른 뒤에 공개하도록 지정하였으며, 그녀가 사망한 1994년 이후에도 유족들과의 협의를 거쳐 오랜 기간 보존되었다. 이 비공개 구술사는 인터뷰 채록 시점으로부터 약 47

년이 경과하고 케네디 대통령 취임 50주년을 맞이한 2011년에 이르러서야, 딸인 캐럴라인 케네디(Caroline Kennedy)의 결정과 유족의 동의 하에 비공개가 해제되어 서적 및 오디오 형태로 처음 공개되었다(Maj, 2015 pp.176-178). 존 F. 케네디 대통령 라이브러리 및 뮤지엄(John F. Kennedy Presidential Library and Museum)의 공식 기록에 따르면, 현재 이 기록물은 영부인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백악관 시절의 미공개 역사적 맥락을 복원하는 주요 디지털 사료인 "In Her Voice: Jacqueline Kennedy, The White House Years" 전시를 통해 학계와 대중에 서비스되고 있다(JFK Presidential Library and Museum, 2011).

존 F. 케네디 대통령 라이브러리 및 뮤지엄의 재클린 케네디 구술기록 공개 전환 사례는 구술자의 사전 의사와 유족의 사후 동의가 중요한 공개 전환 조건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재클린 케네디의 인터뷰는 생전에는 사생활 보호와 관련 인물에 대한 민감한 평가 때문에 비공개로 관리되었지만, 인터뷰 채록 후 47년이 경과하고, 케네디 대통령 취임 50주년이라는 역사적 맥락이 형성되었을 때 유족의 동의를 통해 서적·오디오·디지털 전시 형태로 공개되었다. 따라서 이 사례는 비공개 구술기록이 현재의 민감성을 이유로 보호되더라도, 사후 공개 조건과 유족의 동의를 통해 시간이 지난 뒤 역사적·사회적 활용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3) 브렌트 스코우크로프트 구술기록

미국 버지니아대학교 밀러센터(Miller Center)의 브렌트 스코우크로프트(Brent Scowcroft) 구술기록은 구술자가 생전에 공개 조건을 설정하고, 사후 그 조건에 따라 공개 전환이 이루어진 사례이다. 스코우크로프트는 조지 H. W. 부시 행정부에서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인물로, 냉전 종식, 걸프전, 미국의 군사 개입, 국가안보회의 운영 등 미국 외교·안보 정책의 핵심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하였다. 이러한 경력 때문에 그의 구술기록은 개인 회고를 넘어, 당시 미국 외교정책과 안보정책의 판단 구조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될 수 있다(Miller Center, 2020; Zelikow, 2020).

스코우크로프트 구술기록은 두 차례의 주요 인터뷰로 구성된다. 첫 번째 인터뷰는 1999년에 진행되었으며, 필립 젤리코(Philip Zelikow), 어니스트 메이(Ernest May), 파리드 자카리아(Fareed Zakaria), 제임스 매콜(James McCall)이 참여하였다. 이 인터뷰는 2011년에 공개되었다. 두 번째 인터뷰는 2000년 8월에 진행되었으며, 젤리코와 매콜이 참여하였다. 두 번째 인터뷰에서는 첫 번째 인터뷰보다 전문적이고 민감한 세부 내용이 더 깊이 다루어졌고, 스코우크로프트는 이 인터뷰를 자신의 사망 때까지 비공개로 둘 것을 요청하였다. 이후 스코우크로프트가 사망한 뒤, 해당 인터뷰는 약정된 조건에 따라 공개되었다(Zelikow, 2020).

공개 이후 이 구술기록은 미국 외교·안보 정책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었다. 공개된 자료에는 냉전 종식 이후 미국의 역할, 걸프전 당시 후세인 정권을 제거하지 않은 판단, 무력 사용의 조건, 대량살상무기 사용 가능성에 대한 대응 논의, 부시 대통령의 리더십과 정책 결정 방식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스코우크로프트 구술기록은 개인 회고가 아니라, 당시 정책 결정 내부의 판단 구조를 이해할 수 있는 사료로 기능하게 되었다(Zelikow, 2020).

밀러센터 브렌트 스코우크로프트 구술기록 공개 전환 사례는 비공개 구술기록의 공개 전환에서 구술자의 사전 의사와 공개 시점 설정이 중요한 조건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 구술기록은 생산 당시 외교·안보 정책의 민감성을 이유로 즉시 공개되기 어려웠지만, 영구 비공개로 남겨진 것이 아니라 구술자의 요청에 따라 사망 이후 공개될 수 있도록 관리되었다. 따라서 이 사례는 비공개 구술기록이 현재의 민감성을 이유로 보호되더라도, 수집 단계에서 사후 공개 조건과 공개 시점을 명확히 설정해 둔다면 시간이 지난 뒤 역사적·학술적 활용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4) 영국도서관(British Library) Sound Archive

영국도서관(British Library) Sound Archive는 구술기록의 웹 접근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기존 구술기록의 동의와 저작권 문제를 검토하였다. British

Library의 “The Way We Speak” 프로젝트는 영어 억양과 방언의 변화를 보여주기 위해 Survey of English Dialects(SED)와 Millennium Memory Bank(MMB)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 중 SED 녹음자료는 1950년대에 생산된 자료로, 당시에는 저작권 허가서나 서면 동의서가 사용되지 않았고, 오늘날과 같은 전 세계 웹 접근에 대한 공식적인 참가자 동의도 받지 않았다(Perks, 2009, p.78).

British Library는 SED 구술자 대부분이 1900년 이전에 출생했기 때문에 더 이상 생존해 있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서면 동의가 없고 웹 공개에 대한 명시적 동의도 없었기 때문에, 유족에게 별도 동의를 구해야 하는지 윤리적으로 검토하였다. 논의 결과, 유족을 찾는 것은 많은 경우 어렵거나 불가능하다고 보았고, 당시 참여자들이 SED 팀이 예상한 여러 공적 활용 목적을 알고 구두로 참여에 동의했다는 점, 그리고 관련 자료 일부가 이미 출판물 형태로 공개된 바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이에 따라 British Library는 전체 녹음이 아니라 일부 발췌 음원을 웹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공개를 진행하였다(Perks, 2009, p.78).

이후 British Library는 Archival Sound Recordings(ASR) 프로젝트를 통해 예술가, 과학자, 유대인 홀로코스트 생존자 등과의 구술 인터뷰를 디지털화하여 웹으로 제공하였다. 다만 이 프로젝트에서는 모든 폐쇄 또는 제한 인터뷰를 처음부터 제외하였고, 나머지 자료에 대해서는 구술자 또는 사망한 구술자의 유족에게 다시 연락하였다. 허가서가 없는 경우에는 누락된 양식을 작성하도록 요청하였으며, 응답이 없거나 허가를 받지 못한 자료는 프로젝트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인터넷 접근이 명시되지 않은 과거 허가서가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접근 방식과 이용 가능성을 설명하고, 질문이나 이의가 있으면 연락하도록 안내하였다(Perks, 2009, pp.80-81).

British Library는 SED 자료처럼 과거 생산되어 서면 동의서가 없고 웹 공개에 대한 명시적 동의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구술자의 사망 가능

성, 당시의 구두 동의, 기존 출판 여부, 유족 확인의 현실적 어려움, 전체 공개가 아닌 발췌 공개 방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를 진행하였다. 따라서 영국 British Library 사례는 비공개 구술기록의 공개 전환에서 동의 부재를 공개 불가능 사유로만 보지 않고, 기록 생산 당시의 동의 맥락, 구술자의 생존 가능성, 유족 확인 가능성, 기존 공개 이력, 공개 범위의 제한 여부를 함께 검토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이 사례는 발췌 공개, 제한 인터뷰 제외, 이용자 안내, 윤리적 이용 고지, 게시중단 절차 등의 공개 방법을 사용하여 구술자와 관련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 가능성을 줄이는 방식으로 관리하였다. British Library는 이후 'Ethical use of oral history' 안내와 함께 녹음자료 삭제 요청을 처리하기 위한 Notice and Takedown 절차도 마련하였다(Perks, 2009, p.81).

이상의 구술기록 공개 전환 사례를 종합해 볼 때, 구술기록 공개 전환 검토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내용을 의미 단위로 1차 추출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표 10]과 같다.

[표 10] 1차 분석: 구술기록 공개 전환 사례 분석 결과 의미 코드

구분	주요 구성 내용	의미 코드
지그문트 프로이트 컬렉션	환자와 관련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장기간 접근을 제한함	환자·관련자 사생활 보호
	기록마다 서로 다른 공개 예정 시점을 설정함	기록별 공개 시점 차등
	제한 기한이 도래한 기록을 순차적으로 공개함	제한기간 종료 후 단계적 공개
	일부 기록은 매우 장기간 비공개 상태로 설정됨	고위험 기록 장기 제한
재클린 케네디 구술기록	정치·외교적 비화와 개인적 내용 때문에 생전에 비공개함	생전 사생활·정치적 민감성
	구술자 사망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비공개 상태를 유지함	사망 후 추가 보호기간
	유족의 동의를 받아 공개함	유족의 사후 동의
	대통령 취임 50주년이라는 역사적 시점에 공개함	역사적 기념 시점 공개
	서적, 오디오, 디지털 전시로 이용함	다매체 공개 활용

구분	주요 구성 내용	의미 코드
브렌트 스코우크 로프트 구술기록	민감도가 낮은 인터뷰와 높은 인터뷰의 공개 시점을 다르게 정함	인터뷰별 민감도 차등
	민감한 인터뷰는 구술자가 사망할 때까지 비공개함	구술자 사망 시까지 제한
	사전에 약정한 조건에 따라 사망 후 공개함	사전 약정에 따른 공개
British Library Sound Archive	오래된 기록에 서면 동의서와 웹 공개 동의가 존재하지 않음	과거 동의서 부재
	구술자가 대부분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함	출생연도 기반 생존 가능성 판단
	유족 확인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현실을 고려함	유족 확인의 현실적 한계
	구술 당시의 구두 동의와 공적 활용 목적을 고려함	생산 당시 동의 맥락
	일부 자료가 이미 출판된 사실을 고려함	기존 공개 이력
	전체 기록이 아닌 일부 발췌 음원만 공개함	발췌 공개
	폐쇄·제한된 인터뷰는 디지털 공개 대상에서 제외함	제한 기록 공개 대상 제외
	게시 이후 삭제 요구에 대응하는 절차를 마련함	게시중단 절차

구술기록 공개 전환 사례 분석 결과 사전 환자·관련자 사생활 보호, 기록별 공개 시점 차등, 제한기간 종료 후 단계적 공개, 고위험 기록 장기 제한, 생전 사생활·정치적 민감성, 사망 후 추가 보호기간, 유족의 사후 동의, 역사적 기념 시점 공개, 다매체 공개 활용, 인터뷰별 민감도 차등, 구술자 사망 시까지 제한, 사전 약정에 따른 공개, 과거 동의서 부재, 출생연도 기반 생존 가능성 판단, 유족 확인의 현실적 한계, 생산 당시 동의 맥락, 기존 공개 이력, 발췌 공개, 제한 기록 공개 대상 제외, 게시중단 절차, 총 20가지 의미 코드를 도출할 수 있었다.

제 2 절 과거사 진상 규명 기록 공개 전환 사례

본 절에서는 과거사 진상 규명 비공개기록이 어떠한 배경과 절차를 거쳐 공개 또는 접근 허용의 대상으로 전환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과거사 진상 규명 기록에는 구술증언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의 감시·수사기록, 경찰기록, 행정기록 등 다양한 유형의 민감 기록이 함께 포함된다. 따라서 과거사 진상

규명 기록 전반의 공개 전환 사례를 검토하여, 비공개 구술기록의 공개 전환 검토 기준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1) 독일 Stasi Records Archive

독일의 Stasi Records Archive는 동독 국가보안부(Ministry for State Security, Stasi)가 생산한 감시·사찰 기록을 보존하고 공개한 사례이다. 슈타지(Stasi)는 1950년부터 1990년까지 동독 시민들의 정치적 태도, 사회적 관계, 일상적 행위 등을 광범위하게 감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생산된 기록에는 감시 대상자의 개인정보와 사생활 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있었고, 기록 자체도 국가권력이 시민을 통제한 방식을 보여주는 민감한 자료였다. 그러나 1989년 평화혁명 당시 시민들은 슈타지가 기록을 파기하려 하자 슈타지 사무소를 점거하여 기록 파괴를 막았다. 당시 시민들은 이 기록을 사생활 침해의 산물로만 보지 않고, 국가폭력과 인권침해를 밝힐 수 있는 증거이자 과거사 규명에 필요한 자료로 인식하였다(Hovestädt, 2021, pp.220-221).

통일 이후 독일은 슈타지 기록을 비공개하거나 일반 비공개기록으로 장기간 묶어두지 않았다. 대신 1991년 슈타지 기록법(Stasi Records Act, 이하 StUG)을 제정하여 기록 접근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 법은 슈타지 활동의 피해자가 자신의 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연구자와 언론인이 동독 독재 체제의 권력 작동 방식과 억압 구조를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 접근을 허용하였다. 이때 핵심은 개인정보 보호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국가권력 행위의 투명화라는 두 가치를 구분하여 조정한 데 있다. 즉 감시 대상자의 정보는 보호하되, 국가권력을 행사한 슈타지 직원이나 비공식 협력자의 정보는 일정 조건 아래 공개될 수 있도록 하여, 책임 규명과 공적 논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Hovestädt, 2021, pp.222-223).

이러한 공개 접근 체계는 슈타지 기록의 공익적 가치가 제도적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슈타지 기록은 개인에게는 자신의 삶이 독재 권력에 의해 어떻게 감시되고 침해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자료였고, 사회적으로는 독재 체제의 억압 구조와 국가폭력의 실체를 밝히는 자료였다. 실제로 이 기록은

피해자의 자기 기록 열람, 공직자 검증, 피해 회복과 보상, 형사 수사, 역사 연구, 교육, 전시 등 다양한 공적 목적에 활용되었다. 2020년 초까지 약 730만 건의 접근 요청이 있었고, 그중 300만 건 이상은 개인이 자신의 기록을 확인하기 위한 요청이었다. 또한 슈타지 기록보관소는 연구·교육 부서를 설치하여 출판물, 전시, 학교 교육자료, 디지털 콘텐츠 등을 제작함으로써 기록을 사회적 기억과 민주주의 교육의 자료로 활용하였다(Hovestädt, 2021, pp.222-223).

아울러 슈타지 기록은 학술적 가치가 큰 기록이기도 하다. 슈타지 기록은 동독 독재 체제의 권력 구조, 감시 방식, 정보 수집 체계, 시민 통제 방식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1차 사료이다. 이 기록을 통해 연구자들은 국가기관이 개인과 사회를 어떻게 감시했는지, 비공식 협력자 제도가 어떻게 작동했는지, 억압이 개인의 삶과 사회적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할 수 있다. 실제로 슈타지 기록은 역사학, 정치학, 사회학, 기록학, 인권 연구, 전환기 정의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는 자료로 평가된다. 슈타지 기록은 SED 독재의 성격과 그 재평가를 이해하기 위한 풍부하고 복합적이며 드러내는 자료라고 보았고, 독재 체제의 삶과 인권 침해 비용을 이해하는 데 대체하기 어려운 사실의 저장소이다(Hovestädt, 2025, pp.8-9).

특히 슈타지 기록의 학술적 가치는 기록의 세부성과 원천성에서 나온다. 이 기록은 사후 회고나 해석 자료가 아니라, 국가보안부가 실제 감시와 통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산한 문서, 사진, 음성·영상, 데이터 자료를 포함한다. 따라서 연구자는 이 기록을 통해 독재 체제의 공식 논리와 실제 집행 방식, 감시 대상자에 대한 분류와 판단, 정보 생산과 보고 체계, 국가폭력이 일상 속에서 작동한 방식을 구체적으로 추적할 수 있다. 또한 슈타지 기록은 독일 통일 이후 두 차례의 연방 조사위원회가 SED 독재를 조사하는 데 필수적인 자료로 활용되었으며, 박물관, 교육기관, 역사 현장에서도 억압의 구조를 설명하는 자료로 사용되었다(Hovestädt, 2025, p.6).

슈타지 기록은 민감한 개인정보와 사생활 정보를 포함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국가권력의 감시와 억압을 증명하고 피해자의 권리 회복을 돕는 공익적 가치를 지니고 있었다. 나아가 독재 체제와 감시사회, 인권침해, 전환기 정의,

기억문화 연구를 가능하게 하는 학술적 가치도 함께 지니고 있었다. 독일은 이러한 공익적·학술적 가치를 반영하여 접근 목적과 이용 주체에 따라 공개 범위를 달리 설정하였다. 피해자에게는 자기 기록 접근권을 보장하고, 연구자와 언론인에게는 독재 체제의 구조를 밝힐 수 있는 범위에서 접근을 허용했으며, 공공기관에는 공직자 검증과 피해 회복 절차를 위해 기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독일 Stasi Records Archive 사례는 비공개 구술기록의 공개 전환 논의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구술기록이 국가폭력, 강제동원, 사회적 재난, 인권침해, 지역 공동체의 역사 등 공익적 의미가 큰 사건을 증언하는 자료라면, 장기간 비공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또한 해당 구술기록이 특정 사건의 경험과 기억을 담고 있어 역사 연구, 사회사 연구, 인권 연구, 지역사 연구, 교육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면, 그 학술적 가치 역시 공개 전환 판단에 반영되어야 한다. 이 경우 공개 전환 판단에서는 기록이 지닌 역사적·사회적 가치, 피해 회복과 권리 구제 가능성, 학술적·교육적 활용 가능성 등 공익적·학술적 가치가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

2) 과테말라 국가경찰 역사기록보관소(AHPN)

과테말라 국가경찰 역사기록관(Archivo Histórico de la Policía Nacional, 이하 AHPN)은 과테말라 내전과 국가폭력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기록 공개 사례이다. AHPN은 2005년 과테말라시티에서 우연히 발견된 과거 국립경찰의 기록군을 바탕으로 형성되었다. 이 기록들은 1882년부터 1997년까지 생산된 약 8천만 쪽에 이르는 방대한 문서로, 발견 당시에는 훼손과 방치 상태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이 기록은 내전기 인권침해와 강제실종, 국가폭력의 구조를 밝힐 수 있는 핵심 증거로 인식되었다. 이에 따라 과테말라 인권옴부즈맨 사무소와 시민사회는 기록의 파기 가능성을 우려하며 보존과 접근을 요구하였고, AHPN 복구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Blumenthal, Franco 외, 2021, pp.102-103).

AHPN 기록은 개인정보와 민감한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었다. 국립경

찰은 시민의 신원, 체포, 조사, 감시, 행정처리, 경찰 내부 보고 등을 기록했으며, 이 안에는 피해자, 실종자, 경찰관, 지휘관, 관련 기관의 정보가 함께 포함되어 있었다. 따라서 이 기록은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이나 관련자의 권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료였다. 그럼에도 AHPN은 이 기록을 공공정보 접근권과 과거사 규명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접근 체계를 마련하였다. 과테말라에서는 2009년 공공정보 접근법(Decreto 57-2008)이 시행되었고, AHPN은 이 법을 근거로 2009년 1월부터 기록에 포함된 공공정보의 열람을 개시하였다. 다만 실제 접근은 처리·디지털화가 완료된 문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원본 열람은 주로 검찰 등 사법기관의 인권침해 사건 조사에 한정되었다(Blumenthal, Franco 외, 2021, pp.150-153).

AHPN 사례에서 주목할 점은 기록의 공개와 활용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 및 사회적 진실 규명과 직접 연결되었다는 점이다. AHPN은 검찰, 인권옴부즈맨 사무소, 피해자 가족, 시민사회단체, 연구자 등 다양한 이용자의 요청에 응답하였다. 특히 검찰은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 조사를 위해 AHPN 기록을 주요 증거 자료로 활용하였다. 2009년부터 2017년까지 과테말라 검찰은 AHPN에 8,973건의 정보 요청을 했고, AHPN은 이에 대해 108,067장의 이미지를 제공하였다. 이 문서들은 강제실종 사건 등 여러 사법 절차에서 활용되었으며, AHPN은 문서의 출처, 생산 맥락, 조직 구조, 지휘계통을 설명하는 기록 전문가 의견을 통해 기록이 법적 증거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Blumenthal, Franco 외, 2021, pp.151-160).

AHPN은 기록을 과거사 규명과 사회적 기억 형성의 자료로 활용하였다. AHPN의 활동은 '과거 다루기'의 맥락에서 이해되며, 이는 중대한 인권침해 이후 피해자와 사회 전체의 진실, 정의, 배상, 재발 방지의 권리를 다루는 과정으로 설명된다. AHPN은 기록 접근을 통해 피해자와 유족이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고, 사회 전체가 국가폭력의 구조와 책임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였다(Blumenthal, Franco 외, 2021, pp.182-183).

또한 AHPN 기록은 과테말라 내전과 국가폭력의 구조를 학술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중요한 연구 자료로 활용되었다. AHPN은 약 8천만 쪽에 이르는

방대한 경찰기록을 보존·정리·디지털화함으로써, 기존에는 접근하기 어려웠던 국가기관의 내부 문서와 행정적 기록 흐름을 연구 대상으로 전환하였다. 이 기록은 과테말라 내전기 경찰 조직의 구조, 명령 체계, 정보 생산 방식, 감시와 체포의 행정 절차, 군과 경찰의 관계 등을 분석할 수 있는 1차 자료로서 의미를 가진다. 실제로 AHPN의 자료는 역사학뿐 아니라 사회학, 기록학, 인류학, 정치학, 커뮤니케이션학, 범죄학, 법학, 행정학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에 활용되었으며, 국내외 연구자들이 학위논문, 석사논문, 박사논문 및 기관 연구를 수행하는 데 사용되었다(Blumenthal, Franco 외, 2021, pp.178-179).

AHPN 사례는 민감정보가 포함된 기록이라도 그 기록이 국가폭력과 인권 침해를 밝히는 공익적 가치를 지닐 경우, 공개 전환 또는 접근 허용의 대상으로 검토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AHPN 기록은 개인의 신상정보와 경찰 기록을 포함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피해자의 진실 접근권, 사법적 책임 규명, 역사적 기억 보존, 재발 방지라는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였다. 나아가 AHPN 기록은 과테말라 내전기 국가폭력의 구조, 경찰조직의 명령 체계, 감시와 체포의 행정 절차, 군과 경찰의 관계를 분석할 수 있는 학술적 가치도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과테말라는 기록을 일률적으로 비공개하지 않고, 디지털 사본 제공, 사법기관의 원본 접근, 이용자 요청 처리, 기록 전문가 의견 제공 등 접근 목적과 이용 주체에 따라 공개와 활용 방식을 조정하였다.

이 사례는 비공개 구술기록의 공개 전환에서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구술기록이 국가폭력, 강제동원, 인권침해, 사회적 재난, 지역 공동체의 역사처럼 공익적 의미가 큰 사건을 증언하는 자료라면, 그 기록이 피해 회복, 진실 규명, 학술 연구, 교육, 사회적 기억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 즉 비공개 구술기록의 공개 전환 판단에서는 기록이 지닌 공익적·학술적 가치도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

이상의 과거사 진상 규명 기록의 공개 전환 사례를 종합해 볼 때, 구술기록 공개 전환 검토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내용을 의미 단위로 1차 추출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표 11]과 같다.

[표 11] 1차 분석: 과거사 진상 규명 기록 공개 전환 사례 분석 결과 의미 코드

구분	주요 구성 내용	의미 코드
Stasi Records Archive	개인정보가 포함된 기록을 국가폭력과 감시의 증거로 평가함	국가폭력 증거성
	피해자가 자기 기록을 열람하도록 허용함	피해자의 자기기록 접근
	피해 회복·보상·형사 수사·공직자 검증에 기록을 이용함	권리 회복·책임 규명 이용
	피해자와 제3자 정보는 보호하고 권력 행사자의 정보는 구분하여 이용함	정보주체 지위별 공개 범위
	연구자와 언론인에게 목적에 따라 접근을 허용함	이용 목적별 접근
	출판, 전시, 교육자료,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함	기록의 교육적 활용
AHPN	개인정보를 포함한 경찰 기록을 인권침해 조사 자료로 이용함	민감정보 포함 기록의 조사 이용
	검찰과 사법기관에 기록 이미지와 원본 접근을 제공함	사법기관 목적별 제공
	피해자와 유족이 사건 내용을 확인하도록 지원함	피해자·유족의 진실 접근
	강제실종과 국가폭력 사건의 증거로 기록을 활용함	인권침해 증거 활용
	기록의 출처와 생산 맥락을 전문가가 설명함	기록전문가의 맥락 지원
	다양한 학문 분야의 연구 자료로 제공함	다학제 연구 활용
	디지털 사본과 원본 열람을 이용자에 따라 구분함	매체·이용자별 접근 차등

과거사 진상 규명 기록의 공개 전환 사례 분석 결과 국가폭력 증거성, 피해자의 자기기록 접근, 권리 회복·책임 규명 이용, 정보주체 지위별 공개 범위, 이용 목적별 접근, 기록의 교육적 활용, 민감정보 포함 기록의 조사 이용, 사법기관 목적별 제공, 피해자·유족의 진실 접근, 인권침해 증거 활용, 기록전문가의 맥락 지원, 다학제 연구 활용, 매체·이용자별 접근 차등, 총 13가지 의미 코드를 도출할 수 있었다.

공개 전환 사례들을 종합한 결과, 비공개 구술기록의 공개 전환 검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각 사례는 비공개 구술기록이 제한기간의 경과, 구술자 사망, 유족 동의, 사전 약정, 생존 가능성 판단 등에 따라 공개 전환이 검토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이러한 사례들은 구술자와 관련자의 사생활 보호가 필요하더

라도, 수집 단계에서 공개 시점과 공개 조건을 명확히 설정하거나 사후 동의 절차를 마련한다면 일정한 시간이 지난 뒤 기록의 활용 가능성을 회복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각 사례는 개인정보와 민감정보가 포함된 과거사 진상 규명 기록이라 하더라도, 해당 기록이 국가폭력과 인권침해의 증거로서 피해자의 진실 접근, 권리 회복, 책임 규명, 사법적 조사에 기여할 수 있다면 공개 전환 또는 접근 허용의 대상으로 검토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들 사례는 공개 전환이 반드시 전면 공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 목적, 정보주체의 지위, 접근 주체, 공개 매체에 따라 공개 범위와 방식을 차등화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각 사례는 비공개기록이 시간이 지난 뒤 역사 연구, 정책사 연구, 사회사 연구, 인권 연구, 교육, 전시, 디지털 콘텐츠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비공개 구술기록의 공개 전환 검토 기준은 시간의 경과에 따른 보호 필요성의 변화, 공개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공익, 학술적·교육적 활용 가치, 공개 이후의 보호조치를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다.

제 6 장 비공개 구술기록의 공개 전환 검토 기준

본 장에서는 비공개 구술기록이 어떠한 조건에서 공개 가능한 기록으로 전환될 수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1절에서는 국내외 법령, 구술동의서, 공개 전환 사례 분석을 통해 비공개 구술기록의 공개 전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판단 요인을 도출한다. 2절에서는 이러한 기준을 적용한 체크리스트 1차안을 구성하고, 실무 전문가 자문을 통해 수정·보완한 최종 체크리스트를 제시하고자 한다.

제 1 절 비공개 구술기록의 공개 전환 검토 기준

본 절에서는 앞서 분석한 국내외 법령, 구술동의서, 공개 전환 사례를 종합하여 주요 내용을 추출하고, 추출된 내용 가운데 의미가 유사하고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항목을 묶어 공통 의미를 구성한 뒤 이를 상위 범주로 정리하였다.

국내외 법령 분석 결과 총 24가지 1차 의미 코드를 추출해낼 수 있었고, 의미 코드를 의미의 유사성, 기능적 연관성, 자료 유형 간 반복 여부에 따라 묶어 공통 의미로 2차 범주화를 실시하였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표 12]와 같다.

[표 12] 2차 분석: 국내외 법령 분석 결과 공통 의미 범주화

공통 의미 범주	의미 코드
비공개 필요성의 시간적 변화	5년 주기 공개재분류
	생산 후 30년 공개 원칙
	개인정보 기록 재분류 유예
	심의를 통한 비공개 연장
	비공개 필요성 소멸 후 공개
	기록 생산 후 일반 보호기간
	사망 후 이용 가능 시점
	출생연도 대체 기준
	기록 생산일 최종 대체 기준
	정보 민감도별 보호기간

공통 의미 범주	의미 코드
	사망일 기준 공개기간
	사망일 불명 시 출생 기준
공개를 통해 실현되는 사회적 이익	공익·권리구제 목적 공개
	공익에 따른 보호기간 조정
	피해 회복 목적 이용
	범죄·책임 규명 목적 이용
	공적 역할 관련 정보 이용
	인권침해 기록 비공개 금지
연구·교육을 위한 제한적 이용	학술연구 목적 제한열람
	가명처리 후 연구·보존 이용
	연구 이익과 보호 이익 비교
	연구자료 익명화 의무
	역사분석·교육 목적 제공
	정보 접근권의 교육적 활용

국내외 법령 속 공개 전환과 관련된 규정과 판단 근거들을 공통 의미로 범주화시켰을 때, 비공개 필요성의 시간적 변화, 공개를 통해 실현되는 사회적 이익, 연구·교육을 위한 제한적 이용, 이 세 가지 공통 의미를 도출할 수 있었다.

국내외 구술동의서 내용 분석에서 중복되는 항목을 통합한 결과 총 26가지 의미 코드를 도출할 수 있었고, 의미 코드를 의미의 유사성, 기능적 연관성, 자료 유형 간 반복 여부에 따라 묶어 범주화를 실시하였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표 13]과 같다.

[표 13] 2차 분석: 국내외 구술동의서 내용 분석 결과 공통 의미 범주화

공통 의미 범주	의미 코드
조건 충족 후 공개 재검토	비공개 구간 타임코드
	선택형 비공개 기간
	비공개 종료일 명시
	종료 후 평가위원회 심의
	이용자·접근방식 제한
	사후 권리자 연락처
	구술자 지정 종료일
	구술자 요구사항 기록
	면담 후 공개 조건 확정
	엠바고 종료일
	비공개 기간 가이드라인

공통 의미 범주	의미 코드
	공개 시점 선택
	실명·익명 공개 선택
공적 활용에 대한 사전 동의	동의 과정의 공익성 설명
	공익·학술 이용 위임
	기관의 이관·공개 권한
	사전 공개·보존 고지
장기적 연구·교육 활용 기반	저작재산권 양도
	다목적 이용 허락
	이용 시 추가 승인
	저작권 처리 방식 선택
	기록 유형별 저작권 양도
	교육·학술 목적 공개
	구체적 이용권 부여
	기관 면책 조항
	기관의 자료 처분 권한

국내외 구술동의서 내용 속 향후 공개와 활용 가능성을 결정하는 항목들을 공통 의미로 범주화시켰을 때, 조건 충족 후 공개 재검토, 공적 활용에 대한 사전 동의, 장기적 연구·교육 활용 기반, 이 세 가지 공통 의미를 도출할 수 있었다.

공개 전환 사례 분석 결과 총 33가지 의미 코드를 도출할 수 있었고, 의미 코드를 의미의 유사성, 기능적 연관성, 자료 유형 간 반복 여부에 따라 묶어 범주화를 실시하였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표 14]와 같다.

[표 14] 2차 분석: 공개 전환 사례 분석 결과 공통 의미 범주화

공통 의미 범주	의미 코드
시간 경과에 따른 위험 감소	환자·관련자 사생활 보호
	기록별 공개 시점 차등
	제한기간 종료 후 단계적 공개
	고위험 기록 장기 제한
	생전 사생활·정치적 민감성
	사망 후 추가 보호기간
	유족의 사후 동의
	인터뷰별 민감도 차등
	구술자 사망 시까지 제한
	사전 약정에 따른 공개
	과거 동의서 부재
	출생연도 기반 생존 가능성 판단

공통 의미 범주	의미 코드
	유족 확인의 현실적 한계
	생산 당시 동의 맥락
	기존 공개 이력
	발췌 공개
	제한 기록 공개 대상 제외
	게시중단 절차
	정보주체 지위별 공개 범위
	이용 목적별 접근
	매체·이용자별 접근 차등
공개를 통해 실현되는 사회적 이익	역사적 기념 시점 공개
	국가폭력 증거성
	피해자의 자기기록 접근
	권리 회복·책임 규명 이용
	기록의 사회적 활용
	민감정보 포함 기록의 조사 이용
	사법기관 목적별 제공
	피해자·유족의 진실 접근
	인권침해 증거 활용
	기록전문가의 맥락 지원
대체 불가능한 기록의 활용 필요	다매체 공개 활용
	다학제 연구 활용

공개 전환 사례 중 실제 공개 결정에 영향을 미친 조건을 공통 의미로 범주화시켰을 때, 시간 경과에 따른 위험 감소, 공개를 통해 실현되는 사회적 이익, 대체 불가능한 기록의 활용 필요, 세 가지 공통 의미를 도출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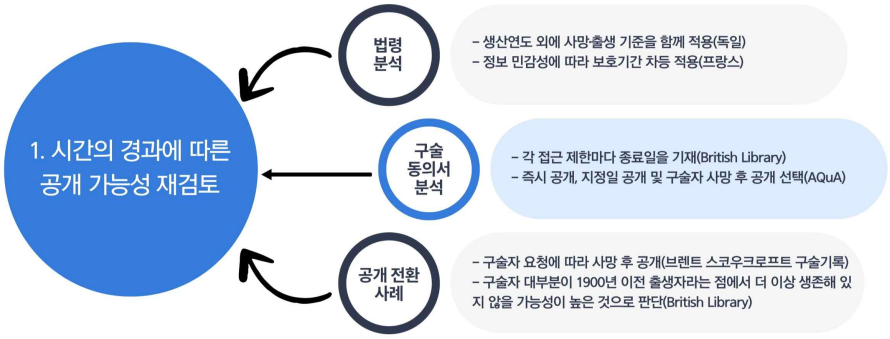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국내외 법령에서는 보호기간, 재분류, 공익적 예외, 학술연구 및 교육 목적의 이용과 같이 공개 전환과 직접 관련된 규정과 판단 근거를 추출하였다. 구술동의서에서는 비공개 종료일, 사후 공개, 공익적 이용, 저작권 및 2차적 이용 권한과 같이 향후 공개와 활용 가능성을 결정하는 항목을 확인하였다. 공개 전환 사례에서는 제한기간의 만료, 구술자 사망, 피해 회복, 진상 규명, 연구·교육 활용과 같이 실제 공개 결정에 영향을 미친 조건을 추출하였다. 이후 서로 다른 자료에서 확인된 내용 가운데 의미가 유사한 항목을 묶고,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공통 의미를 상위 범주로 정리하였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표 15]와 같다.

[표 15] 법령·구술동의서·사례 분석 내용의 공통 의미 범주화

상위 범주	법령	공통 의미	자료
시간의 경과	보호기간 만료, 재분류 주기, 사망·출생·생산 시점	비공개 필요성의 시간적 변화	법령
	권리 구제, 인권침해 규명, 공공의 이익	공개를 통해 실현되는 사회적 이익	구술 동의서
	학술연구 목적 열람, 역사적 연구, 교육 목적	연구·교육을 위한 제한적 이용	사례
공익성	비공개 종료일, 사후 공개, 생존 기간 엠바고	조건 충족 후 공개 재검토	법령
	공익적 목적의 이용·위임	공적 활용에 대한 사전 동의	구술 동의서
	연구·출판·교육·2차 이용 권한	장기적 연구·교육 활용 기반	사례
학술적·교육적 활용 가치	제한기간 만료, 사망 후 공개, 장기 경과 후 공개	시간 경과에 따른 위험 감소	법령
	피해 회복, 책임 규명, 진실 접근	공개로 실현되는 사회적 이익	구술 동의서
	희소한 원자료, 연구·전시·교육 활용	대체 불가능한 기록의 활용 필요	사례

비공개 필요성의 시간적 변화는 ‘시간의 경과’, 개인의 권리 보호와 비교·형량할 필요가 있는 사회적 이익은 ‘공익성’, 연구와 교육을 위한 기록의 이용 필요성은 ‘학술적·교육적 활용 가치’로 범주화하였다. 이 세 범주는 특정 자료 하나에서만 확인된 것이 아니라 법령, 구술동의서 및 공개 전환 사례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난 공통된 의미라는 점에서 최종 판단 요인으로 선정하였다.

1) 시간의 경과에 따른 공개 가능성 재검토



[그림 16] 비공개 구술기록의 공개 전환 검토 기준 1(시간의 경과)

국내외 법령 및 구술동의서 분석, 공개 전환 사례를 종합하면, '시간의 경과'는 비공개 구술기록의 첫 번째 판단 요인으로 도출된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확인하여야 한다.

첫째, 구술동의서나 비공개 내역서에 설정된 종료일이 도래했는지

둘째, 기록 생산 이후 얼마나 시간이 경과했는지

셋째, 구술자와 기록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의 생존 여부가 어떠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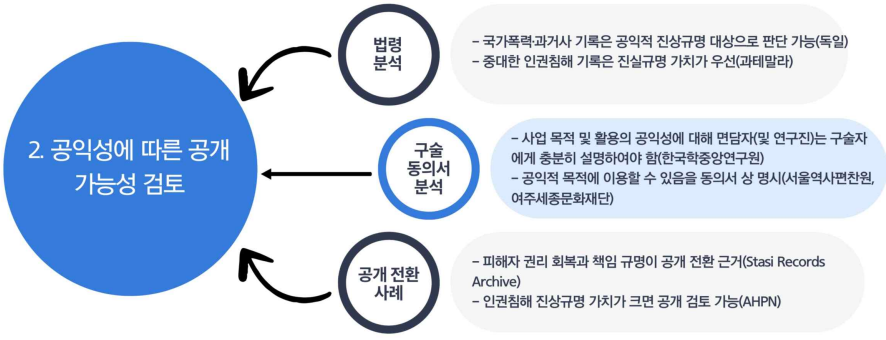
넷째, 사망 후 일정 기간이나 출생 후 일정 기간과 같은 대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다섯째, 시간의 경과로 기존 비공개 사유의 실질적인 보호 필요성이 감소했는지

그 결과 비공개 기간이 종료되었거나 사망 후 공개 조건이 충족되었고, 시간이 흐르면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기존 위험이 실질적으로 감소한 경우에는 공개 가능성을 재검토 할 수 있다. 반면 일정 기간이 경과했더라도 생존한 제3자의 민감정보가 포함되어 있거나, 공개 시 현재에도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기존 비공개 사유가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시간의 경과에 따른 공개 가능성 재검토는 일정 연수가 지났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아니라, 기록 생산 당시 존재했던 비공개 필요성이 현재에도 동일한 강도로 유지되고 있는지를 다시 판단하는 과정이

라고 할 수 있다.

2) 공익성에 따른 공개 가능성 검토



[그림 17] 비공개 구술기록의 공개 전환 검토 기준 2(공익성)

국내외 법령 및 구술동의서 분석, 공개 전환 사례를 종합하면, '공익성'은 비공개 구술기록의 두 번째 판단 요인으로 도출된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확인하여야 한다.

첫째, 해당 기록이 국가폭력, 인권침해, 강제동원 등 사회적 재난 및 과거사 사건의 진상 규명에 필요한지

둘째,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보상 등 권리 구제에 기여할 수 있는지

셋째, 국가기관이나 공적 권한을 행사한 주체의 책임을 확인할 수 있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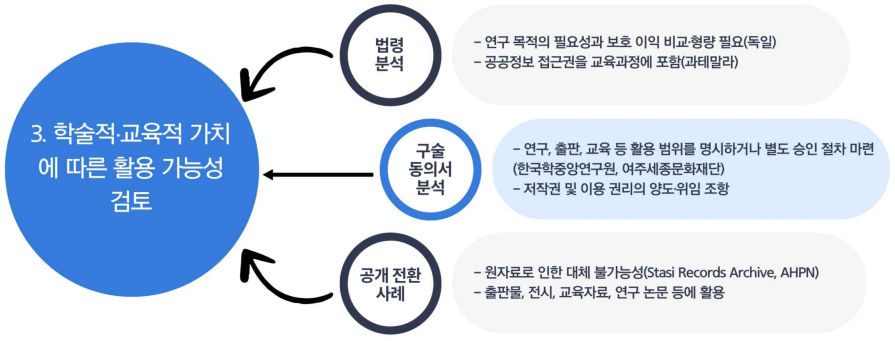
넷째, 은폐되거나 왜곡된 사실을 바로잡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데 필요한지

다섯째, 유사한 피해의 재발 방지에 기여할 수 있는지

그 결과 기록의 공개가 피해 회복, 진상 규명, 책임 확인 및 재발 방지와 직접적으로 연결되고, 공개를 통해 실현되는 공적 이익이 비공개로 보호되는 이익보다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개 가능성을 재검토 할 수 있다. 반면 기록의 공익적 관련성이 불분명하거나 공개로 인해 구술자와 제3자에게 발생할 피해가 구체적이고 중대한 경우에는 공익성만을 근거로 공개 전환을 판단하기 어렵다. 따라서 공익성에 따른 공개 가능성 검토는 기록이 지닌 일반적인 역사적 중요성이나 연구 가능성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가 피해자의 권리 회복, 진실 규명, 공적 책임 확인 및 재발 방지에 실제로 기여할 수 있

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3) 학술적·교육적 가치에 따른 활용 가능성 검토



[그림 18] 비공개 구술기록의 공개 전환 검토 기준 3(학술적·교육적 활용 가치)

국내외 법령 및 구술동의서 분석, 공개 전환 사례를 종합하면, '학술적·교육적 활용 가치'는 비공개 구술기록의 세 번째 판단 요인으로 도출된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확인하여야 한다.

첫째, 해당 기록이 기존 문헌이나 다른 자료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경험과 정보를 포함하는지

둘째, 동일하거나 유사한 자료로 대체하기 어려운 희소성과 유일성을 지니는지

셋째, 특정 사건이나 시대, 공동체 및 사회현상을 분석하는 데 필요한 원자료인지

넷째, 기록의 생산 배경과 면담·검독 과정 등 연구에 필요한 맥락정보가 충분히 남아 있는지

다섯째, 연구와 교육의 목적이 구체적이며 해당 기록의 이용이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지

그 결과 해당 기록이 희소성과 대체 불가능성을 지니고, 구체적인 연구나 교육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자료이며,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통해 이용 위험을 줄일 수 있다면 학술적·교육적 활용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 반면 동일한 정보를 다른 공개자료로 충분히 확인할 수 있거나, 연구·교육 목적이 불분명하고, 기록 이용으로 발생하는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적절히 줄이

기 어려운 경우에는 학술적·교육적 가치만으로 이용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학술적 가치가 인정되더라도 원본 음성·영상의 일반 공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연구자 제한 열람, 익명화된 녹취록 제공, 특정 구간 발췌 및 교육용 편집본 이용 등 가능한 이용 범위를 구분하여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학술적·교육적 가치에 따른 활용 가능성 검토는 기록의 일반적인 중요성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의 희소성·대체 불가능성·연구 필요성과 개인정보 보호 가능성을 함께 고려하여 실제 이용 가능한 대상과 범위를 판단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비공개 구술기록의 공개 전환 검토 기준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16]과 같다.

[표 16] 비공개 구술기록의 공개 전환 검토 기준

기준	주요 내용
시간의 경과에 따른 공개 가능성 재검토	- 비공개 제한기간 경과 여부 - 구술자·관련자의 생사 상태 - 기존 비공개 사유의 지속 여부
공익성에 따른 공개 가능성 검토	- 공개를 통해 실현되는 공적 이익 - 피해 회복·진상 규명·책임 확인 가능성 - 공익과 개인 권리 보호 간 비교
학술적·교육적 가치에 따른 활용 가능성 검토	- 기록의 희소성·유일성 - 다른 자료로의 대체 가능성 - 연구·교육 목적의 필요성

비공개 구술기록의 공개 전환 여부는 다음의 세 가지 기준을 중심으로 검토할 수 있다. 첫째, 시간의 경과에 따른 공개 가능성 재검토는 비공개 제한기간의 종료 여부와 구술자·관련자의 생존 상태, 기존 비공개 사유의 지속 여부를 살펴보는 과정이다. 둘째, 공익성에 따른 공개 가능성 검토는 기록의 공개가 피해 회복, 진상 규명, 책임 확인, 국민의 알 권리 및 재발 방지에 기여하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이다. 셋째, 학술적·교육적 가치에 따른 활용 가능성 검토는 기록의 희소성·유일성·대체 불가능성과 연구·교육 목적의 필요성을 확인하여 실제 활용 가능성을 판단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검토 기준은 각각 독립적으로 적용되기보다 상호 연계하여 검토되

어야 하며, 어느 하나의 기준만으로 공개 전환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구술자의 공개 의사가 확인되더라도 현재까지 비공개 사유가 유지될 수 있고, 반대로 동의 범위가 제한적이더라도 시간의 경과나 공익성, 학술적·교육적 가치에 따라 부분 공개 또는 제한적 이용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공개 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와 제3자의 권리 침해 위험을 고려하여 익명화, 가명처리, 발췌 공개, 연구자 제한 열람 등 공개 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다음 절에서는 이러한 검토 요인들이 실제 기록관리 현장에서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제시하고자 한다.

제 2 절 비공개 구술기록의 공개 전환 검토 체크리스트

1) 비공개 구술기록의 공개 전환 검토 체크리스트의 구성

본 절에서는 앞서 국내외 법령, 구술동의서, 공개 전환 사례 분석을 통해 도출한 비공개 구술기록의 공개 전환 검토 기준을 실제 기록관리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구체화하고자 한다. 제1절에서는 세 자료 유형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 내용을 바탕으로 시간의 경과, 공익성, 학술적·교육적 활용 가치라는 세 가지 검토 기준을 도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은 공개 전환 판단의 방향을 제시하는 개념적 기준이므로, 실제 기록별 공개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담당자가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문항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절에서는 국내외 법령에서 확인된 보호기간, 사망·출생 기준, 공익 및 권리 구제, 연구 목적 이용과 보호조치, 국내외 구술동의서에서 확인된 비공개 기간, 공개 조건, 사후 권리자, 접근 범위, 국내외 공개 전환 사례에서 확인된 시간의 경과, 이용 목적, 공개 범위 차등화 등의 내용을 반영하여 체크리스트를 구성하였다. 체크리스트는 비공개 구술기록을 즉시 공개하기 위한 판정 도구라기보다, 기존의 비공개 사유가 현재에도 유지될 필요가 있는지, 부분 공개나 제한적 이용이 가능한지를 단계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실무 도구

로 제시하고자 한다.

[표 17] 비공개 구술기록의 공개 전환 검토 체크리스트 (1차안)

검토 항목	세부 검토 항목	확인 내용	결과
시간의 경과	비공개 기간 경과	구술동의서(비공개내역서 등)에 명시된 비공개 종료일이 도래하였는가?	□ 예 □ 아니오 □ 미확인
	구술자 생존 여부	구술자의 생존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 예 □ 아니오 □ 확인 불가
		구술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 시점을 확인하였는가?	□ 예 □ 아니오 □ 확인 불가
	대체 기준 적용	사망 여부 확인이 어려운 경우, 출생연도 기준 100세가 넘었는가?	□ 예 □ 아니오 □ 확인 불가
	생산 후 경과 기간	출생연도 확인이 어려운 경우, 기록 생산 후 60년이 지났는가?	□ 예 □ 아니오 □ 확인 불가
	관련자 생존 여부	기록에 등장하는 제3자의 생존 가능성을 검토하였는가?	□ 예 □ 아니오 □ 확인 불가
		유족의 생존 가능성을 검토하였는가?	□ 예 □ 아니오 □ 확인 불가
	민감도	구술자는 제3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가?	□ 예 □ 아니오
		일반적인 생애사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가?	□ 예 □ 아니오
		직업 경험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가?	□ 예 □ 아니오
		이미 공개된 사회활동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가?	□ 예 □ 아니오
		의료정보를 포함하고 있는가?	□ 예 □ 아니오
		미성년 시기의 피해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가?	□ 예 □ 아니오
		범죄피해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가?	□ 예 □ 아니오
		가족 내부의 비밀을 포함하고 있는가?	□ 예 □ 아니오

검토 항목	세부 검토 항목	확인 내용	결과
		생존 중인 제3자에게 중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가?	□ 예 □ 아니오
공익성	사건 관련성	해당 기록이 국가폭력, 인권침해, 강제동원, 사회적 재난, 지역 공동체 사건 등 과거사 진상 규명에 직접 관련되는가?	□ 예 □ 아니오 □ 판단 유보
	피해 회복 기여	공개 또는 제한적 이용이 피해자의 명예 회복, 권리 구제, 보상, 진실 접근에 기여할 수 있는가?	□ 예 □ 아니오 □ 판단 유보
	책임 규명 가능성	해당 기록이 국가기관의 책임 확인, 공적 권한을 행사한 주체의 책임 확인에 기여할 수 있는가?	□ 예 □ 아니오 □ 판단 유보
	진실 접근	해당 기록이 은폐되거나 왜곡된 사실을 바로잡는 데 기여할 수 있는가?	□ 예 □ 아니오 □ 판단 유보
	국민의 알 권리	해당 기록의 공개가 국민의 알 권리 충족에 기여할 수 있는가?	□ 예 □ 아니오 □ 판단 유보
	재발 방지	기록의 공개가 유사한 피해의 재발 방지에 기여할 수 있는가?	□ 예 □ 아니오 □ 판단 유보
	보호 이익과 비교	공개를 통해 실현되는 공익이 구술자 및 제3자의 권리 보호 필요성보다 크다고 볼 수 있는가?	□ 예 □ 아니오 □ 판단 유보
학술적·교육적 활용 가치	희소성	해당 기록이 기존 문헌기록이나 공개자료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경험과 정보를 포함하는가?	□ 예 □ 아니오 □ 판단 유보
	대체 가능성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다른 공개자료로 확인하기 어려운가?	□ 예 □ 아니오 □ 판단 유보
	유일성	해당 기록은 특정 사건·시대·공동체를 이해하는 데 유일한 자료인가?	□ 예 □ 아니오 □ 판단 유보
	원자료 가치	해당 기록은 특정 사건과 사회현상을 분석하는 데 필요한 원자료인가?	□ 예 □ 아니오 □ 판단 유보
	맥락정보 확보	면담 배경, 질문지, 면담일지, 검독 기록, 동의서 등 연구에 필요한 맥락정보가 충분히 남아 있는가?	□ 충분 □ 일부 □ 부족
	목적 및 필요성 검토	해당 기록을 이용하려는 연구·교육 목적이 구체적인가?	□ 예 □ 아니오 □ 판단 유보
		해당 기록의 이용이 연구·교육 목적 달성에 필	□ 예

검토 항목	세부 검토 항목	확인 내용	결과
		요한가?	□ 아니오 □ 판단 유보
	교육 활용 가능성	교육자료, 전시, 디지털 콘텐츠, 시민교육, 역사 교육 등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가?	□ 예 □ 아니오

본 연구의 체크리스트는 크게 시간의 경과, 공익성, 학술적·교육적 활용 가치로 구성하였다. 시간의 경과 영역에서는 비공개 기간의 종료 여부와 구술자 및 관련자의 생존 가능성을 검토하고, 공익성 영역에서는 피해 회복, 책임 규명, 진실 접근, 재발 방지 등의 가능성을 검토하도록 하였다. 학술적·교육적 활용 가치 영역에서는 원자료적 가치, 연구·교육 목적의 구체성 및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도록 하였다.

시간의 경과에 따른 공개 가능성 재검토하기 위해 체크리스트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 첫째, 사망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비하여 기대수명을 활용한 추정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오래된 구술기록은 사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거나, 확인에 과도한 행정력과 비용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통계청(2025)의 생명표상 기대수명을 참고하여 일정 연령 이상이 된 정보 주체의 기록은 사망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공개 가능성을 재검토하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예컨대 「2024년 생명표」에 따르면 2024년 출생아의 기대수명은 전체 83.7년, 남자 80.8년, 여자 86.6년으로 나타난다. 이를 반영하여 기대 평균 수명 85세보다 15년이 더 지난 100세 이상인 경우에는 공개 전환 가능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방식이 가능하다. 이러한 추정 기준은 생존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구술기록의 공개 전환에 실무적 기준을 제공할 수 있다.

둘째, 출생연도나 사망연도를 모두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록 생산 후 경과 기간을 대체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독일 연방기록법(BArchG, §11)은 출생연도와 사망연도를 모두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기록 생성 후 60년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정보 주체의 생몰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기록 생산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공개 가능성을

재검토하도록 하는 기준을 도입할 수 있다. 이는 정보 주체 확인이 어려운 오래된 구술기록이 무기한 비공개 상태에 머무르는 문제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셋째, 모든 사망자 관련 구술기록에 동일한 기간을 적용하기보다 정보의 민감도에 따라 보호기간을 달리 판단해야 한다. 일반적인 생애사, 직업 경험 및 공개된 사회활동에 관한 정보는 상대적으로 짧은 보호기간을 적용할 수 있지만, 의료정보, 성생활, 미성년 시기의 피해, 범죄피해, 가족 내부의 비밀 및 생존 제3자에게 중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보에는 더 긴 기간이 필요할 수 있다. 프랑스가 사생활 관련 기록, 사법·수사 기록, 의료비밀 및 미성년자 관련 기록의 공개 시점을 서로 다르게 규정한 것은 사망자 정보라 하더라도 정보의 성격에 따라 보호 필요성이 다르다는 점을 보여준다(Code du patrimoine, Article L213-2). 따라서 공개 전환 심사에서는 사망 여부와 함께 정보의 민감성, 사건 발생 후 경과 기간, 생존자의 식별 가능성 및 예상되는 피해의 정도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

결국 시간의 경과에 따른 공개 가능성 재검토는 변화한 보호 필요성을 실제 공개 전환 판단에 반영하자는 데 목적이 있다. 사망자의 정보와 생존자의 정보를 분리하고, 사망일·출생일·기록 생산일을 순차적인 기산점으로 적용하며, 정보의 민감성과 생전 공개 조건 및 부분 공개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면 정보 주체의 사망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공개가 무기한 유지되는 것을 줄이고, 생존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망자 관련 구술기록을 공개 가능한 기록으로 전환할 수 있다.

다음으로 해당 구술기록이 어떠한 공적 목적과 연결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공익성 평가' 절차를 명시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주요 평가 항목은 ① 국가폭력·인권침해·강제동원·사회적 재난·과거사 등 사건과의 직접적인 관련성, ② 피해 사실과 사건 경과의 확인 가능성, ③ 피해자의 명예 회복·보상·배상 등 권리 구제에 대한 기여 가능성, ④ 국가기관 또는 공적 권한을 행사한 주체의 책임 확인 가능성, ⑤ 은폐되거나 왜곡된 사실의 시정 가능성, ⑥ 국민의 알 권리와 재발 방지에 대한 기여 가능성으로 구성할 수

있다.

공익성 판단은 한 번의 심의로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재조사, 피해자 지위의 변화, 관련 법률의 제정, 국가기관의 공식 인정, 구술자와 관련자의 사망 등 새로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 다시 검토될 수 있다. 과거에는 개인의 사적 경험으로 보였던 구술기록도 이후 국가폭력이나 집단적 피해의 일부로 공식 확인될 수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공개의 공익성을 높이는 사정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종전 심의에서 공익성이 충분히 인정되지 않아 비공개된 기록이라도, 사건의 사회적·법적 성격이 달라졌다면 기존 결정의 근거가 현재에도 유효한지를 재검토해야 한다.

결국 공익성 평가 절차의 제도화는 비공개 구술기록이 피해 회복, 진상 규명, 책임 확인 및 재발 방지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인 항목과 절차에 따라 판단하자는 데 목적이 있다. 공개 필요성, 개인정보 침해 위험, 정보 주체의 지위, 공개 목적과 범위를 단계적으로 검토하고, 공익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 부분 공개나 제한적 접근을 적용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가 마련될 때 공익적 필요가 명확한 구술기록을 구체적인 보호조치 아래 공개 가능한 구술기록으로 전환할 수 있다.

학술적·교육적 활용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체크리스트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 첫째, 학술적·교육적 가치 평가 절차를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① 기존 문헌이나 공개자료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경험과 정보를 포함하는지, ② 동일하거나 유사한 자료로 대체하기 어려운지, ③ 특정 사건·시대·집단·지역사회의 경험을 직접 보여주는 원자료인지, ④ 구술자의 기억과 해석, 감정 및 비언어적 표현이 연구상 의미를 갖는지, ⑤ 기록의 생산 배경과 면담·녹취·검독 과정에 관한 맥락정보가 충분히 남아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이러한 항목이 충족될수록 비공개 구술기록을 연구나 교육에 이용할 필요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기록이 희소하다는 이유만으로 높은 학술적 가치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 기록에 포함된 정보가 연구 질문이나 교육 목표와 어떠한 관련성을 갖는지, 해당 기록을 이용하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연구 목적의 경우 연구계획서에 연구 주제, 이용 대상 기록, 필요한 구간과 매체, 분석 방법, 연구 기간, 결과물의 형태 및 개인정보 보호 방법을 기재하도록 할 수 있다. 교육 목적의 경우에는 대상 학습자, 수업의 주제와 목표, 활용하려는 구간, 제공 방식 및 교육 종료 후 자료 처리 방법을 제시하도록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연구나 교육이라는 명목만으로 비공개기록에 광범위하게 접근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둘째, 대체 가능성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동일한 내용을 공개된 문헌이나 통계자료, 다른 구술기록을 통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공개자료로 연구나 교육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비공개 원본의 이용 필요성은 낮게 평가할 수 있다. 반대로 해당 구술기록이 사건의 직접 경험, 공식 기록에서 누락된 사실, 특정 공동체의 언어와 생활양식 또는 구술자의 음성·표정·침묵과 같은 고유한 정보를 포함한다면 대체 불가능성이 높은 기록으로 판단할 수 있다.

셋째, 이용 신청의 구체성과 신뢰성을 평가해야 한다. 연구자의 소속이나 직위만으로 이용 여부를 결정하기보다 연구계획의 구체성, 기록 이용의 필요성, 개인정보 보호 계획 및 연구윤리 준수 가능성을 확인해야 한다. 연구기관 소속이 없는 개인 연구자도 계획과 보호조치가 충분하다면 이용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으며, 기관 소속 연구자라도 목적이 불명확하거나 기록 전체를 포괄적으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용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교육 목적 이용 역시 담당자의 교육계획과 자료 관리 능력, 학습자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범위 및 무단 복제 방지 가능성을 확인해야 한다.

결국 학술적·교육적 가치 평가 절차의 제도화는 비공개 구술기록이 구체적인 연구와 교육 목적에 필요한지를 확인하고,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 수준을 결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기록의 희소성·유일성·대체 불가능성, 생산 맥락의 충실성, 연구·교육 목적의 구체성 및 개인정보 보호 가능성을 순차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일반 공개, 부분 공개, 제한적 열람 또는 비공개를 구분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학술적·교육적 가치가 높은 구술기록이 막연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로 장기간 비공개되는 문제를 줄이면서도, 구술자와 제3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범위에서 실제 연구와 교육에

활용할 수 있다.

앞서 제시한 체크리스트는 각각 독립적으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비공개 구술기록의 공개 전환 가능성을 단계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또한 체크리스트는 심의위원회에서 공개 전환 여부를 논의할 때 판단의 근거를 제공하고, 검토 과정의 체계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비공개 구술기록의 공개 전환 검토 기준 체크리스트는 기존 비공개 사유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약화되었는지, 공개를 통해 실현될 사회적 이익이 어느 정도인지, 해당 구술기록이 연구·교육적으로 활용될 필요성과 대체 불가능성을 지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기능할 수 있다.

다만 이 체크리스트는 문헌과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연구자가 구성한 1차안으로, 실제 현장에서의 적용 가능성과 문항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체크리스트 1차안에 대하여 구술기록 및 기록관리 관련 실무 경험을 가진 전문가의 자문을 실시하였다.

2) 실무 전문가 자문과 최종 체크리스트

앞에서 제시한 체크리스트는 국내외 법령, 구술동의서 및 공개 전환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구성한 1차안이다. 그러나 문헌과 사례를 통해 도출한 기준이 실제 기록관리기관이나 구술아카이브의 업무 환경에서도 적용 가능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현장 실무자의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체크리스트 1차안의 항목 적절성, 현장 적용 가능성, 문항 표현의 명확성, 추가·보완이 필요한 요소를 중심으로 실무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였다.

자문은 기록관리 현장에서 관련 업무 경험을 가진 전문가 2인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전문가에게는 제6장 제1절에서 도출한 공개 전환 검토 기준과 이를 적용하여 구성한 체크리스트 1차안을 제공하고, 각 문항이 실제 비공개 구술기록의 공개 전환 검토 과정에서 활용 가능한지를 검토하도록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체크리스트 항목이 필요한 판단 요소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지, 실제 기록관리기관이나 구술아카이브에서 확인 가능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문항의 표현이 명확하고 중복되지 않는지, 구술자의 동의, 개인정보와

민감정보, 제3자 정보, 사후 권리자, 공익성 및 학술적·교육적 활용 가치와 관련하여 추가하거나 보완할 사항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의견을 수렴하였다.

자문 결과는 체크리스트에 문항을 단순히 추가하는 방식으로 반영하지 않았다. 실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항목은 적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조정하고, 대부분의 구술기록에 공통적으로 적용되어 공개 여부 판단에서 변별력이 낮은 항목은 재검토하였다. 또한 원자료의 전면 공개 여부만을 판단하기보다 부분 공개, 제한적 이용, 비식별화, 발췌본 및 편집본 제공 등 기록의 이용 형태와 보호조치를 함께 검토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보완하였다.

실무 전문가들의 주요 자문 의견은 [표 18]과 같다.

[표 18] 실무 전문가 자문 의견

구분	소속 및 직책	주요 의견
전문가 A	국가기록원 기록연구사	- 구술자의 생존·사망 여부는 기관의 확인 권한과 정보 갱신 여부에 따라 실제 확인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실무 적용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출생 후 100년, 기록 생산 후 60년과 같은 대체 기준의 적용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민감도는 구술기록의 주제와 성격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반화된 문항보다 구체적인 피해 가능성을 중심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음. - 희소성·대체 가능성·유일성은 대부분의 구술기록이 지니는 특성이므로 공개 여부 판단에서 변별력이 낮을 수 있음. - 원자료 공개 여부뿐 아니라 가공·편집된 형태의 제공 가능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전문가 B	대통령기록관 학예연구사	- 다양한 비공개 요소와 공익성을 함께 검토하려는 체크리스트의 기본 방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함. - 다만 '제3자의 생존 가능성', '제3자에 대한 긍정적 진술 여부'와 같은 문항은 지나치게 포괄적이며, 일반적인 직업 경험 자체를 민감정보로 보는 것도 적절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피해나 식별 가능성을 중심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공익성 검토 영역은 공개 전환 판단에 유용한 부분으로 평가함.

전문가 A는 시간의 경과 영역과 관련하여, 구술자의 생존 여부와 사망 시점 확인이 실제 현장에서는 쉽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구술기록 수집 당

시 확보한 주소와 연락처가 지속적으로 갱신되지 않을 수 있고, 기관에 따라서는 다른 사람의 생존 또는 사망 여부를 조회할 권한 자체가 없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수의 구술기록을 관리하는 기관에서 각 구술자의 생존 여부와 사망 시점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 역시 상당한 행정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최종 체크리스트에서는 생존·사망 여부의 확인을 일률적인 필수 조건으로 보기보다, 기관이 보유한 구술자 정보, 연락 이력 및 확인 가능한 자료의 범위에서 검토하도록 하였다.

또한 전문가 A는 사망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출생연도 100년 또는 기록 생산 후 60년을 대체 기준으로 적용하는 문항에도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실제로 100세 이상의 구술자가 생존하는 사례가 존재할 수 있으며, 다른 국가의 기준을 국내 구술기록에 직접 적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해당 기준을 구술자의 사망을 간주하는 절대적 기준으로 사용하기보다, 직접적인 생존 여부 확인이 곤란한 경우 공개 전환 재검토를 시작하기 위한 참고 기준으로 한정하였다. 즉 일정 연령이나 기간의 경과만으로 즉시 공개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점에 기존 비공개 사유와 기록의 민감성을 다시 검토하도록 하였다.

민감도 영역에 대해서는 두 전문가가 공통적으로 문항의 일반화 가능성에 문제를 제기하였다. 전문가 A는 구술기록의 주제에 따라 민감도의 수준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일반적인 생애사라고 하더라도 민감한 내용이 전혀 없을 수 있다고 보았다. 전문가 B 역시 “구술자가 제3자에 대해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가”와 “직업 경험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가”와 같은 문항은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고 지적하였다. 제3자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평가 자체보다 해당 진술이 제3자를 식별할 수 있게 하는지, 명예·사생활·안전에 실제 피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며, 일반적인 직업 경험 역시 그 자체만으로 민감정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체크리스트에서는 일반적인 정보 유형을 열거하는 방식보다 실제 보호 필요성을 중심으로 민감도 영역을 조정하였다. 이에 따라 일반적인 생애사 정보와 직업 경험에 관한 문항은 삭제하고, 구술자 또는 제3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의료·범죄 피해·미성

년 시기의 피해·가족 내부의 비밀 등 높은 보호 필요성을 가진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공개될 경우 구술자 또는 제3자에게 중대한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정서적·사회적 2차 피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도록 하였다.

공익성 영역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평가가 비교적 긍정적이었다. 특히 전문가 B는 비공개정보의 여러 측면을 고려하면서도 공익을 위해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을 도출하려는 시도와 공익성 검토 영역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다만 전문가 A는 구술기록의 주제와 내용에 따라 민감성이 매우 높을 수 있으므로, 공익성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원자료의 전면 공개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였다. 가해자의 진술이나 피해자의 고통스러운 경험을 담은 구술기록은 사회적 관심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개하는 것이 실제로 어떠한 공익을 실현하는지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최종 체크리스트에서는 기존의 사건 관련성, 피해 회복, 책임 규명, 진실 접근, 국민의 알 권리, 재발 방지 문항을 유지하되, 마지막 단계에서 공개를 통해 실현되는 구체적인 공익과 구술자·제3자의 권리 침해 가능성을 비교하도록 하였다. 특히 공익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곧바로 전면 공개로 연결하지 않고, 부분 공개나 제한공개, 비식별화와 같은 보호조치를 적용하여 해당 공익을 실현할 수 있는지를 함께 판단하도록 하였다.

학술적·교육적 활용 가치 영역에서는 희소성, 대체 가능성, 유일성 문항의 변별력이 낮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전문가 A는 구술기록은 개인의 기억과 경험에 기초하여 생산되기 때문에, 동일한 사건에 관한 여러 구술이 존재하더라도 각각의 경험과 기억이 다르다고 보았다. 따라서 희소성이나 유일성은 상당수의 구술기록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어 공개 여부를 가르는 핵심 문항으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체크리스트에서는 희소성, 대체 가능성, 유일성을 각각 독립적으로 판단하는 방식을 조정하였다. 대신 해당 기록이 기존 공개자료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험이나 맥락을 제공하는지, 특정 연구나 교육 목적을 위해 실제 이용할 필요가 있는지, 이용자가 기록의 생산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 관련 정보가 확보되어 있는지를 중심으로 검토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구술기록이 일반적으로 가지는 유일성을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연구·교육 목적에서 해당 기록을 이용할 실질적인 필요성이 있는지를 판단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전문가 A는 비공개 구술기록의 공개 전환을 원자료의 전면 공개 여부만으로 접근하기보다 다른 형태의 제공 가능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동일한 기록이라도 원본 전체를 제공하는 방식과 개인정보를 삭제한 녹취록, 발췌본, 연구 목적의 제한적 열람, 교육용 편집본을 제공하는 방식은 구술자와 제3자에게 발생하는 위험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체크리스트에서는 공개 방식을 독립적인 검토 단계로 강화하였다. 전면 공개가 어려운 경우 부분 공개가 가능한지, 특정 이용자에게만 제한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지, 개인정보와 민감정보를 비식별하거나 일부 삭제할 수 있는지, 원본 대신 익명화된 녹취록·발췌본·편집본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순차적으로 확인하도록 하였다. 이는 공개 여부를 '공개 또는 비공개'의 이분법적 판단으로 한정하지 않고, 기록의 보호 필요성과 이용 가치를 함께 고려하여 적절한 공개 형태를 선택하기 위한 것이다.

이상의 전문가 자문 결과를 종합하면, 체크리스트 1차안은 시간의 경과, 공익성, 학술적·교육적 활용 가치와 공개 방식 등 비공개 구술기록의 공개 전환을 검토하기 위한 주요 요소를 비교적 폭넓게 포함하고 있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기관이 확인하기 어려운 구술자의 생존·사망 정보를 절대적 판단 기준으로 삼지 않고, 기록의 내용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민감도 문항을 구체적인 피해 가능성 중심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대부분의 구술기록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희소성·유일성보다 구체적인 이용 목적과 필요성을 중심으로 학술적·교육적 가치를 검토하고, 원자료 공개뿐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제공 가능성을 함께 판단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 자문을 반영하여 체크리스트 1차안을 수정하였다. 주요 수정 내용은 [표 19]와 같다.

[표 19] 실무 전문가 주요 자문 의견과 체크리스트 반영 내용

구분	주요 자문 의견	반영 내용
시간의 경과	구술자의 생존·사망 여부를 실제 기관에서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음	기관이 보유하거나 합리적으로 확인 가능한 정보의 범위에서 검토하도록 조정
대체 시간 기준	출생 후 100년, 생산 후 60년을 사망 간주 기준으로 직접 적용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음	즉시 공개 기준이 아니라 공개 전환 재검토를 시작하기 위한 참고 기준으로 조정
제3자 정보	제3자의 생존 가능성이 지나치게 포괄적임	제3자의 식별 가능성과 공개에 따른 구체적 피해 가능성을 중심으로 수정
민감도	일반적인 생애사·직업 경험 자체는 민감하지 않을 수 있음	정보 유형의 단순 포함 여부보다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2차 피해 가능성을 중심으로 재구성
제3자 평가	긍정적 진술 여부는 공개 판단과 직접 연결되기 어려움	문항 삭제 후 명예·사생활·안전에 대한 피해 가능성으로 통합
공익성	공익성 영역은 유용하나 원자료 공개의 실익까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공익성과 보호 이익을 비교하고, 보호조치를 통한 공익 실현 가능성을 추가 검토
학술적·교육적 가치	희소성·대체 가능성·유일성은 대부분의 구술기록에 적용되어 변별력이 낮음	개별 문항을 축소하고 구체적인 이용 목적·필요성 및 공개자료의 한계를 중심으로 조정
공개 방식	원자료의 전면 공개 이외에 가공된 형태의 제공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부분 공개, 제한공개, 익명화 녹취록, 발췌본, 편집본 제공 등의 검토를 강화

이와 같은 수정 과정을 거쳐 최종 체크리스트는 시간의 경과만으로 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먼저 기존의 비공개 조건과 보호 필요성의 변화를 확인한 뒤 공익성과 학술적·교육적 활용 필요성을 검토하고, 마지막으로 기록의 위험 수준에 적합한 공개 방식과 보호조치를 선택하는 구조로 구성하였다. 이에 최종 체크리스트에서는 세 가지 핵심 검토 기준에 ‘현재의 보호 필요성’과 ‘공개 방식 및 보호조치’를 실행 단계로 추가하여 총 다섯 단계의 검토 구조로 구성하였다. 따라서 최종 체크리스트는 특정 문항의 ‘예’ 또는 ‘아니오’ 개수를 단순 합산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도구라기보다, 각 단계의 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공개, 부분 공개, 제한공개, 가공된 형태의 제공, 비공개 유지 및 추후 재검토 등 적절한 이용·관리 방식을 판단하기 위한 실무적 검토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한 비공개 구술기록의 공개 전환 검토 기준 체크리스

트 최종본은 [표 20]과 같다.

[표 20] 비공개 구술기록의 공개 전환 검토 체크리스트 (최종)

검토 항목	세부 검토 항목	확인 내용	결과
시간의 경과	비공개 기간 경과	구술동의서(비공개내역서 등)에 명시된 비공개 종료일이 도래하였는가?	□ 예 □ 아니오 □ 미확인
	구술자 생존 여부	구술자의 생존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 예 □ 아니오 □ 확인 불가
		구술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 시점을 확인하였는가?	□ 예 □ 아니오 □ 확인 불가
	대체 기준 적용	사망 여부 확인이 어려운 경우, 출생연도 기준 100세가 넘었는가?	□ 예 □ 아니오 □ 확인 불가
	생산 후 경과 기간	출생연도 확인이 어려운 경우, 기록 생산 후 60년이 지났는가?	□ 예 □ 아니오 □ 확인 불가
	관련자 생존 여부	기록에 등장하는 제3자의 생존 가능성을 검토하였는가?	□ 예 □ 아니오 □ 확인 불가
		유족의 생존 가능성을 검토하였는가?	□ 예 □ 아니오 □ 확인 불가
보호 필요성	구술자 식별 가능성	공개할 경우 구술자의 신원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식별되는가?	□ 예 □ 아니오 □ 판단 유보
	제3자 식별 가능성	기록에 등장하는 제3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식별되는가?	□ 예 □ 아니오 □ 판단 유보
	민감한 피해 경험	의료정보를 포함하고 있는가?	□ 예 □ 아니오
		미성년 시기의 피해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가?	□ 예 □ 아니오
		범죄피해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가?	□ 예 □ 아니오
		가족 내부의 비밀을 포함하고 있는가?	□ 예 □ 아니오
	사생활 침해	공개할 경우 구술자 또는 제3자의 사생활을 중대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가?	□ 높음 □ 보통 □ 낮음

검토 항목	세부 검토 항목	확인 내용	결과
	명예훼손	공개할 경우 구술자 또는 제3자에게 중대한 명예훼손이나 사회적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가?	□ 높음 □ 보통 □ 낮음
	2차 피해 가능성	공개가 구술자, 유족 또는 관련자에게 정서적·사회적 2차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가?	□ 높음 □ 보통 □ 낮음
	현재적 위험	기록 생산 당시의 위험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가?	□ 예 □ 아니오 □ 판단 유보
	보호 필요성 변화	시간의 경과에 따라 기존의 비공개 필요성이 감소하였다고 볼 수 있는가?	□ 예 □ 아니오 □ 판단 유보
공익성	사건 관련성	해당 기록이 국가폭력, 인권침해, 강제동원, 사회적 재난, 지역 공동체 사건 등 과거사 진상 규명에 직접 관련되는가?	□ 예 □ 아니오 □ 판단 유보
	피해 회복 기여	공개 또는 제한적 이용이 피해자의 명예 회복, 권리 구제, 보상, 진실 접근에 기여할 수 있는가?	□ 예 □ 아니오 □ 판단 유보
	책임 규명 가능성	해당 기록이 국가기관의 책임 확인, 공적 권한을 행사한 주체의 책임 확인에 기여할 수 있는가?	□ 예 □ 아니오 □ 판단 유보
	진실 접근	해당 기록이 은폐되거나 왜곡된 사실을 바로잡는 데 기여할 수 있는가?	□ 예 □ 아니오 □ 판단 유보
	공적 기억	사회적으로 충분히 기록되지 못한 피해 경험과 기억을 보존·공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가?	□ 예 □ 아니오 □ 판단 유보
	국민의 알 권리	해당 기록의 이용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안에 관한 알 권리 충족에 기여할 수 있는가?	□ 예 □ 아니오 □ 판단 유보
	재발 방지	기록의 공개가 유사한 피해의 재발 방지에 기여할 수 있는가?	□ 예 □ 아니오 □ 판단 유보
	원자료 공개의 실익	위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원자료 자체를 공개할 필요가 있는가?	□ 예 □ 아니오 □ 판단 유보
	보호 이익과 비교	공개를 통해 실현되는 공익이 구술자 및 제3자의 권리 보호 필요성보다 크다고 볼 수 있는가?	□ 예 □ 아니오 □ 판단 유보
학술적·교육적 활용	공개자료의 한계	해당 기록이 기존 문헌기록이나 공개자료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경험과 정보를 포함하는가?	□ 예 □ 아니오 □ 판단 유보

검토 항목	세부 검토 항목	확인 내용	결과
가치	원자료 가치	특정 사건·시대·사회현상을 분석하는 데 원자료로서의 가치가 있는가?	□ 예 □ 아니오 □ 판단 유보
	이용 목적의 구체성	해당 기록을 이용하려는 연구·교육 목적이 구체적인가?	□ 예 □ 아니오 □ 해당 없음
	이용 필요성	해당 기록이 연구·교육 목적 달성에 실질적으로 필요한가?	□ 예 □ 아니오 □ 판단 유보
	맥락정보 확보	면담 배경, 질문지, 면담일지, 검독 기록, 동의서 등 이용자가 연구에 필요한 맥락정보가 충분히 남아 있는가?	□ 충분 □ 일부 □ 부족
	교육 활용 가능성	교육자료, 전시, 디지털 콘텐츠, 시민교육, 역사교육 등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가?	□ 예 □ 아니오
공개 방식	공개 범위 조정	전면 공개가 어려운 경우 부분 공개가 가능한가?	□ 예 □ 아니오 □ 판단 유보
		전면 공개가 어려운 경우 제한공개가 가능한가?	□ 예 □ 아니오 □ 판단 유보
		전면 공개가 어려운 경우 비식별 처리가 가능한가?	□ 예 □ 아니오 □ 판단 유보
		전면 공개가 어려운 경우 연구 목적 열람이 가능한가?	□ 예 □ 아니오 □ 판단 유보
	보호조치	개인정보 비식별 처리가 가능한가?	□ 예 □ 아니오 □ 판단 유보
		민감정보의 일부 삭제가 가능한가?	□ 예 □ 아니오 □ 판단 유보
		익명화된 녹취록 제공이 가능한가?	□ 예 □ 아니오 □ 판단 유보
		원본 대신 발췌본 제공이 가능한가?	□ 예 □ 아니오 □ 판단 유보
		교육용 편집본 제공이 가능한가?	□ 예 □ 아니오 □ 판단 유보

[표 20]은 비공개 구술기록의 공개 전환 가능성을 시간의 경과, 현재의 보호 필요성, 공익성, 학술적·교육적 활용 가치, 공개 방식과 보호조치의 순서로 검토하도록 구성하였다. 이는 특정한 하나의 조건이 충족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보다, 생산 당시 설정된 비공개 조건이 현재에도 유효한지 확인하고, 시간이 경과하면서 보호 필요성이 변화하였는지를 살펴본 뒤, 기록의 공개 또는 이용을 통해 실현될 수 있는 공익과 학술적·교육적 활용 필요성을 함께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기록에 포함된 위험을 줄이면서 이용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개 방식과 보호조치를 판단하도록 하였다.

체크리스트의 활용은 각 검토 항목을 순차적으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먼저 시간의 경과 영역에서는 구술동의서나 비공개 내역서에 설정된 비공개 기간과 공개 조건을 확인하고, 구술자의 생존·사망 여부와 기록 생산 후 경과 기간 등을 통해 기존의 비공개 필요성을 다시 검토할 시점에 이르렀는지를 살펴본다. 다만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였거나 구술자가 사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공개하는 것은 아니며, 이는 다음 단계의 검토를 진행하기 위한 조건으로 활용한다.

다음으로 현재의 보호 필요성 영역에서는 기록에 개인정보나 민감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보다, 이를 공개할 경우 구술자나 제3자에게 실제로 어떠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식별 가능성,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정서적·사회적 2차 피해 가능성이 낮거나 시간의 경과에 따라 기존의 보호 필요성이 감소한 경우에는 공개 가능성을 계속 검토할 수 있다. 반면 보호 필요성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곧바로 비공개로 판단하기보다, 해당 위험을 일부 정보의 삭제나 비식별 처리, 이용 범위의 제한 등을 통해 줄일 수 있는지를 이후의 공개 방식 검토와 연결하여 판단한다.

공익성 영역에서는 해당 기록의 공개 또는 이용이 피해 회복, 책임 규명, 진실 접근, 공적 기억 형성, 국민의 알 권리 및 재발 방지에 구체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공익성이 인정되더라도 이를 곧바로 원자료의 전면 공개 필요성과 동일하게 보지는 않는다. 공개를 통해 실현되는 공익과 구술자 및 제3자의 보호 필요성을 함께 비교하고, 해당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원자료

전체의 공개가 필요한지, 또는 부분적인 공개나 제한적 이용만으로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를 함께 판단한다.

학술적·교육적 활용 가치 영역에서는 구술기록이 일반적으로 지니는 희소성이나 유일성 자체보다, 해당 기록을 실제 연구와 교육에 이용할 구체적인 필요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기존 문헌이나 공개자료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험과 맥락을 제공하고, 특정한 연구·교육 목적을 위해 해당 기록의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활용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다만 학술적·교육적 가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반드시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전면 공개할 필요는 없으며, 연구 목적의 제한적 열람이나 비식별화된 자료의 제공과 같은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공개 방식과 보호조치 영역에서는 앞선 단계의 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해당 기록을 어떠한 범위와 형태로 이용할 수 있는지를 판단한다. 기존의 비공개 사유가 소멸하거나 현저히 약화되었고 공개에 따른 중대한 피해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는 공개를 검토할 수 있다. 기록의 일부에만 보호가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삭제하거나 가림 처리하는 부분 공개를 검토하며,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기 어렵지만 공익적 또는 학술적·교육적 이용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용자, 이용 목적, 열람 장소 및 복제 범위 등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허용할 수 있다. 또한 원자료 자체의 공개가 어려운 경우에는 익명화된 녹취록, 발췌본, 편집본 등 별도의 이용본을 제공하는 방식도 함께 검토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체크리스트의 판단은 각 문항에서 선택한 ‘예’, ‘아니오’ 또는 ‘판단 유보’의 수를 합산하여 이루어지지 않는다. 구술기록은 동일한 항목에 해당하더라도 정보의 민감성, 구술자의 의사, 제3자에게 미치는 영향, 기록의 공익적 가치 및 이용 목적에 따라 공개의 위험과 필요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각 단계의 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먼저 적용 가능한 법령과 생산 당시의 동의·약정 조건을 확인하고, 현재 남아 있는 보호 필요성과 공개를 통해 실현되는 이익을 비교한 뒤, 가장 적절한 공개 범위와 보호조치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기존의 비공개 사유가 소멸하거나 현저히 감소하고 별도의 보

호조치 없이도 중대한 피해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는 공개를 검토할 수 있다. 일부 정보에만 보호 필요성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부분 공개를, 일반 공개는 어렵지만 특정한 공익적·학술적·교육적 이용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한공개를 검토할 수 있다. 원자료 공개에 따른 위험은 높지만 가공된 형태로 이용 가치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익명화된 녹취록, 발췌본 또는 편집본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반면 이러한 보호조치를 적용하더라도 구술자나 제3자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거나 생산 당시의 비공개 조건이 여전히 유효한 경우에는 비공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다만 비공개 유지 역시 영구적인 판단으로 고정하기보다, 비공개 기간의 종료, 시간의 추가 경과, 권리관계의 변화 등 일정한 조건이 발생한 이후 다시 검토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 제시한 최종 체크리스트는 비공개 구술기록을 일률적으로 공개하거나 계속 비공개하기 위한 기준이 아니라, 구술기록의 내용과 성격마다 달라질 수 있는 비공개 조건과 보호 필요성, 공익성 및 활용 가치를 단계적으로 확인하고 그에 적합한 이용 방식을 검토하기 위한 도구이다. 특히 공개 여부를 공개와 비공개의 이분법적인 선택으로 한정하지 않고, 부분공개, 제한공개 및 가공된 형태의 제공 가능성을 함께 검토한다는 점에서 비공개 구술기록의 보호와 활용을 함께 고려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생산 당시의 비공개 결정이 장기간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방지하면서도, 구술자와 제3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기록의 사회적·역사적·학술적 이용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는 하나의 실무적 판단 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 7 장 결론

본 연구는 한 번 비공개로 분류되거나 이용이 제한된 구술기록이 시간이 경과한 뒤에도 계속 비공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는지, 또는 일정한 조건 아래 공개·부분 공개·제한공개 등으로 전환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특히 과거사 진상 규명 과정에서 생산·수집된 구술증언은 국가폭력, 인권침해, 강제동원, 민간인학살, 사회적 재난 등과 관련된 피해 경험과 기억을 담고 있어 역사적·사회적 가치가 크다. 그러나 동시에 개인정보, 민감정보, 제3자 정보, 명예훼손 가능성, 정서적·사회적 2차 피해 우려 등을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공개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과거사 진상 규명 구술증언을 중심으로 비공개 구술기록의 공개 전환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먼저 구술기록과 과거사 진상 규명 구술증언의 개념과 특성을 검토하였다. 구술기록은 구술자의 기억과 경험을 면담을 통해 기록화한 자료로, 문헌기록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개인의 경험, 감정, 인식, 사회적 관계를 드러낼 수 있다는 특징을 지닌다. 특히 과거사 진상 규명 구술증언은 특정 사건의 피해 사실, 목격 경험, 사건 이후의 삶에 남은 영향 등을 진술한다는 점에서 사건 중심의 증언적 성격을 가진다. 또한 공식 기록의 공백을 보완하고, 침묵되거나 배제되었던 피해자의 경험을 공적 기억으로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러한 구술증언은 피해 경험, 가족관계, 건강, 정치적 경험, 가해자와 목격자 등 제3자 정보, 지역 공동체의 갈등과 같은 민감한 내용을 포함할 수 있어 공개 과정에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국내 구술기록의 수집·공개 현황을 살펴보았다. 국내 구술기록은 국가기관 및 민간단체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수집되어 왔으며, 강제동원, 5·18민주화운동, 제주4·3, 민간인학살 등 과거사 진상 규명과 관련된 구술기록 역시 중요한 증언 자료로 축적되어 왔다. 그러나 구술기록의 수집 확대가 곧 원자료의 공개와 활용 확대로 이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국가기록원 소장 과거사 진상 규명 구술기록 2,833건은 모두 비공개 상태로 확인되었고, 주요

과거사 관련 기관의 구술자료 역시 간행물, 증언집, 자료집, 목록집 등의 형태로 일부 내용이 공개되었을 뿐 음성·영상 원자료와 전체 녹취록의 공개는 제한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비공개 구술기록의 정확한 건수, 비공개 사유, 비공개 기간, 공개 전환 검토 가능 여부를 체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목록이나 절차도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다. 이러한 현황은 일부 과거사 관련 구술기록이 개별 기록의 보호 필요성에 대한 지속적인 재검토 없이 장기간 비공개 상태로 유지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국내외 법령 분석에서는 비공개 구술기록의 공개 전환 검토에 참고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근거를 살펴보았다. 국내 법령에서는 「공공기록물법」의 5년 주기 공개재분류, 생산 후 30년 공개 원칙, 학술연구 목적의 제한적 열람, 「정보공개법」의 비공개 필요성 소멸 후 공개와 공익·권리구제 목적 공개, 「개인정보 보호법」의 과학적 연구와 공익적 기록보존을 위한 가명정보 처리 규정을 확인하였다. 국외 법령에서는 독일, 과테말라, 프랑스를 중심으로 보호기간, 사망 후 이용 가능 시점, 출생연도 대체 기준, 공익에 따른 보호기간 조정, 인권침해 기록의 비공개 금지, 연구·교육 목적 이용 가능성 등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비공개기록의 공개 전환을 논의할 때 시간의 경과, 공익성, 연구·교육 목적의 제한적 이용 가능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국내외 구술동의서 분석에서는 구술기록의 수집 단계에서 향후 공개 전환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떠한 조건이 설정되는지를 살펴보았다. 국내 구술동의서에서는 비공개 구간의 타임코드, 비공개 기간과 종료일, 종료 후 평가위원회 심의, 이용자·접근방식 제한, 사후 권리자 연락처, 공익적 목적 설명, 저작재산권 양도, 공익·학술 목적 이용 위임 등을 확인하였다. 국외 구술동의서에서는 사전 공개·보존 고지, 면담 후 공개 조건 확정, 엠바고 종료일, 비공개 기간 가이드라인, 저작권 처리 방식 선택, 사후 권리자 연락처, 공개 시점 선택, 실명·익명 공개 선택, 교육·학술 목적 공개, 기관의 자료 처분 권한 등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내용은 비공개 구술기록의 공개 전환을 위해 수집 단계에서부터 비공개 기간, 공개 조건, 이용 범위, 권리관계, 사후 연락 체계를 구체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공개 전환 사례 분석에서는 실제로 비공개 또는 접근 제한 상태였던 기록이 어떠한 조건과 절차를 통해 공개 또는 접근 허용으로 전환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지그문트 프로이트 컬렉션, 재클린 케네디 구술기록, 브렌트 스코우크로프트 구술기록, 영국도서관 Sound Archive 사례는 제한기간의 경과, 구술자 사망, 유족 동의, 사전 약정, 생존 가능성 판단, 발췌 공개, 게시중단 절차 등을 통해 구술기록의 공개 전환이 검토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독일 Stasi Records Archive와 과테말라 국가경찰 역사기록보관소 사례는 개인정보와 민감정보가 포함된 과거사 진상 규명 기록이라 하더라도, 국가폭력과 인권침해의 증거로서 피해자의 진실 접근, 권리 회복, 책임 규명, 사법적 조사, 연구·교육에 기여할 수 있다면 공개 전환 또는 제한적 접근 허용의 대상으로 검토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본 연구는 비공개 구술기록의 공개 전환 검토 기준을 세 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 시간의 경과에 따른 공개 가능성 재검토이다. 이는 비공개 제한기간의 종료 여부, 구술자와 관련자의 생존 여부, 사망 시점, 출생연도나 기록 생산일과 같은 대체 기준, 기존 비공개 사유의 지속 여부를 검토하는 기준이다. 둘째, 공익성에 따른 공개 가능성 검토이다. 이는 해당 기록의 공개가 피해 회복, 진상 규명, 책임 확인, 권리 구제, 국민의 알 권리, 재발 방지, 사회적 기억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셋째, 학술적·교육적 가치에 따른 활용 가능성 검토이다. 이는 기존 문헌이나 공개자료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험과 맥락을 제공하는지, 특정한 연구·교육 목적을 위해 해당 기록의 이용이 실제로 필요한지, 기록의 생산과 해석에 필요한 맥락정보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지 등을 검토하는 기준이다.

이 기준을 바탕으로 체크리스트를 구성하고 실무 전문가 자문을 통해 수정·보완하였다. 최종 체크리스트는 시간의 경과, 현재의 보호 필요성, 공익성, 학술적·교육적 가치, 공개 방식과 보호조치의 단계로 구성되며, 각 항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개 여부와 범위를 판단하도록 설계되었다. 또한 문항의 단순 합산이 아닌 종합적 판단을 통해 가장 적절한 공개 수준과 보호조치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보호 필요성이 낮고 비공개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공개를 검토할 수 있으며, 일부 위험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부분 공개

나 제한공개를 적용할 수 있다. 또한 원자료 공개가 어려운 경우에도 가공된 형태의 제공을 통해 이용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보호 필요성이 여전히 높은 경우에는 비공개를 유지하되 향후 재검토를 전제로 관리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연구가 주로 구술기록의 수집, 생산 윤리, 공개·활용의 법적 쟁점, 과거사 진상 규명에서 구술증언의 역할을 중심으로 논의해 온 것과 달리, 본 연구는 이미 비공개로 분류되거나 이용이 제한된 구술기록의 사후 공개 전환 문제에 초점을 두었다.

둘째, 공공기록물 관리체계에 포함되지 않는 구술기록까지 고려할 수 있도록 '공개 전환 검토'라는 개념을 사용하였다는 점이다. 구술기록은 국가기관뿐 아니라 민간단체, 연구기관, 대학, 시민기록관 등 다양한 주체에 의해 생산·수집되므로, 「공공기록물법」 상의 공개재분류만으로 그 재검토 과정을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록의 관리 주체와 법적 성격에 관계없이 비공개 조건과 보호 필요성, 이용 가능성을 다시 살펴볼 수 있는 논의의 범위를 마련하였다.

셋째, 국내외 법령, 구술동의서 및 공개 전환 사례라는 서로 다른 자료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로 구체화하였다는 점이다. 각 자료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의미를 범주화하여 시간의 경과, 공익성, 학술적·교육적 활용 가치라는 검토 기준을 도출하고, 이를 다시 단계별 검토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공개 전환의 판단 근거를 이론적 수준에서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기록별 검토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넷째, 체크리스트를 실무 전문가 자문을 통해 수정·보완하였다는 점이다. 자문을 통해 실제 확인이 어려운 항목, 지나치게 포괄적인 문항, 대부분의 구술기록에 공통적으로 적용되어 변별력이 낮은 항목을 재검토하고, 기록관리 현장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고려하였다. 이를 통해 분석 결과를 그대로 체크리스트로 전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무적 판단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문항의 구체성과 적용 가능성을 보완하였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기관과 기록 유형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으며, 전문가 자문 대상이 제한적이었다. 또한 제시된 체크리스트를 실제 기록에 적용하여 검증하지 못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실제 비공개 구술기록에 체크리스트를 적용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준을 더욱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비공개 구술기록은 보호되어야 할 민감한 기록인 동시에, 시간이 경과한 뒤 사회적·역사적·학술적 가치가 새롭게 평가될 수 있는 기록이다. 특히 과거사 진상 규명 구술증언은 피해자의 경험과 기억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보호가 필요하지만, 동시에 국가폭력과 인권침해의 진실 규명, 피해 회복, 사회적 기억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공적 기록이기도 하다. 따라서 비공개 구술기록은 시간의 경과와 권리관계, 보호 필요성 및 이용 조건의 변화가 발생한 경우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개 전환 가능성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공개 전환 검토 기준과 체크리스트는 이러한 검토를 체계화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HANSUNG UNIVERSITY

참 고 문 헌

1. 국내문헌

1) 단행본

윤택림. (2019). 『역사와 기록 연구를 위한 구술사 연구방법론』. 홍천: 아르케.

정연경. (2022). 『기억의 기록으로 쓰는 구술사』.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

한국구술사연구회. (2005). 『구술사』. 서울: 선인.

2) 학술지 및 학위논문

강남진. (2023). “구술사를 활용한 한국 현대사 수업방안”.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강재성. (2019). 구술 기록에서 비언어적 행위 재현의 문제: 『4.16구술증언록』의 사례. 『구술사연구』, 10(1), 77-105.

권미현. (2007). 강제동원 구술자료의 관리와 활용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소장 구술자료를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16, 305-341.

김태인. (2025). 구술-문헌-유해의 관계와 과거사 진상규명 운동: 한국전쟁기 대전 골령골 민간인학살 사례 연구. 『구술사연구』, 16(1), 13-50.

김택호. (2024). 구술 기록의 공공성. 『기록학연구』, 79, 443-469.

김향수. (2019). 4.16구술증언 채록 과정 속의 윤리적 난제들. 『구술사연구』, 10(1), 39-76.

나종일. (2024). “일제 강제동원 기록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방안”. 한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병섭. (2019). ‘여순 10.19’ 관련 구술 사업의 현황과 과제. 『역사학연구』, 73, 127-163.

박준규. (2016). IRB와 구술사 연구윤리 : 한민족다문화 협력적 구술생애사 연구 사례를 중심으로. 『구술사연구』, 7(2), 133-161.

박준규. (2022). 공공역사 구술자료 활용과 법적/윤리적 쟁점: 북미 사례를 중심으로. 구술사연구, 13(1), 177-217.

배은희. (2018). 지역 구술기록의 생산과 관리 현황 및 개선방안 -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8(2), 85-108.

손동유, 권용찬. (2013). 체계적인 구술기록 생산을 위한 제언.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3(1), 135-158.

송혜림. (2025). “국가화된 증언 체제에 대한 비판적 연구: 과거사 피해 증언에 관한 제도·담론·정동 분석”.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여진. (2026). “일제강점기 노동력 강제동원 구술 기록 기술 연구”.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은비. (2021). “공공도서관의 구술기록물 관리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주영. (2011). 구술기록을 통한 민간인학살사건의 역사화. 『기록학연구』, 29, 79-127.

이현정. (2019). 말하기의 정치와 듣기의 윤리 : ‘4.16구술증언사업’의 진행 과정과 그 함의. 『구술사연구』, 10(1), 11-38.

이호신. (2010). 구술자료의 저작권 문제에 관한 연구. 『구술사연구』, 1, 49-75.

이호신. (2017). 구술자료의 수집과 서비스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법의 도전.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7(1), 193-216.

전예은. (2021). “구술아카이브를 활용한 전시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용성. (2009). “구술기록의 수집정책에 관한 연구: 과거사 진상규명 관련 위원회의 면담조사기록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정은. (2011). 사회적 기억과 구술 기록화 그리고 아키비스트.『기록학연구』, 30, 3-55.

3) 간행물 및 자료집

국립태권도박물관. (2024). 『여성태권도인 구술채록』. 국립태권도박물관.

서울역사편찬원. (2025). 『구술채록사업 안내』. 서울역사편찬원.

여주세종문화재단. (2022). 『2022년 여주 생활문화 구술사업 구술채록 연구용역 과업설명서』. 여주세종문화재단.

통계청. (2025). 「2024년 생명표 작성 결과」. 통계청 보도자료.

김원. (2022). 구술자료의 수집, 관리, 활용을 둘러싼 제도적 문제. 2022년 한국구술사학회 후기 학술대회, 100-121.

김은희. (2022). 4·3진상규명 운동과 4·3구술의 역할: 김봉길, 이운방 증언을 중심으로. 2022년 한국구술사학회 전기학술대회, 163-171.

선영란. (2019). 정부기관과 공공단체가 수집한 구술 자료의 현주소. 2019년 한국구술사학회 창립 10주년 국제학술대회, 125-135.

송치욱. (2024). 현대한국구술자료관 자료 공개 현황과 기준. 2024년 한국구술사학회 전기 학술대회, 52-53.

허영선. (2022). 제주4.3연구소: 구술사료 수집의 성과와 과제. 2022년 한국구술사학회 전기학술대회, 106-123.

2. 국외문헌

1) 학술논문

Blumenthal, C., Franco, L., & Ott, L. (2021). Rescue and preservation from 2005 to 2017: Challenges, achievements and contributions to dealing with the past. In swisspeace, The Historical Archive of the National Police of Guatemala: 2005－2017 (pp.97－202). Bern: swisspeace.

Hovestädt, D. (2021). The Stasi Records Archive. In Archives and Human Rights. London: Routledge, 218-229. https://doi.org/10.4324/9780429054624-22.

Hovestädt, D. (2025). Stasi Archives. In I. Saloul & B. Baillie (Eds.), The Palgrave Encyclopedia of Cultural Heritage and Conflict. Springer Nature Switzerland. 1-10. https://doi.org/10.1007/978-3-030-61493-5_143-1.

Klumpenhouwer, R. (1985-1986). On the archival couch: Freud and the Freud Archives. Archivaria, 21, 198-203.

Maj, E. (2015). Two oral histories of the two First Ladies: Jacqueline Kennedy and Lady Bird Johnson. Studia Anglica Posnaniensia, 50(2-3), 175-188. https://doi.org/10.1515/stap-2015-0031.

Perks, R. (2009). The challenges of web access to archival oral history in Britain. IASA Journal, 32, 74-81.

2) 동의서 양식

Australian Queer Archives. (2022). The Australian Queer Archives Oral History Project: Oral History Consent Form.

British Library. (2018). Oral History Participation Agreement.

British Library. (2018). Oral History Recording Agreement.

British Library Oral History Section. (2018). Retrieved from: https://dev.ohs.org.uk/wp-content/uploads/2020/09/Leaflet-about-Copyright-and-Deposit-of-Oral-History-at-the-BL-June-2018.pdf.

Library of Congress American Folklife Center. Veterans History Project Field Kit: Veteran's Release Form.

Library of Congress American Folklife Center. Veterans History Project Field Kit: Interviewer's Release Form.

3. 법률 및 지침

개인정보 보호법(약칭: 개인정보보호법), 법률 제20897호, 2025. 4. 1., 일부개정, 2025. 10. 2. 시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공개법), 법률 제19408호, 2023. 5. 16., 타법개정, 2023. 11. 17. 시행.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공공기록물법), 법률 제21066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

한국학중앙연구원. (2019). 『구술 자료 아카이브 구축 사업 연구결과물 유형, 자료화, 이관 표준화 지침』. 한국학중앙연구원.

Bundesarchivgesetz [BArchG]. (2017). Gesetz über die Nutzung und

Sicherung von Archivgut des Bundes.

Bundesdatenschutzgesetz [BDSG]. (2017). Federal Data Protection Act.

Code du patrimoine [French Heritage Code]. Article L213-2.

Decreto Número 57-2008 [Ley de Acceso a la Información Pública; LAIP]. (2008).

Stasi-Unterlagen-Gesetz [StUG]. (1991). Gesetz über die Unterlagen des Staatssicherheitsdienstes der ehemaligen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4. 웹사이트

Australian Queer Archives. https://queerarchives.org.au/. [cited 2026.06.11.]

British Library. Sound and Vision: Introduction. https://bl.libguides.com/reference-services/sound-and-vision. [cited 2026.06.11.]

Federal Archives. Access to Stasi Records. https://www.bundesarchiv.de/en/research-our-records/access-to-stasi-records/. [cited 2026.06.11.]

John F. Kennedy Presidential Library and Museum. (2011). In Her Voice: Jacqueline Kennedy, The White House Years. Special Exhibits. https://www.jfklibrary.org/visit-museum/exhibits/special-exhibits/in-her-voice-jacqueline-kennedy-the-white-house-years. [cited 2026.06.11.]

Library of Congress. Collections: American Folklife Center. https://www.loc.gov/research-centers/american-folklife-center/coll

ections/. [cited 2026.06.11.]

Library of Congress. Collection: Sigmund Freud Papers. https://www.loc.gov/collections/sigmund-freud-papers/about-this-collection/. [cited 2026.06.11.]

Miller Center. (2020). Brent Scowcroft and American military intervention. University of Virginia Miller Center. https://millercenter.org/brent-scowcroft-and-american-military-intervention. [cited 2026.06.11.]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The Digital Archive of the Archivo Histórico de la Policía Nacional de Guatemala (Guatemalan National Police Historical Archive, or AHPN). https://ahpn.lib.utexas.edu/. [cited 2026.06.11.]

Zelikow, P. (2020). Brent Scowcroft and American Military Intervention. War on the Rocks. https://warontherocks.com/brent-scowcroft-and-american-military-intervention. [cited 2026.06.11.]

ABSTRACT

A Study on the Criteria for Reviewing the Disclosure of Non-Public Oral Records: Focusing on Oral Testimonies for Historical Truth-Seeking

Lee, Seok-Kyun

Major in Archives & Records Management

Dep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The Graduate School

Hansung University

Oral records contain personal experiences, memories, emotions, and perceptions that are difficult to identify through written records alone. In particular, oral testimonies produced or collected in the process of historical truth-seeking document experiences related to state violence, human rights violations, forced mobilization, civilian massacres, and social disasters, and help fill gaps in official records. However, such records may contain personal and sensitive information, information about third parties, risks of privacy infringement and defamation, and the possibility of secondary harm. They are therefore often managed as non-public records or under restricted access. Even after a considerable period of time has passed, their non-public status may continue without reconsideration of whether the original reasons for non-disclosure and the need for protection remain valid.

This study aims to develop criteria for reviewing the possibility of disclosing or permitting access to oral records that have been classified as

non-public or subject to restricted use, with particular focus on oral testimonies related to historical truth-seeking, and to organize the criteria into a practical checklist. Since such oral records may be produced and collected not only by public institutions but also by civic organizations, research institutions, and community archives, this study does not limit the discussion to statutory reclassification under the Public Records Management Act. Instead, it adopts the concept of "disclosure review."

The study examined the characteristics of oral records, the reasons for non-disclosure, and the current status of their collection and access in South Korea. It then analyzed relevant domestic and foreign legislation, oral history consent forms, and cases of disclosure transition. Recurring themes were categorized according to similarity and functional relevance to derive criteria for disclosure review. An initial checklist was then developed and revised through consultation with two records management practitioners.

The analysis identified three criteria. First, reconsideration of disclosure possibilities in light of the passage of time examines whether the original restrictions and need for protection remain valid. Second, review of disclosure possibilities based on public interest considers whether disclosure or access may contribute to victim recovery, rights protection, truth-seeking, accountability, and the formation of public memory. Third, review of potential use based on academic and educational value examines whether the records provide experiences and contexts that cannot be sufficiently identified through existing literature or publicly available materials and whether access is necessary for specific research or educational purposes.

Based on these criteria, the final checklist consists of five stages: the passage of time, the current need for protection, public interest, academic and educational value, and methods of disclosure and protective measures. The checklist focuses not simply on the presence of personal or sensitive information, but on the specific risk of harm caused by disclosure and the current need for protection. Rather than relying on a simple numerical aggregation of responses, it requires an integrated assessment of each stage to determine appropriate measures, including full disclosure, partial disclosure, restricted access, de-identification, provision of processed versions, continued non-disclosure, and future re-review.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regards non-public oral records not as records permanently fixed by decisions made at the time of their creation, but as records that may be reconsidered as time passes and circumstances change. It also proposes the concept of disclosure review in

a form applicable to oral records outside the public records management system and translates the results of legal, consent-form, and case analyses into a practical checklist.

【Keywords】Non-Public Oral Records, Disclosure Review, Historical Truth-Seeking, Oral Testimony

HANSUNG UNIVERSITY